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
2020. 11.



전라남도
JeollaNamdo

제 출 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참여연구진

책	임	연	구	원	최	문	찬		
(공	동)	책	임	연	구	원	천	상	은
연		구		원	조	준	희		
연		구		원	김	정	희		
연	구	보	조	원	손	영	은		

사단법인 한국지식오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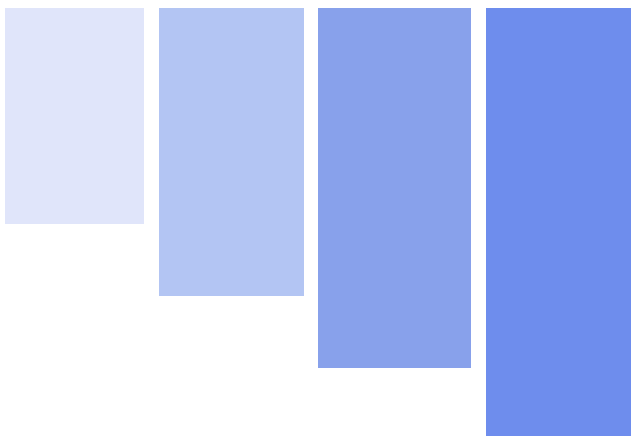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수행절차 및 범위	10
(1) 연구의 수행절차	10
(2) 연구의 범위	11
제2장 지역여건 분석	15
1. 일반 현황	15
(1) 위치 및 행정구역	15
(2) 인구 현황 및 추이	17
2. 복지 환경 분석	24
(1) 사회복지 대상자 현황	24
(2) 전라남도 복지재정 현황	59
3. 요약 및 시사점	63
제3장 상위계획 및 법규 검토	67
1. 중앙정부의 정책 환경 분석	67
(1) 사회서비스 정책	67
(2) 사회서비스원 설립 경과	78
(3) 중앙정부의 정책내용 및 가이드라인	81
2. 상위계획 검토	84
(1) 국정운영 5개년 계획	84
(2)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년)	87
(3)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	89

3. 관련법규 검토	100
(1) 재단법인 설립 관련 법률	100
(2) 사회서비스 관련 법규	106
제4장 사례조사	113
1.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사례조사	113
(1)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113
(2)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118
(3)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122
(4)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126
(5) 설립 사례 종합검토	130
제5장 지역 의견수렴 및 FGI	139
1. 개요	139
2. 공급자 대상 설문조사	141
(1) 조사결과	141
3.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161
(1) 조사결과	161
4. FGI 조사 개요	175
(1) 조사 배경	175
(2) 조사방법 및 범위	175
(3) 인터뷰 진행	176
(4) FGI(초점집단 심층면접) 결과	177
(5) 공청회	182
제6장 설립 및 운영방안	187
1. 설립의 기본방향	187
(1)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필요성과 목적	187
(2) 비전 및 목표	188



2. 설립방안	189
(1) 타 시도 사회서비스원 추진 계획 및 현황	189
(2)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비교	191
(3)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유사기능 중복여부	192
(4) 설립 유형의 비교 분석 및 적정(안)	193
3. 단계별 추진방안	196
4. 조직 및 인력 운영(안)	197
(1) 조직구성(안)	197
(2) 인력운영(안)	200
5. 시설운영(안)	204
(1) 국·공립 시설 수탁 운영	204
(2) 종합재가센터 설립 및 운영	206
(3) 민간제공기관 지원 사업	208
6. 재정운영(안)	210
 제7장 설립 타당성 검토	 213
1.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의 개요	213
2.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15
3. 경제적 타당성 검토	217
4.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225
5.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228
6.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230
7.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검토	232
8. 적정 자본 구조 분석	232
9. 공무원정원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232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235
1. 결론	235
2. 정책제언	238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수행절차 및 범위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고령화 사회의 도래, 여성 경제활동률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아동·노인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수요 지속 증가
 - 사회서비스 영역은 공공 재정투입 확대, 서비스 제공기관 및 관련 종사자확충 등 양적 확장을 통해 수요에 대응
- 이용자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에 따라 “더 나은 사회서비스제공 환경 구축” 필요성 제기
 -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및 투명성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 등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중요
 -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필요
- 전라남도 역시 그동안 사회서비스가 민간중심의 공급구조와 시장화 정책으로 낮은 일자리 등 적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과도한 경쟁이 초래되었고 보육,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국·공립 복지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기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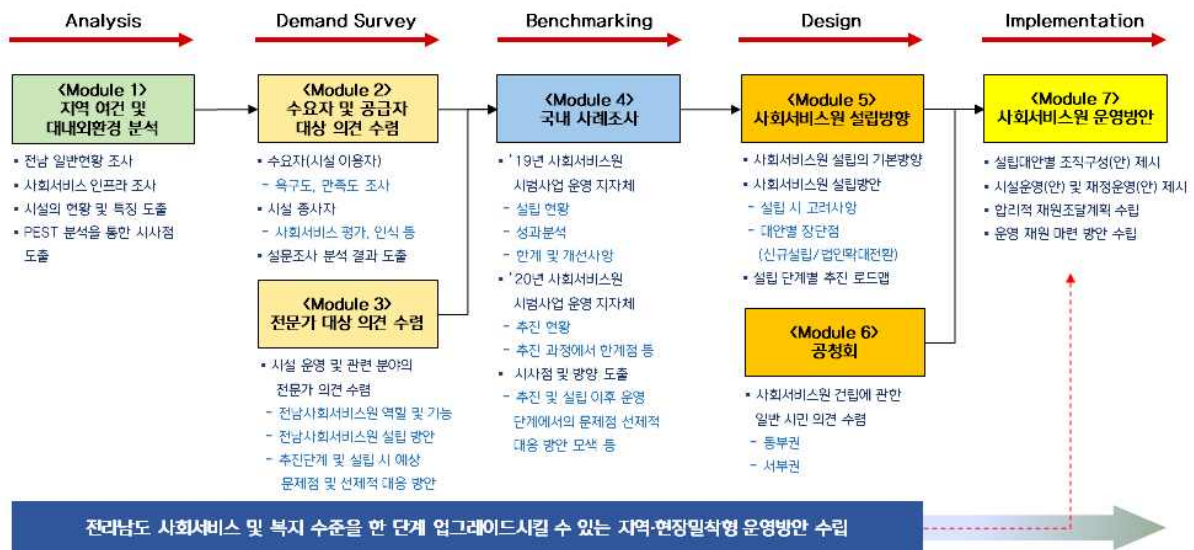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전남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립 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방향을 설정한 후 설립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조직 구조와 중장기적인 운영방안 및 적정 예산 수립을 제시하는 것임

2. 연구의 수행절차 및 범위

(1) 연구의 수행절차

- 전라남도 대내외 현황분석 등 5단계 추진과정 기반 합리적인 설립방안 및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Analysis : 지역 여건 및 대내외 환경 분석
 - Demand Survey : 수요자 및 공급자 대상 의견 수렴 / 전문가 대상 의견 수렴
 - Benchmarking : 국내 사례조사
 - Design : 사회서비스원 설립방향 / 공청회
 - Impelmentation : 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



<그림 1-1> 연구의 수행절차

(2)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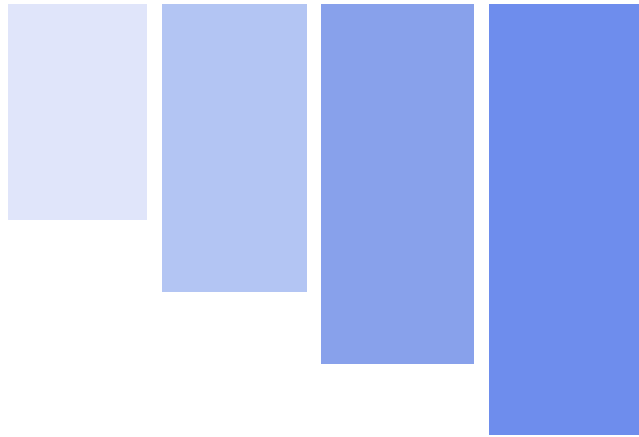
- 전라남도 일원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0년
- 목표연도 : 2025년

3) 내용적 범위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단계별 설립 추진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대상사업 선정 및 향후 운영 방안 마련 등
 - 전라남도 사회서비스 여건 및 대내외 환경 분석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사례조사 및 지역의견수렴 기반 추진방안 구축
 - 설립방안(신규 및 법인 확대 개편을 통한 전환 등) 방향 제시 및 사업계획 수립
 - 사회서비스원 단계별 추진방안 및 사업·조직 등 운영방안 마련
 - 시범사업 및 계획방향 수립(종합재가센터 설치 계획 포함)



제2장 지역여건 분석

1. 일반 현황
2. 복지 환경 분석
3. 요약 및 시사점



제2장 지역여건 분석

1. 일반 현황

(1) 위치 및 행정구역

- 전라남도는 동북아시아의 대한민국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음
 - 바다 건너 서쪽으로는 중국과 마주하고 있고, 동남쪽으로는 일본이 자리하고 있는 동북아의 중심이자 유라시아 대륙의 기점이며,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관문임
- 전남도를 흐르는 하천은 서남부 및 서북부의 광대한 평야를 유역에 형성시켜 비옥한 농토를 제공하고 있음
 - 목포만으로 유입하는 영산강, 전북에서 발원하여 전남북의 동부산악 지대를 흘러 내리고 있는 섬진강, 장흥군과 강진군 유역을 흐르는 탐진강으로 삼분되며, 전남도의 평야는 영산강 유역의 나주평야가 전북의 호남평야와 더불어 우리나라 굴지의 곡창 지대를 형성하고 있음
-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전남의 행정구역은 5개 시, 17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2,345.21km²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 시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 군 :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전남의 행정구역 면적은 전국(100,210km²)의 12.3%를 차지하고 있고, 시군별 면적은 해남군이 1,031.31km²로 가장 크고, 목포시가 51.62km²로 가장 작음

<표 2-1> 전라남도 행정구역별 현황

(단위 : km², 개)

구분	면적(km ²)	읍면동			
		읍	면	동	
				행정	법정
계	12,343.60	33	196	68	192
목포시	51.63	-	-	23	64
여수시	510.64	1	6	20	51
순천시	910.98	1	10	13	33
나주시	608.43	1	12	7	34
광양시	463.08	1	6	5	10
담양군	455.09	1	11	-	-
곡성군	547.46	1	10	-	-
구례군	443.25	1	7	-	-
고흥군	807.35	2	14	-	-
보성군	664.04	2	10	-	-
화순군	787.01	1	12	-	-
장흥군	622.35	3	7	-	-
강진군	500.91	1	10	-	-
해남군	1,031.33	1	13	-	-
영암군	612.55	2	9	-	-
무안군	449.71	3	6	-	-
함평군	392.12	1	8	-	-
영광군	474.94	3	8	-	-
장성군	518.40	1	10	-	-
완도군	396.61	3	9	-	-
진도군	440.11	1	6	-	-
신안군	655.61	2	12	-	-

자료 : 전라남도 홈페이지, 2019. 12. 31.

(2) 인구 현황 및 추이

1) 전라남도 인구 현황

- 2019년 기준, 전라남도의 인구는 1,868,745명으로 우리나라 17개 시·도별 중 9위를 차지함
- 전라남도의 행정구역별 인구는 여수시가 15.13%인 282,786명으로 가장 많고, 구례군이 1.42%인 26,563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 전라남도 행정구역별 인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비율	계	남	여
계	100	1,868,745	937,674	931,071
목포시	12.30	229,861	114,565	115,296
여수시	15.13	282,786	143,791	138,995
순천시	14.96	279,598	139,324	140,274
나주시	6.13	114,664	57,668	56,996
광양시	8.39	156,750	81,365	75,385
담양군	2.49	46,535	23,719	22,816
곡성군	1.55	28,887	14,114	14,773
구례군	1.42	26,563	12,924	13,639
고흥군	3.47	64,913	31,445	33,468
보성군	2.22	41,420	20,063	21,357
화순군	3.36	62,737	31,061	31,676
장흥군	2.06	38,563	18,690	19,873
강진군	1.89	35,286	16,944	18,342
해남군	3.76	70,354	34,642	35,712
영암군	2.92	54,593	28,027	26,566
무안군	4.34	81,105	40,659	40,446
함평군	1.76	32,861	16,404	16,457
영광군	2.88	53,852	26,828	27,024
장성군	2.45	45,739	23,489	22,250
완도군	2.71	50,689	25,457	25,232
진도군	1.64	30,715	15,093	15,622
신안군	2.15	40,274	21,402	18,872

자료 : 통계청(주민등록 인구통계), 2019. 12. 31.

- 2019년 기준 전라남도의 행정구역 년도별 인원 현황을 보았을 때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19개의 시·군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

<표 2-3> 전라남도 시·군별 인구 변화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계	1,903,914	100	1,896,424	100	1,882,970	100	1,868,745	100
목포시	237,739	12.5	234,379	12.4	232,327	12.3	229,861	12.3
여수시	288,988	15.2	286,382	15.1	283,300	15.0	282,786	15.1
순천시	278,548	14.6	279,331	14.7	279,389	14.8	279,598	15.0
나주시	104,376	5.5	110,110	5.8	113,839	6.0	114,664	6.1
광양시	155,580	8.2	155,857	8.2	156,564	8.3	156,750	8.4
담양군	47,229	2.5	47,285	2.5	46,917	2.5	46,535	2.5
곡성군	30,400	1.6	30,131	1.6	29,624	1.6	28,887	1.5
구례군	27,412	1.4	27,525	1.5	27,117	1.4	26,563	1.4
고흥군	67,656	3.6	66,736	3.5	65,777	3.5	64,913	3.5
보성군	44,469	2.3	43,755	2.3	42,803	2.3	41,420	2.2
화순군	65,303	3.4	64,680	3.4	63,933	3.4	62,737	3.4
장흥군	40,669	2.1	40,136	2.1	39,312	2.1	38,563	2.1
강진군	37,753	2.0	36,868	1.9	36,144	1.9	35,286	1.9
해남군	75,121	3.9	73,604	3.9	71,901	3.8	70,354	3.8
영암군	57,045	3.0	55,616	2.9	54,731	2.9	54,593	2.9
무안군	82,109	4.3	82,872	4.4	81,991	4.4	81,105	4.3
함평군	34,397	1.8	34,328	1.8	33,420	1.8	32,861	1.8
영광군	55,618	2.9	54,774	2.9	54,127	2.9	53,852	2.9
장성군	46,104	2.4	46,111	2.4	45,795	2.4	45,739	2.4
완도군	52,668	2.8	52,109	2.7	51,477	2.7	50,689	2.7
진도군	32,078	1.7	31,765	1.7	31,219	1.7	30,715	1.6
신안군	42,652	2.2	42,070	2.2	41,263	2.2	40,274	2.2

자료 : 통계청(주민등록인구현황), 2019. 12. 31.

2) 성별·연령별 인구 현황

- 2019년 12월 전라남도의 총 인구는 1,868,745명임. 이 중 남성 인구는 937,674명으로 여성의 931,071명 보다 다소 높은 50.2%의 구성비를 보임. 연령별로는 50대가 17.0%(318,048명)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40대가 14.2%(266,036명), 60대 13.8%(257,341명), 30대 10.5%(195,424명)순으로 인구가 많음
- 성별, 연령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대 미만에서 60대까지는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높은 반면, 70대부터는 여성의 인구 구성비가 남성을 상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중·후기 노령세대로 갈수록 여성과 남성의 구성비 격차는 더욱 벌어져 80대 이상 인구에서는 10명 중 약 8명(70.4%)이 여성 인구임

<표 2-4> 전라남도 성별·연령별 인구 현황(2019. 12)

(단위 : 명,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인구	139,429	175,262	204,910	195,424	266,036	318,048	257,341	192,430	119,865	1,868,745
비율	7.5	9.4	11.0	10.5	14.2	17.0	13.8	10.3	6.4	100
남성	71,185	91,010	113,410	102,774	142,564	169,455	129,010	82,744	35,522	937,674
비율	51.1	51.9	55.3	52.6	52.6	53.3	50.1	43.0	29.6	50.2
여성	68,244	84,252	91,500	92,650	123,472	148,593	128,331	109,686	84,343	931,071
비율	48.9	48.1	44.7	47.4	46.4	46.7	49.9	57.0	70.4	49.8

자료 : 통계청(주민등록인구현황), 2019. 12. 31.

3) 전라남도 출생 현황 및 변화 추이

- 전라남도의 출생아는 2017년 12,354명에서 2018년 11,238명, 2019년 10,83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장래인구추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약 9,456명, 2021년에는 9,196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출생아의 성별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는 여아보다 남아의 출생이 더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출생아 수의 감소와 더불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율 또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가임여성 1명당 평생 출산하는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의 경우 2017년 1,325명, 2018년 1,240명으로 감소하였음
- 유사하게 1년간 총 출생아 수를 당해 연도 연앙 인구로 나눈 수인 조출생률도 감소하고 있음
 - 2017년 6.5천명, 2018년 6.0천명으로 하락했으며, 2021년에는 5.2천명이 될 것으로 추계됨

<표 2-5> 전라남도 출생 현황 및 변화 추이

(단위 : 명, 천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출생아 수 (명)	계	12,354	11,238	10,832	9,456	9,196
	남	6,439	5,740	5,517	-	-
	여	5,915	5,498	5,315	-	-
합계출산율(명)		1,325	1,240	1,234	-	-
조출생률(천명)		6.5	6.0	5.8	5.4	5.2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2019, 전라남도 홈페이지(시·군별 장래인구특별추계), 2020. 08. 31

주 1)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 1명당 평생 출산하는 자녀 수

2) 조출생율 : 1년간 총 출생아 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4) 전라남도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 전국 및 시·도의 합계출산율 비교를 통해 전라남도 출산율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음.
2018년 기준 전라남도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국 평균 0.76명보다 높은 수준임
- 또한 세종에 이어 17개 광역시·도 중 2번째로 합계출산율이 많으며 세종, 제주와 더불어 아직 1.2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속함
- 다른 시·도에 비해 감소 폭이 더디긴 하나, 전라남도 또한 출산율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임
- 2013년 합계출산율은 1.52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1.24명으로 하락하였으며, 감소 폭은 -0.28%임

<표 2-6> 전국 및 시·도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단위 : 명, %)

구분	합계출산율						증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 대비	5년 전 대비
서울	0.97	0.98	1.00	0.94	0.84	0.76	-0.08	-0.21
부산	1.05	1.09	1.14	1.10	0.98	0.90	-0.08	-0.15
대구	1.13	1.17	1.22	1.19	1.07	0.99	-0.08	-0.14
인천	1.20	1.21	1.22	1.14	1.01	1.01	0.00	-0.19
광주	1.17	1.20	1.21	1.17	1.05	0.97	-0.08	-0.20
대전	1.23	1.25	1.28	1.19	1.08	0.95	-0.13	-0.28
울산	1.39	1.44	1.49	1.42	1.26	1.13	-0.13	-0.26
세종	1.44	1.35	1.89	1.82	1.67	1.57	-0.10	0.13
경기	1.23	1.24	1.27	1.19	1.07	1.00	-0.07	-0.23
강원	1.25	1.25	1.31	1.24	1.12	1.07	-0.05	-0.18
충북	1.37	1.36	1.41	1.36	1.24	1.17	-0.07	-0.20
충남	1.44	1.42	1.48	1.40	1.28	1.19	-0.09	-0.25
전북	1.32	1.33	1.35	1.25	1.15	1.04	-0.11	-0.28
전남	1.52	1.50	1.55	1.47	1.33	1.24	-0.09	-0.28
경북	1.38	1.41	1.46	1.40	1.26	1.17	-0.09	-0.21
경남	1.37	1.41	1.44	1.36	1.23	1.12	-0.11	-0.25
제주	1.43	1.48	1.48	1.43	1.31	1.22	-0.09	-0.21
계	1.19	1.21	1.24	1.17	1.05	0.98	-0.07	-0.21

자료 : 통계청(전국 시·도별합계출산율), 2018. 12. 31.

5) 전라남도 인구 추이

- 전라남도의 인구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12,705명 감소하였고, 2015년 3,216명 증가하였으나,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표 2-7> 전라남도 인구추이

(단위 : 명, %)

연도	인구수			인구추이	
	계	남	여	증감	증감률(%)
2010	1,918,485	958,624	959,861	5,481	0.29
2011	1,914,339	956,747	957,592	-4,146	-0.22
2012	1,909,618	954,354	955,264	-4,721	-0.25
2013	1,907,172	952,597	954,575	-2,446	-0.13
2014	1,905,780	951,975	953,805	-1,392	-0.07
2015	1,908,996	953,881	955,115	3,216	0.17
2016	1,903,914	951,889	952,025	-5,082	-0.27
2017	1,896,424	948,290	948,134	-7,490	-0.39
2018	1,882,970	943,000	939,970	-13,454	-0.71
2019	1,868,745	937,674	931,071	-14,225	-0.76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9. 12. 31.

- 전라남도의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실제 전라남도의 인구 추이가 감소하는 것과 비슷하게 2020년 ~ 2035년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음

<표 2-8> 전라남도 장래인구추계

(단위 : 명)

구분	2020	2025	2030	2035
계	1,764,193	1,732,133	1,715,046	1,696,424
목포시	227,815	216,111	208,040	200,539
여수시	265,113	255,988	249,130	242,191
순천시	267,907	265,120	262,351	258,710
나주시	113,628	123,593	130,015	133,607
광양시	145,431	145,714	144,231	142,208
담양군	43,232	43,293	44,002	44,720
곡성군	27,647	26,597	26,656	26,941
구례군	23,817	24,376	25,010	25,660
고흥군	59,306	57,981	57,441	57,329
보성군	37,688	36,241	36,016	36,023
화순군	58,554	56,695	55,934	55,688
장흥군	34,082	33,557	34,084	34,391
강진군	31,718	30,296	29,937	29,731
해남군	63,763	61,180	59,921	58,848
영암군	54,854	51,495	50,204	49,211
무안군	80,252	77,970	76,817	75,534
함평군	29,458	28,958	29,187	29,518
영광군	48,663	47,741	47,121	46,681
장성군	41,523	41,667	42,312	43,045
완도군	47,144	46,098	45,428	44,782
진도군	28,399	27,479	27,073	26,811
신안군	34,199	33,983	34,136	34,256

자료 : 전라남도 홈페이지(전라남도 시군별 장래인구특별추계), 2020. 08. 31.

2. 복지 환경 분석

(1) 사회복지 대상자 현황

- 2019년 기준 전라남도 사회복지 대상자와 17개의 시·도의 비교분석 결과는 <표2-9>와 같으며 전라남도는 여성931,071명, 노인422,548명, 청소년286,707명, 아동270,67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순의 대상자 분포 현황은 전국 지자체 현황과 비슷함

- 전라남도의 사회복지대상자 수준(위치)을 파악하기 위해 17개 시·도와 비교한 결과,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해야 할 주요 서비스 공급 대상자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전라남도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임을 나타냄

<표2-9> 시·도별 사회복지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노인	아동	청소년	영·유아	여성	한부모 가구	장애인	정신 장애인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서울	1,478,664	1,277,981	1,461,535	355,781	4,985,048	29,226	394,843	16,435	317,269	91,673
부산	620,123	455,670	495,925	129,022	1,738,424	14,874	175,378	8,201	172,439	37,630
대구	379,277	366,094	401,341	98,560	1,232,745	11,264	125,485	6,065	117,594	29,951
인천	384,548	458,390	475,841	127,433	1,474,777	13,382	144,574	4,813	122,027	25,886
광주	195,479	250,112	273,389	64,874	735,728	7,548	70,177	3,091	76,193	20,223
대전	198,691	237,783	259,451	63,632	738,263	6,608	73,222	3,179	59,317	16,598
울산	132,565	193,047	191,675	55,201	558,307	3,358	51,014	1,417	26,594	7,504
세종	31,949	80,513	56,648	26,388	170,730	665	12,046	440	5,749	1,814
경기	1,651,341	2,223,563	2,209,936	632,576	6,579,671	37,340	559,878	19,303	328,752	95,199
강원	302,886	217,388	239,793	57,790	766,116	6,070	101,484	3,157	71,493	23,217
충북	273,425	246,187	255,819	68,475	789,623	5,535	97,688	3,740	62,507	17,691
충남	386,674	341,552	332,283	95,936	1,041,771	6,629	133,724	5,363	69,022	22,046
전북	370,676	274,429	298,257	68,721	914,807	8,581	132,364	5,458	105,955	40,142
전남	422,548	270,670	286,707	72,596	931,071	7,178	141,888	5,726	87,003	40,898
경북	549,415	377,416	389,354	105,634	1,323,799	9,282	180,898	7,389	113,845	39,249
경남	548,257	540,294	536,513	147,111	1,670,521	12,061	187,968	7,911	121,275	37,120
제주	100,397	117,818	114,188	32,712	333,644	3,005	36,287	1,292	24,323	7,120
계	8,026,915	7,928,907	8,278,655	2,202,442	25,985,045	182,606	2,618,918	102,980	1,881,357	553,961

자료 : 통계청(주민등록 인구통계, 성별인구통계, 한부모 가구, 장애인 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수급자 현황), 전라남도 여성정책관(영·유아), 보건복지부(장애인등록현황) 2019. 12. 31.

- 1) 관련법에 근거하여, 노인(만65세 이상), 아동(18세 미만), 청소년(만9세 이상 24세 이하), 영·유아(0~5세), 장애인(등록장애인) 추출
- 2) 한부모 가구는 가구 단위가 아닌 한부모가족지원(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포함)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모든 수급자를 총칭함
- 3) 대상자는 중복 가능함(예. 아동, 청소년)
- 4) 영·유아는 최신 시점인 2020. 06. 30. 기준

1) 전체(지역별)

- 전라남도의 사회복지 수요를 더욱 자세히 파악하고자, 2019년 12월 기준 시·군별 사회복지 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2-10>과 같음

<표 2-10> 전라남도 시·군별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노인	아동	청소년	영·유아	여성	한부모 가구	장애인	정신 장애인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목포시	36,087	39,864	41,495	145,381	115,296	1,515	14,024	498	14,122
여수시	51,995	42,852	46,333	169,708	138,995	963	17,980	491	11,257
순천시	42,273	47,867	51,311	165,693	140,274	987	15,939	628	7,878
나주시	25,257	17,667	15,252	71,743	56,996	425	8,659	615	5,037
광양시	19,300	27,198	29,011	87,694	75,385	506	7,765	219	3,871
담양군	13,960	4,664	5,944	29,425	22,816	109	4,011	164	2,241
곡성군	10,084	2,741	3,685	19,965	14,773	77	3,303	115	1,673
구례군	8,676	2,744	3,288	18,042	13,639	101	2,826	91	1,355
고흥군	25,806	5,754	6,778	45,560	33,468	210	7,545	279	4,048
보성군	15,429	3,955	4,607	28,709	21,357	142	4,467	169	2,503
화순군	16,286	8,118	9,914	40,423	31,676	232	5,107	213	3,262
장흥군	12,720	4,306	4,870	26,722	19,873	133	3,937	157	2,563
강진군	11,883	3,916	4,333	24,054	18,342	81	3,396	119	2,082
해남군	21,957	8,526	8,902	47,174	35,712	273	6,483	360	4,304
영암군	14,074	7,442	7,557	33,873	26,566	175	4,772	154	2,199
무안군	16,858	14,078	13,348	50,335	40,446	284	6,280	551	2,732
함평군	11,564	3,118	3,713	22,217	16,457	94	3,813	117	1,743
영광군	15,194	7,099	7,169	35,828	27,024	212	5,214	197	3,153
장성군	13,067	5,714	5,703	29,135	22,250	142	4,208	238	2,307
완도군	15,921	6,181	5,951	32,756	25,232	186	4,630	152	2,551
진도군	10,085	3,551	3,728	21,070	15,622	112	3,190	109	2,003
신안군	14,072	3,315	3,815	25,394	18,872	111	4,339	90	1,935
계	422,548	270,670	286,707	72,596	931,071	7,070	141,888	5,726	84,819

자료 : 전라남도 홈페이지(여성인구, 노인인구), 전라남도 여성정책관(영·유아), 통계청(주민등록인구현황, 한부모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건복지부(장애인등록현황), 2019. 12. 31.

- 1) 단, 한부모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최신 시점인 2018.12.31, 영·유아는 최신 시점인 2020.06.30. 기준
- 2) 관련법에 근거하여, 노인(만65세 이상), 아동(18세 미만), 청소년(만9세 이상 24세 이하), 영·유아(0~5세), 장애인(등록장애인) 등을 추출
- 3) 한부모 가구는 가구 단위가 아닌 한부모가족지원(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포함)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모든 수급자를 총칭함
- 4) 대상자는 중복 가능함(예. 아동, 청소년)

2) 노인 부문

- 전라남도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11>과 같으며 2019년 기준 전라남도의 노인 인구는 422,548명으로 전라남도 전체 인구 1,868,745명의 22.6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의 노인 인구는 2015년 391,837명에서 2019년 422,54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특히 장흥군은 2015년 29.05%에서 2019년 32.98%로 3.93% 증가하였음
- 2019년 기준 전라남도 노인 인구 비율은 22.61%였으나, 고흥군이 39.75%비율로 가장 높고, 광양시가 12.31%로 가장 낮았음

<표 2-11> 전라남도 노인 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목포시	31,203	13.09	32,445	33,834	34,821	36,087	15.70
여수시	44,997	15.51	46,632	48,569	49,609	51,995	18.39
순천시	36,795	13.20	37,961	39,498	40,542	42,273	15.12
나주시	22,957	23.38	23,489	24,178	24,658	25,257	22.03
광양시	16,369	10.66	17,026	17,712	18,319	19,300	12.31
담양군	13,208	28.10	13,329	13,623	13,816	13,960	30.00
곡성군	9,862	32.15	9,912	10,035	10,028	10,084	34.91
구례군	8,119	29.73	8,250	8,447	8,510	8,676	32.66
고흥군	25,102	36.59	25,364	25,496	25,568	25,806	39.75
보성군	15,182	33.48	15,269	15,441	15,376	15,429	37.25
화순군	15,409	23.40	15,516	15,828	15,996	16,286	25.96
장흥군	12,641	29.05	12,610	12,682	12,611	12,720	32.98
강진군	11,656	30.07	11,655	11,773	11,828	11,883	33.68
해남군	21,362	28.04	21,549	21,862	21,811	21,957	31.21
영암군	13,459	23.15	13,574	13,777	13,835	14,074	25.78
무안군	15,875	19.30	16,175	16,467	16,599	16,858	20.79
함평군	11,263	32.29	11,302	11,447	11,421	11,564	35.19
영광군	14,710	26.14	14,773	15,002	15,045	15,194	28.21
장성군	12,445	26.84	12,546	12,805	12,936	13,067	28.57
완도군	15,369	28.99	15,623	15,760	15,734	15,921	31.41
진도군	10,116	31.15	10,105	10,191	10,111	10,085	32.83
신안군	13,738	31.73	13,811	14,024	13,958	14,072	34.94
계	391,837	20.53	398,916	408,451	413,132	422,548	22.61

자료 : 통계청(주민등록 인구현황), 2019. 12. 31. 관련 법에 근거하여 만 65세 이상 추출



- 노인복지시설에는 복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분석에서 다루었던 분야 중 생활 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이용시설인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재가서비스 시설에 대한 현황 분석이 포함됨
- 먼저, 17개 시·도별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표2-12> 참조), 2019년 기준 전라남도 노인인구 순위는 17개 시·도중 6번째에 위치하고 있음
 -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수는 7,594명이고, 시설은 220개로 이용자 100명당 시설 수는 2.9개소(전국2.35개소)로 17개 시·도 중 첫 번째로 많은 시설 수를 보임.
- 한편,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자 100명당 종사자 수는 65.3명(전국 65.93)으로 17개 시·도 중 13번째였으며, 노인 인구수가 유사한 충남과 비교할 때 노인 인구수는 전라남도가 많지만, 시설 수와 종사자 수는 더 적다는 해석이 가능함

<표 2-12> 시·도별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단위 : 명, 개소)

지역	구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인구	이용자 수 ¹⁾		시설 수 ²⁾	종사자 수	시설 수	종사자 수
		노인요양 시설	노인공동 생활가정				
서울	1,478,664	12,053	2,566	205 (1.70)	7,967 (66.1)	304 (11.85)	1,846 (71.9)
부산	620,123	5,110	132	92 (1.80)	3,374 (66.0)	22 (16.67)	109 (82.6)
대구	379,277	6,138	1,175	112 (1.82)	4,109 (66.9)	140 (11.91)	892 (75.9)
인천	384,548	11,615	856	291 (2.51)	7,812 (67.3)	104 (12.15)	733 (85.6)
광주	195,479	2,783	130	78 (2.80)	1,593 (57.2)	17 (13.08)	107 (82.3)
대전	198,691	4,838	310	88 (1.82)	3,102 (64.1)	40 (12.90)	215 (69.4)
울산	132,565	1,422	94	36 (2.53)	1,021 (71.8)	13 (13.83)	84 (89.4)
세종	31,949	454	14	11 (2.42)	297 (65.4)	2 (14.29)	13 (92.9)
경기	1,651,341	48,284	4,771	1,191 (2.47)	31,571 (65.4)	633 (13.27)	3,917 (82.1)
강원	302,886	7,889	919	198 (2.51)	5,371 (68.1)	115 (12.51)	696 (75.7)
충북	273,425	7,650	842	188 (2.46)	4,916 (64.3)	108 (12.83)	603 (71.6)
충남	386,674	8,121	768	208 (2.56)	5,641 (69.5)	101 (13.15)	631 (82.2)
전북	370,676	6,458	489	163 (2.52)	4,309 (66.7)	65 (13.29)	381 (77.9)
전남	422,548	7,594	711	220 (2.90)	4,960 (65.3)	91 (12.80)	516 (72.6)
경북	549,415	10,541	939	269 (2.55)	6,960 (66.0)	121 (12.89)	715 (76.1)
경남	548,257	8,803	358	189 (2.15)	5,720 (65.0)	49 (13.69)	285 (79.6)
제주	100,397	3,214	79	56 (1.74)	2,138 (66.5)	9 (11.39)	56 (70.9)
계	8,026,915	152,967	15,153	3,595 (2.35)	100,861 (65.9)	1,934 (12.76)	11,799 (77.9)

자료 : 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현황), 2019. 12. 31.

1) 이용자는 입소 현원에 대한 통계

2) 괄호는 이용자 100명당 시설 수 및 종사자 수

- 다음으로 전라남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1개소(<표2-12> 참조), 2019년 기준 이용자 100명당 시설 수는 12.8개소(시도 순위 10위, 전국12.76개소)로 유사한 인구로 보이는 충남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이용자 100명당 종사자 수는 72.6명(전국 77.9명)으로, 전국평균보다 약간 작으며, 17개 시·도 중 13번째인 것을 알 수 있음
 - 종합해보면, 전라남도 노인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복지시설의 종사자 수는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음으로 전라남도 시군별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은<표2-13>에 제시됨. 먼저, 2019년 기준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목포시가 2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여수시, 순천시 21개소 등으로 나타남
 - 이용자 100명당 시설 수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보성군(1.87개소)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이용자 100명당 종사자 수는 해남군이 69.63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순군이 59.03명으로 가장 적은 수를 보임
 - 즉,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화순군이 이용자와 시설에 비해, 종사자는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이용자 100명당 시설 수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무안군이 20개소로 가장 크게 나타남
 - 이용자 100명당 종사자 수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가장 많은 장성군 114.29명과 가장 적은 영암군 52.94명의 차이는 60명 이상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영암군이 다른 군에 비해 종사자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2-13> 전라남도 시·군별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지역	노인 인구	이용자 수		시설 수	종사자 수	시설 수	종사자 수
		노인요양 시설(현원)	노인공동 생활가정(현원)				
목포시	36,087	722	61	22 (3.05)	469 (64.96)	9 (14.75)	43 (70.49)
여수시	51,995	693	73	21 (3.03)	466 (67.24)	9 (12.33)	54 (73.97)
순천시	42,273	838	51	21 (2.51)	568 (67.78)	6 (11.76)	35 (68.63)
나주시	25,257	478	44	15 (3.14)	307 (64.23)	5 (11.36)	29 (65.91)
광양시	19,300	286	71	9 (3.15)	183 (63.99)	8 (11.27)	53 (74.65)
담양군	13,960	387	43	12 (3.10)	252 (65.12)	5 (11.63)	31 (72.09)
곡성군	10,084	256	19	7 (2.73)	172 (67.19)	3 (15.79)	11 (57.89)
구례군	8,676	176	9	6 (3.41)	116 (65.91)	1 (11.11)	5 (55.56)
고흥군	25,806	568	8	13 (2.29)	370 (65.14)	1 (12.50)	5 (62.50)
보성군	15,429	107	36	2 (1.87)	67 (62.62)	4 (11.11)	25 (69.44)
화순군	16,286	349	31	11 (3.15)	206 (59.03)	4 (12.90)	21 (67.74)
장흥군	12,720	192	-	5 (2.60)	118 (61.46)	-	-
강진군	11,883	131	26	4 (3.05)	79 (60.31)	3 (11.54)	20 (76.92)
해남군	21,957	326	80	10 (3.07)	227 (69.63)	10 (12.50)	62 (77.50)
영암군	14,074	264	17	9 (3.41)	165 (62.50)	2 (11.76)	9 (52.94)
무안군	16,858	411	30	13 (3.16)	264 (64.23)	6 (20.00)	24 (80.00)
함평군	11,564	390	15	11 (2.82)	258 (66.15)	2 (13.33)	14 (93.33)
영광군	15,194	307	14	8 (2.61)	201 (65.47)	2 (14.29)	10 (71.43)
장성군	13,067	217	7	6 (2.76)	136 (62.67)	1 (14.29)	8 (114.29)
완도군	15,921	247	22	8 (3.24)	171 (69.23)	3 (13.64)	14 (63.64)
진도군	10,085	95	18	2 (2.11)	60 (63.16)	2 (11.11)	14 (77.78)
신안군	14,072	154	36	5 (3.25)	105 (68.18)	5 (13.89)	29 (80.56)
계	422,548	7,594	711	220(2.90)	4,960(65.31)	91 (12.80)	516 (72.57)

자료 : 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현황), 2019. 12. 31.

1) 이용자는 입소 현원에 대한 통계

- 종합하면 이용자 100명당 시설 수와 종사자 수를 고려할 때, 전라남도에서 노인요양 시설 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곳은 화순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곳은 영암군이라 할 수 있으며 장흥군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없음
- 다음으로 시·도별 노인재가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아래 <표2-14>과 같으며 전라남도 노인재가복지시설은 총 370개소, 서비스별로는 방문요양서비스168개소, 방문목욕서비스 105개소, 방문간호서비스 3개소, 주야간보호서비스 113개소, 단기보호서비스 5개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8개소로, 17개 시·도의 시설별 비율과 유사한 분포를 보임

<표 2-14> 시·도별 노인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주·야간보 호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재가노인지 원서비스
서울	821	206	163	7	395	30	20
부산	252	93	26	2	82	-	49
대구	140	48	14	1	42	3	32
인천	243	88	62	4	71	1	17
광주	280	123	77	2	69	2	7
대전	195	68	43	2	71	-	11
울산	66	21	7	1	19	1	17
세종	13	3	1	-	8	-	1
경기	943	258	183	19	415	12	56
강원	314	102	70	10	95	2	35
충북	105	29	6	-	53	-	17
충남	207	61	40	2	81	8	15
전북	317	107	60	3	115	2	30
전남	412	168	105	3	113	5	18
경북	221	60	36	2	78	9	36
경남	282	83	49	1	96	3	50
제주	52	18	16	1	16	-	1
계	4,863	1,536	958	60	1,819	78	412

자료 : 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현황), 2019. 12. 31.

- 다음으로 전라남도 시·군별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현황을 보면(<표2-15> 참고), 노인 인구수는 여수시가 가장 많았지만, 시설 이용자는 고흥군이 1,1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흥군 1,426명, 목포시 762명, 영광군 632명, 순천시 586명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노인 인구수 대비 이용자가 가장 많은 곳은 장흥군 11.21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해남군 0.41명으로 서비스별로는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가 5,2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야간 보호서비스 2,027명, 방문목욕서비스 2,0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2-15> 전라남도 시·군별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노인 인구수	이용자수*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주·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목포시	36,087	762(2.11)	377 (49.48)	50 (6.56)	-	230 (30.18)	-	105 (13.78)
여수시	51,995	417(0.80)	157 (37.65)	14 (3.36)	-	195 (46.76)	-	51 (12.23)
순천시	42,273	586(1.39)	282 (48.12)	116 (19.80)	-	148 (25.26)	2 (0.34)	38 (6.48)
나주시	25,257	472(1.87)	173 (36.65)	183 (38.77)	-	72 (15.25)	-	44 (9.32)
광양시	19,300	254(1.32)	56 (22.05)	7 (2.76)	-	191 (75.20)	-	-
담양군	13,960	73(0.52)	56 (76.71)	-	-	17 (23.29)	-	-
곡성군	10,084	398(3.95)	124 (31.16)	99 (24.87)	8 (2.01)	152 (38.19)	-	15 (3.77)
구례군	8,676	72(0.83)	41 (56.94)	31 (43.06)	-	-	-	-
고흥군	25,806	1,163(4.51)	501 (43.08)	401 (34.48)	-	261 (22.44)	-	-
보성군	15,429	629(4.08)	430 (68.36)	109 (17.33)	-	90 (14.31)	-	-
화순군	16,286	536(3.29)	343 (63.99)	126 (23.51)	-	67 (12.50)	-	-
장흥군	12,720	1,426 (11.21)	1,166 (81.77)	206 (14.45)	-	54 (3.79)	-	-
강진군	11,883	302(2.54)	124 (41.06)	105 (34.77)	-	58 (19.21)	-	15 (4.97)
해남군	21,957	89(0.41)	63 (70.79)	-	-	26 (29.21)	-	-
영암군	14,074	223(1.58)	123 (55.16)	7 (3.14)	-	93 (41.70)	-	-
무안군	16,858	126(0.75)	92 (73.02)	-	-	34 (26.98)	-	-
함평군	11,564	189(1.63)	93 (49.21)	-	-	81 (42.86)	-	15 (7.94)
영광군	15,194	632(4.16)	360 (56.96)	150 (23.73)	-	107 (16.93)	-	15 (2.37)
장성군	13,067	420(3.21)	136 (32.38)	165 (39.29)	-	87 (20.71)	-	32 (7.62)
완도군	15,921	236(1.48)	196 (83.05)	-	-	40 (16.95)	-	-
진도군	10,085	514(5.10)	231 (44.94)	244 (47.47)	-	24 (4.67)	-	15 (2.92)
신안군	14,072	120(0.85)	120	-	-	-	-	-
계	422,548	9,639(2.28)	5,244 (54.40)	2,013 (20.88)	8 (0.08)	2,027 (21.03)	2 (0.02)	345 (3.58)

자료 : 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현황), 2019. 12. 31.

* 이용자는 입소 현원에 대한 통계, 괄호는 노인 인구 수 대비 이용자 수

- 한편, 전라남도 시·군별 노인재가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표2-16> 참고), 목포시 59개소, 장흥군 42개소, 여수시 39개소, 고흥군 32개소, 영광군 25개소 등의 순서로 많은 시설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용자 100명당 시설 수는 여수시가 9.4개소로 가장 많았고, 장성군이 2.1개소로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한편, 이용자 수 대비 시설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비스 영역은 방문요양서비스임(이용자 100명당 3.2개소)

<표 2-16> 전라남도 시·군별 노인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이용자수 ¹⁾	계 ²⁾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주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재가노인 자원서비스
목포시	762	59(7.7)	22	14	1	18	-	4
여수시	417	39(9.4)	16	10	-	9	-	4
순천시	586	23(3.9)	7	4	-	8	2	2
나주시	472	21(4.4)	9	5	-	5	-	2
광양시	254	23(9.1)	7	3	-	13	-	-
담양군	73	6(8.2)	2	-	-	4	-	-
곡성군	398	13(3.3)	2	3	1	6	-	1
구례군	72	8(11.1)	4	2	-	1	1	-
고흥군	1,163	32(2.8)	12	11	-	9	-	-
보성군	629	19(3.0)	9	6	-	4	-	-
화순군	536	19(3.5)	9	5	1	4	-	-
장흥군	1,426	42(2.9)	23	16	-	3	-	-
강진군	302	7(2.3)	3	1	-	1	1	1
해남군	89	6(6.7)	4	-	-	2	-	-
영암군	223	12(5.4)	4	3	-	5	-	-
무안군	126	10(7.9)	4	1	-	5	-	-
함평군	189	12(6.3)	4	3	-	4	-	1
영광군	632	25(4.0)	10	7	-	6	1	1
장성군	420	9(2.1)	4	2	-	2	-	1
완도군	236	11(4.7)	6	3	-	2	-	-
진도군	514	12(2.3)	5	5	-	1	-	1
신안군	120	4(3.3)	2	1	-	1	-	-
계	9,639	412(4.27)	168	105	3	113	5	18

자료 : 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현황), 2019. 12. 31.

- 1) 이용자는 입소 현원에 대한 통계
- 2) 괄호는 이용자 100명당 시설 수

- 다음으로 전라남도 시·군별 노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장흥군이 8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안군이 20명으로 가장 적었음
- 이용자 100명당 종사자 수는 여수시 83.2명, 구례군 77.8명, 목포시 74.5명, 담양군 71.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신안군과 강진군의 종사자 수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종합하면, 전라남도 노인재가서비스 현황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용자 수 대비 시설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장흥군이 시설 수, 종사자 수, 이용자 수가 높고, 이용자 100명당 시설 수와 종사자 수는 여수시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2-17> 전라남도 시·군별 노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주·야간보 호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재가노인 자원서비스
목포시	568(74.5)	312	109	16	118	-	13
여수시	347(83.2)	236	13	-	88	-	10
순천시	394(67.2)	256	42	-	87	4	5
나주시	173(36.7)	121	15	-	32	-	5
광양시	142(55.9)	45	4	-	93	-	-
담양군	52(71.2)	44	-	-	8	-	-
곡성군	133(33.4)	63	4	1	62	-	3
구례군	56(77.8)	47	7	-	1	1	-
고흥군	458(39.4)	283	68	-	107	-	-
보성군	355(56.4)	262	55	-	38	-	-
화순군	313(58.4)	219	72	1	21	-	-
장흥군	832(58.3)	612	193	-	27	-	-
강진군	76(25.2)	38	9	-	27	-	2
해남군	61(68.5)	50	-	-	11	-	-
영암군	106(47.5)	66	2	-	38	-	-
무안군	75(59.5)	43	3	-	29	-	-
함평군	89(47.1)	53	-	-	36	-	-
영광군	278(44.0)	219	10	-	46	-	3
장성군	139(33.1)	92	14	-	29	-	4
완도군	102(43.2)	84	-	-	18	-	-
진도군	149(29.0)	119	18	-	9	-	3
신안군	20(16.7)	10	8	-	2	-	-
계	4,918(51.02)	3,274	646	18	927	5	48

자료 : 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현황), 2019. 12. 31.

* 괄호는 이용자 100명당 종사자 수

3) 여성·가족 부문

- 전라남도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여성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표2-18>과 같음
 - 2019년 기준, 2015년 955,115명에서 2019년 931,071명으로 전라남도 전체 인구감소에 따른 자연 감소로 추정됨
 - 순천시, 나주시 경우는 해당 기간 동안 인구 증가로 인해 여성 인구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임

<표 2-18> 전라남도 여성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목포시	119,407	119,265	117,616	116,598	115,296
여수시	143,080	142,423	141,260	139,498	138,995
순천시	139,602	139,589	140,164	140,275	140,274
나주시	48,696	51,848	54,714	56,565	56,996
광양시	74,772	75,568	75,556	75,592	75,385
담양군	23,341	23,506	23,539	23,234	22,816
곡성군	15,724	15,614	15,488	15,207	14,773
구례군	14,030	14,070	14,133	13,926	13,639
고흥군	35,574	35,100	34,624	33,994	33,468
보성군	23,421	22,966	22,602	22,078	21,357
화순군	33,485	33,190	32,842	32,445	31,676
장흥군	22,422	20,999	20,637	20,227	19,873
강진군	20,251	19,626	19,137	18,794	18,342
해남군	39,145	38,583	37,737	36,648	35,712
영암군	28,424	27,792	27,114	26,613	26,566
무안군	41,138	40,956	41,399	40,887	40,446
함평군	17,639	17,350	17,324	16,778	16,457
영광군	28,270	27,894	27,478	27,127	27,024
장성군	22,966	22,829	22,811	22,590	22,250
완도군	26,584	26,383	26,017	25,655	25,232
진도군	16,675	16,377	16,173	15,891	15,622
신안군	20,469	20,097	19,769	19,348	18,872
계	955,115	925,025	948,134	939,970	931,071

자료 : 통계청(주민등록 인구현황), 2019. 12. 31.

- 여성·가족 관련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다음 <표 2-19>와 같음

<표 2-19> 전라남도 여성·가족 관련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분			시설 수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생활시설	일반지원시설	2
		청소년지원시설	-
	이용시설	자활지원센터	1
		성매매피해상담소	3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생활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이용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8
가정폭력 보호시설	생활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4
	이용시설	가정폭력상담소	10
		긴급전화센터(1366)	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생활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2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3
		일시지원복지시설	-
	이용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이용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2

자료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2020. 06. 30.

4) 아동·영·유아 부문

- 2019년 기준 전라남도 아동의 경우 2016년 317,374명에서 2019년 270,670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임

<표 2-20> 전라남도 아동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목포시	47,775	46,308	43,960	41,738	39,864
여수시	50,962	49,313	47,312	44,781	42,852
순천시	54,539	52,681	51,028	49,163	47,867
나주시	14,282	15,934	17,128	17,587	17,667
광양시	31,620	30,774	29,542	28,219	27,198
담양군	5,523	5,377	5,203	4,916	4,664
곡성군	3,517	3,374	3,166	2,979	2,741
구례군	3,532	3,402	3,253	2,969	2,744
고흥군	7,245	6,809	6,462	6,039	5,754
보성군	5,474	5,097	4,794	4,356	3,955
화순군	10,486	9,947	9,358	8,611	8,118
장흥군	5,738	5,154	4,820	4,547	4,306
강진군	5,313	4,980	4,534	4,183	3,916
해남군	11,091	10,578	9,893	9,170	8,526
영암군	9,594	8,989	8,307	7,778	7,442
무안군	15,831	15,427	15,170	14,601	14,078
함평군	4,134	3,885	3,723	3,397	3,118
영광군	8,232	7,939	7,462	7,177	7,099
장성군	6,704	6,521	6,271	5,987	5,714
완도군	7,323	7,081	6,789	6,454	6,181
진도군	4,338	4,132	3,933	3,712	3,551
신안군	4,121	3,942	3,729	3,503	3,315
계	317,374	307,644	295,837	281,867	270,670

자료 : 통계청(주민등록 인구통계), 2019. 12. 31.

1) 관련 법인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만 18세 미만 추출

- 또한 영·유아 경우 2016년 75,316명에서 2020년 6월 72,596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이로 이는 2000년대 들어 국내에서 본격화된 저출산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추정이 가능하며, 여성인구가 줄어듦과, 출산율이 17개시·도 대비 -0.28%로 첫 번째 순위인 것으로 보아 전라남도의 모든 시·군에서도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 2-21> 전라남도 영·유아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월
목포시	10,622	9,533	8,820	8,004	9,661
여수시	11,998	11,359	10,511	9,745	11,620
순천시	11,684	11,233	10,841	10,533	12,737
나주시	5,007	5,274	5,245	4,943	5,762
광양시	8,017	7,352	6,798	6,396	7,512
담양군	1,464	1,395	1,269	1,143	1,323
곡성군	719	656	614	518	575
구례군	719	659	552	507	592
고흥군	1,344	1,268	1,199	1,200	1,455
보성군	1,345	1,201	1,052	890	990
화순군	1,963	1,771	1,608	1,518	1,809
장흥군	1,105	1,004	948	901	1,107
강진군	1,281	1,104	987	885	987
해남군	3,055	2,716	2,437	2,201	2,440
영암군	2,545	2,217	1,981	1,862	2,117
무안군	3,759	3,424	3,118	2,817	3,490
함평군	976	874	749	649	748
영광군	2,004	1,835	1,815	1,964	2,320
장성군	1,789	1,712	1,640	1,469	1,669
완도군	1,892	1,727	1,651	1,519	1,812
진도군	980	922	845	817	950
신안군	1,048	961	866	794	920
계	75,316	70,197	65,546	61,275	72,596

자료 : 통계청(주민등록 인구통계), 2019. 12. 31,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2020. 06. 30.

1) 어린이집 입소 대상인 만0~5세

- 보육시설 관련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시·도별 현황과 전라남도 시·군별 현황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함
- 먼저, 시·도별 현황에서는 보육아동,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수를 살펴보고, 지역별 비교를 위해 보육아동 100명당 시설 수를 제시함. 다음으로 전라남도 시·군별 현황에서는 보육아동, 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수, 보육 교원 수를 살펴보고, 상대적 비교를 위해 전라남도 시·군별 보육 아동 100명당 시설 수와 보육 교원 수를 제시하였음
- 먼저, 17개 시·도별 어린이집 현황을 제시한 <표2-22>를 보면, 2020년 기준 전라남도 어린이집 입소 보육 아동 수는 47,796명, 어린이집은 1,147개소, 보육 아동 100명당 시설 수는 2.4개소(전국 2.7개소)로 전국 17개 시·도중 14위로 낮음
- 한편, 설립 주체별 시설 수의 비율을 보면 가정(34.35%), 민간(31.73%), 사회복지법인(13.95%), 국공립(12.82%), 법인단체 등(4.27%), 직장(2.70%), 부모협동(0.17%)의 순으로 나타남
- 즉, 시·도별 설립 주체별 비율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전라남도의 어린이집은 보육아동 100명당 시설 수도 적을뿐더러 가정과 민간 특히, 가정 어린이집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국·공립 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2019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중 해당 설립 주체별 비율을 살펴보면, 국공립 시설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곡성군 45.45%, 가장 낮은 지역은 목포시 3.47% 많은 차이를 보였음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가장 높은 지역은 함평군 66.67%, 가장 낮은 지역은 순천시 4.95%, 가정 어린이집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화순군 51.22%, 가장 낮은 지역은 해남군 4.6%로, 지역별 어린이집의 비율의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체 어린이집 중 해당 설립 주체별 비율을 살펴 볼 때, 10%이상 차지하고 있는 시설 중 국공립 시설이 제일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전라남도에서 목포시의 보육 아동 수 가 제일 많지만, 100명당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라남도 시군 내에서 제일 낮다는 것도 알 수 있음

• 2019년 12월 기준 광역시·도별 어린이집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2-22> 시·도별 어린이집 현황

(단위 : 명, 개소, %)

구분	보육아동 ¹⁾	계 ²⁾	설립 주체별 ³⁾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서울	271,444	5,698 (2.1)	1,661 (29.15)	28 (0.49)	101 (1.77)	1,512 (26.54)	2,098 (36.82)	33 (0.58)	265 (4.65)
부산	70,977	1,848 (2.6)	211 (11.42)	81 (4.38)	35 (1.89)	715 (38.69)	739 (39.99)	12 (0.65)	55 (2.98)
대구	54,641	1,322 (2.4)	137 (10.36)	113 (8.55)	23 (1.74)	573 (43.34)	435 (32.90)	5 (0.38)	36 (2.72)
인천	76,084	2,049 (2.7)	213 (10.40)	11 (0.54)	13 (0.63)	733 (35.77)	1,002 (48.90)	6 (0.29)	71 (3.47)
광주	41,530	1,122 (2.7)	48 (4.28)	107 (9.54)	21 (1.87)	389 (34.67)	519 (46.26)	6 (0.53)	32 (2.85)
대전	38,526	1,288 (3.3)	53 (4.11)	40 (3.11)	12 (0.93)	357 (27.72)	761 (59.08)	7 (0.54)	58 (4.50)
울산	33,315	842 (2.5)	72 (8.55)	13 (1.54)	5 (0.59)	412 (48.93)	300 (35.63)	5 (0.59)	35 (4.16)
세종	15,525	359 (2.3)	51 (14.21)	9 (2.51)	4 (1.11)	107 (29.81)	173 (48.19)	0 (0.00)	15 (4.18)
경기	389,004	11,305 (2.9)	924 (8.17)	66 (0.58)	116 (1.03)	3,642 (32.22)	6,222 (55.04)	67 (0.59)	268 (2.37)
강원	37,902	1,036 (2.7)	109 (10.52)	107 (10.33)	40 (3.86)	342 (33.01)	393 (37.93)	4 (0.39)	41 (3.96)
충북	47,266	1,130 (2.4)	81 (7.17)	104 (9.20)	31 (2.74)	435 (38.50)	440 (38.94)	4 (0.35)	35 (3.10)
충남	65,304	1,812 (2.8)	128 (7.06)	114 (6.29)	47 (2.59)	582 (32.12)	887 (48.95)	2 (0.11)	52 (2.87)
전북	46,698	1,288 (2.8)	82 (6.37)	137 (10.64)	88 (6.83)	429 (33.31)	523 (40.61)	1 (0.08)	28 (2.17)
전남	47,796	1,147 (2.4)	147 (12.82)	160 (13.95)	49 (4.27)	364 (31.73)	394 (34.35)	2 (0.17)	31 (2.70)
경북	64,120	1,844 (2.9)	160 (8.68)	82 (4.45)	36 (1.95)	752 (40.78)	758 (41.11)	1 (0.05)	55 (2.98)
경남	93,756	2,777 (3.0)	209 (7.53)	98 (3.53)	47 (1.69)	1,003 (36.12)	1,358 (48.90)	4 (0.14)	58 (2.09)
제주	25,197	504 (2.0)	38 (7.54)	73 (14.48)	39 (7.74)	221 (43.85)	115 (22.82)	0 (0.00)	18 (3.57)
계	1,365,085	37,371 (2.7)	4,324 (11.57)	1,343 (3.59)	707 (1.89)	12,568 (33.63)	17,117 (45.80)	159 (0.43)	1,153 (3.09)

자료 : 보건복지부(보육통계), 2019. 12. 31.

1) 보육 아동은 입소 현원에 대한 통계

2) 괄호는 보육 아동 100명당 어린이집 수

3) 설립 주체별 괄호는 전체 어린이집 중 해당 설립 주체의 비율

• 2020년 6월 기준 전라남도 시·군별 어린이집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2-23> 전라남도 시·군별 어린이집 현황

(단위 : 명, %)

구분	보육아동 ¹⁾	계 ²⁾	설립 주체별 ³⁾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목포시	8,296	202 (2.43)	7 (3.47)	19 (9.41)	1 (0.50)	69 (34.16)	104 (51.49)	1 (0.50)	1 (0.50)
여수시	7,507	149 (1.98)	20 (13.42)	19 (12.75)	3 (2.01)	66 (44.30)	34 (22.82)	-	7 (4.70)
순천시	8,544	222 (2.60)	18 (8.11)	11 (4.95)	4 (1.80)	73 (32.88)	111 (50.00)	-	5 (2.25)
나주시	3,560	90 (2.53)	13 (14.44)	8 (8.89)	-	30 (33.33)	30 (33.33)	-	9 (10.00)
광양시	5,831	129 (2.21)	25 (19.38)	9 (6.98)	2 (1.55)	51 (39.53)	41 (31.78)	-	1 (0.78)
담양군	579	14 (2.42)	1 (7.14)	2 (14.29)	1 (7.14)	8 (57.14)	1 (7.14)	-	1 (7.14)
곡성군	415	11 (2.65)	5 (45.45)	5 (45.45)	1 (9.09)	-	-	-	-
구례군	373	8 (2.14)	3 (37.50)	-	2 (25.00)	1 (12.50)	2 (25.00)	-	-
고흥군	835	20 (2.40)	4 (20.00)	6 (30.00)	5 (25.00)	4 (20.00)	1 (5.00)	-	-
보성군	547	13 (2.38)	4 (30.77)	3 (23.08)	1 (7.69)	4 (30.77)	1 (7.69)	-	-
화순군	1,271	44 (3.46)	2 (4.55)	5 (11.36)	1 (2.27)	13 (29.55)	23 (52.27)	-	-
장흥군	662	16 (2.42)	6 (37.50)	3 (18.75)	3 (18.75)	-	3 (18.75)	1 (6.25)	-
강진군	682	16 (2.35)	1 (6.25)	3 (18.75)	6 (37.50)	6 (37.50)	-	-	-
해남군	1,181	22 (1.86)	2 (9.09)	10 (45.45)	2 (9.09)	7 (31.82)	1 (4.55)	-	-
영암군	1,497	41 (2.74)	5 (12.20)	14 (34.15)	4 (9.76)	7 (17.07)	8 (19.51)	-	3 (7.32)
무안군	1,903	57 (3.00)	3 (5.26)	9 (15.79)	3 (5.26)	17 (29.82)	23 (40.35)	-	2 (3.51)
함평군	480	12 (2.50)	3 (25.00)	8 (66.67)	-	-	1 (8.33)	-	-
영광군	1,055	17 (1.61)	5 (29.41)	5 (29.41)	2 (11.76)	1 (5.88)	3 (17.65)	-	1 (5.88)
장성군	746	14 (1.88)	4 (28.57)	5 (35.71)	1 (7.14)	1 (7.14)	2 (14.29)	-	1 (7.14)
완도군	1,008	25 (2.48)	6 (24.00)	6 (24.00)	5 (20.00)	5 (20.00)	3 (12.00)	-	-
진도군	490	12 (2.45)	4 (33.33)	3 (25.00)	2 (16.67)	1 (8.33)	2 (16.67)	-	-
신안군	334	13 (3.89)	6 (46.15)	7 (53.85)	-	-	-	-	-
계	47,796	1,147 (2.40)	147 (12.82)	160 (13.95)	49 (4.27)	364 (31.73)	394 (34.35)	2 (0.17)	31 (2.70)

자료 : 보건복지부(보육통계), 2019. 12. 31.

1) 보육 아동은 입소 현원에 대한 통계

2) 괄호는 보육 아동 100명당 어린이집 수

3) 설립 주체별 괄호는 전체 어린이집 중 해당 설립 주체의 비율

• 전라남도 시·군별 어린이집 보육 교원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2-24> 전라남도 시·군별 어린이집 보육 교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설립 주체별 ²⁾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목포시	1,945	80 (4.11)	277 (14.24)	19 (0.98)	949 (48.79)	598 (30.75)	11 (0.57)	11 (0.57)
여수시	1,694	205 (12.10)	363 (21.43)	44 (2.60)	772 (45.57)	202 (11.92)	-	108 (6.38)
순천시	1,930	219 (11.35)	151 (7.82)	58 (3.01)	880 (45.60)	557 (28.86)	-	65 (3.37)
나주시	814	125 (15.36)	101 (12.41)	-	292 (35.87)	151 (18.55)	-	145 (17.81)
광양시	1,395	295 (21.15)	163 (11.68)	23 (1.65)	645 (46.24)	229 (16.42)	-	40 (2.87)
담양군	137	13 (9.49)	16 (11.68)	9 (6.57)	85 (62.04)	4 (2.92)	-	10 (7.30)
곡성군	112	55 (49.11)	43 (38.39)	14 (12.50)	-	-	-	-
구례군	81	43 (53.09)	-	24 (29.63)	6 (7.41)	8 (9.88)	-	-
고흥군	174	29 (16.67)	61 (35.06)	41 (23.56)	35 (20.11)	8 (4.60)	-	-
보성군	121	45 (37.19)	32 (26.45)	8 (6.61)	32 (26.45)	4 (3.31)	-	-
화순군	325	26 (8.00)	54 (16.62)	8 (2.46)	113 (34.77)	124 (38.15)	-	-
장흥군	144	67 (46.53)	28 (19.44)	24 (16.67)	-	20 (13.89)	-	-
강진군	149	6 (4.03)	48 (32.21)	50 (33.56)	45 (30.20)	-	-	-
해남군	243	15 (6.17)	122 (50.21)	23 (9.47)	77 (31.69)	6 (2.47)	-	-
영암군	362	29 (8.01)	157 (43.37)	41 (11.33)	72 (19.89)	40 (11.05)	-	23 (6.35)
무안군	461	26 (5.64)	89 (19.31)	24 (5.21)	159 (34.49)	127 (27.55)	-	36 (7.81)
함평군	100	26 (26.00)	66 (66.00)	-	-	8 (8.00)	-	-
영광군	220	56 (25.45)	83 (37.73)	30 (13.64)	7 (3.18)	15 (6.82)	-	29 (13.18)
장성군	168	49 (29.17)	68 (40.48)	12 (7.14)	8 (4.76)	10 (5.95)	-	21 (12.50)
완도군	227	47 (20.70)	71 (31.28)	50 (22.03)	43 (18.94)	16 (7.05)	-	-
진도군	113	23 (20.35)	47 (41.59)	25 (22.12)	6 (5.31)	12 (10.62)	-	-
신안군	96	39 (40.63)	57 (59.38)	-	-	-	-	-
계	11,011	1518 (13.79)	2097 (19.04)	527 (4.79)	4226 (38.38)	2139 (19.43)	16 (0.15)	488 (4.43)

자료 : 전라남도 내부자료, 2020. 10. 05.

1) 보육 아동은 입소 현원에 대한 통계

2) 괄호는 보육 아동 100명당 보육교원 수

3) 설립 주체별 괄호는 전체 어린이집 중 해당 설립 주체별 보육 교원 비율

- 전라남도의 보육이용자는 2019 47,599명으로, 2015년 54,453명, 2016년 54,509명, 2017년 53,576명, 2018년 51,013명 등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2015년 대비 2019년 보육이용자는 약 -12.6% 하락하였음
- 연령별 보육이용자의 증감 추이를 보면, 0세가 2015년 4,415명에서 2019년 3,995명으로 -9.5% 하락하였으며, 만2세는 14,158명에서 11,963명으로 -15.5% 감소하고 만4세 또한 8,418명에서 7,014명으로 -16.7% 감소하는 등 감소폭이 컸음
 - 이는 최근 출생아 수가 하락하는 것과 연동된 현상이며 ‘장래인구추계’에서 출생아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보육이용자는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2019년 기준 보육이용자 중 만2세의 이용률이 25.1%로 가장 많았으며, 만1세는 20.4%, 만3세 17.5%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음
 - 유치원의 이용률이 높은 만4세~만5세의 이용률은 28.6%에 그친 반면 만0~4세의 이용률은 71.4%이었음

<표 2-25> 전라남도 연령별 보육이용자 변화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15년 대비 19년증감율
					수	구성비	
계	54,453	54,509	53,576	51,013	47,599	100	-12.6
0세	4,415	4,852	4,892	4,213	3,995	8.4	-9.5
1세	10,595	10,714	11,152	10,679	9,709	20.4	-8.4
2세	14,158	13,162	12,821	12,797	11,963	25.1	-15.5
3세	9,853	10,087	8,997	8,444	8,325	17.5	-15.5
4세	8,418	8,257	8,395	7,451	7,014	14.7	-16.7
5세	7,014	7,437	7,319	7,429	6,593	13.9	-6.0

자료 : 보건복지부(보육통계), 2019. 12. 31.

- 다음으로 2020년 6월 기준 전라남도 시·군별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 수는 순천시 47개소, 목포시와 여수시 40개소, 해남군 24개소 등의 순으로, 이용자 100명당 종사자 수는 장성군 11.2명, 신안군 10.5명, 강진군 10명 순으로 순천시, 목포시, 여수시 등은 많은 시설에 비해 종사자 수가 부족함

<표 2-26> 전라남도 시·군별 지역아동센터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분	시설 개소 수			이용 아동 수		종사자 수
	계	지원	미 지원	정원	현원	
목포시	40	40	-	1,070	1,011	83(8.2)
여수시	40	40	-	1,369	1,280	106(8.3)
순천시	47	46	1	1,339	1,274	109(8.6)
나주시	23	23	-	672	610	51(8.4)
광양시	18	17	1	561	520	41(7.9)
담양군	10	10	-	270	270	19(7.0)
곡성군	7	7	-	194	188	14(7.4)
구례군	6	6	-	210	202	15(7.4)
고흥군	17	15	2	439	435	34(7.8)
보성군	11	11	-	319	303	22(7.3)
화순군	16	16	-	405	392	33(8.4)
장흥군	11	11	-	269	246	22(8.9)
강진군	10	10	-	348	311	31(10.0)
해남군	24	24	-	664	610	52(8.5)
영암군	19	19	-	545	504	42(8.3)
무안군	17	16	1	393	388	34(8.8)
함평군	13	12	1	288	269	24(8.9)
영광군	14	14	-	366	346	28(8.1)
장성군	12	12	-	258	242	27(11.2)
완도군	11	11	-	273	273	24(8.8)
진도군	6	6	-	134	134	12(9.0)
신안군	3	3	-	57	57	6(10.5)
계	375	369	6	10,443	9,865	829(8.4)

자료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2020. 06. 30.

- 다음으로 2020년 6월 기준 전라남도 시·군별 아동생활시설을 살펴보면, 시설 총 정원의 60%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국·공립시설은 찾아볼 수 없음

<표 2-27> 전라남도 시·군별 아동생활시설 현황

(단위 : 명, 개소)

시설 종류	지역	시설명	시설거주자		종사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양 육	목포시	공생원	100	53	28	23
		아동원	90	53	26	25
		경애원	75	57	32	23
		성덕원	75	59	29	23
		동민영아원	50	45	38	26
	여수시	삼혜원	80	53	29	30
		여수보육원	90	37	23	21
	순천시	순천성신원	90	39	29	27
		순천SOS 어린이마을	100	49	29	24
	나주시	나주백민원	71	64	38	29
		금성원	70	61	32	29
		이화영아원	40	41	54	52
	광양시	영웅	15	14	10	3
	화순군	화순자애원	80	39	20	20
	강진군	강진자비원	57	48	30	18
	해남군	해남등대원	60	51	30	22
	영암군	영애원	85	39	26	25
		축성암 선재의집	7	3	1	1
	무안군	소전원	80	43	21	21
	함평군	함평삼애원	25	20	8	8
		함평시온원	72	32	14	14
	장성군	상록원	80	34	26	20
	신안군	신안보육원	80	40	23	21
자립지원	목포시	목포자립 생활관	30	13	4	2
보호치료	영광군	푸른동산	40	15	14	11
계		25개소	1,642	1,002	614	518

자료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2020. 06. 30.

- 아동·영·유아 관련 기타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2-28> 전라남도 영·유아 관련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시설명	시설 수
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2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31
	아동보호치료시설	1
	자립지원시설	1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8
이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
	지역아동센터	375
	지역아동센터 시·도 지원단	1
	아동보호전문기관	5
계		

자료 : 전라남도 내부자료

5) 청소년 부문

- 전라남도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청소년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표 2-29>와 같으며 2019년 기준 전라남도 청소년 인구의 경우 아동 및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는데, 2016년 318,274명에서 2019년 286,707명으로 감소하였음
- 해당기간 동안 순천은 6,053명, 여수시 5,082명, 목포시 4,469명 등으로 감소하였고, 나주시는 896명 증가했음

<표 2-29> 전라남도 청소년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목포시	45,964	44,375	43,199	41,495
여수시	52,135	50,019	48,041	46,333
순천시	57,364	55,522	53,486	51,311
나주시	14,356	15,013	15,257	15,252
광양시	31,811	31,100	30,277	29,011
담양군	6,213	6,029	5,906	5,944
곡성군	4,189	4,038	3,889	3,685
구례군	3,736	3,682	3,486	3,288
고흥군	7,964	7,664	7,218	6,778
보성군	5,459	5,252	5,014	4,607
화순군	11,244	10,890	10,464	9,914
장흥군	5,858	5,648	5,284	4,870
강진군	5,145	4,882	4,636	4,333
해남군	10,355	9,909	9,503	8,902
영암군	8,378	8,068	7,768	7,557
무안군	13,674	13,766	13,641	13,348
함평군	4,353	4,242	3,992	3,713
영광군	8,223	7,845	7,583	7,169
장성군	6,213	6,079	5,951	5,703
완도군	6,766	6,565	6,260	5,951
진도군	4,216	4,058	3,901	3,728
신안군	4,658	4,386	4,158	3,815
계	318,274	309,032	298,914	286,707

자료 : 통계청(주민등록 인구통계), 2019. 12. 31.

1) 관련 법에 근거하여 만9세 이상 24세 이하 추출

6) 장애인 부문

- 전라남도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장애인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표 2-30>과 같음
 - 청소년, 아동 및 영·유아의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 추이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장애인 인구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전라남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전국 평균 및 모든 시도에서 등록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추이임(<표2-30>참고).

<표 2-30> 시·도별 장애인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서울	391,027	391,753	392,920	394,843
부산	168,950	171,384	173,820	175,378
대구	117,111	119,766	123,070	125,485
인천	135,623	138,304	141,771	144,574
광주	68,569	69,233	69,884	70,177
대전	71,425	72,180	72,927	73,222
울산	49,533	50,205	50,640	51,014
세종	9,845	10,623	11,404	12,046
경기	522,437	533,259	547,386	559,878
강원	98,928	99,959	100,693	101,484
충북	94,688	95,844	97,086	97,688
충남	126,406	128,503	131,910	133,724
전북	130,345	131,303	131,746	132,364
전남	141,578	142,174	142,213	141,888
경북	169,643	172,533	176,550	180,898
경남	180,665	183,510	186,016	187,968
제주	34,278	35,104	35,840	36,287
계	2,511,051	2,545,637	2,585,876	2,618,918

자료 : 통계청(장애인 현황), 2018. 12. 31.

- 전라남도 총인구에서 장애인 인구는 7.59%를 차지함
 - 전라남도 총인구 대비 장애인 수는 고흥군 11.62%, 함평군 11.60%, 곡성군 11.43%, 신안군 10.77% 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광양시 4.95%, 순천시 5.70%의 비율로 가장 작게 차지함

<표 2-31> 전라남도 장애인 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인구 대비 비율
목포시	13,830	13,915	13,949	14,024	6.10
여수시	18,003	18,079	18,009	17,980	6.36
순천시	15,550	15,757	15,928	15,939	5.70
나주시	8,500	8,590	8,678	8,659	7.55
광양시	7,509	7,567	7,707	7,765	4.95
담양군	4,044	4,075	4,090	4,011	8.62
곡성군	3,287	3,318	3,324	3,303	11.43
구례군	2,814	2,858	2,859	2,826	10.64
고흥군	7,667	7,600	7,559	7,545	11.62
보성군	4,519	4,556	4,536	4,467	10.78
화순군	4,994	5,025	5,046	5,107	8.14
장흥군	4,065	4,055	3,997	3,937	10.21
강진군	3,462	3,469	3,427	3,396	9.62
해남군	6,534	6,556	6,527	6,483	9.21
영암군	4,752	4,705	4,774	4,772	8.74
무안군	6,425	6,378	6,309	6,280	7.74
함평군	3,828	3,850	3,806	3,813	11.60
영광군	5,282	5,259	5,239	5,214	9.68
장성군	4,207	4,231	4,207	4,208	9.20
완도군	4,636	4,648	4,633	4,630	9.13
진도군	3,206	3,236	3,223	3,190	10.39
신안군	4,464	4,447	4,386	4,339	10.77
계	141,578	142,174	142,213	141,888	7.59

자료 : 보건복지부(장애인등록현황), 2019. 12. 31.

- 2019년 기준 전라남도 등록장애인 수는 총 141,888명으로, 2015년 141,897명에서 2017년 142,174명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음
- 2017년에는 전년 대비 0.4%의 증가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0.2%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전라남도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등록자 수는 51,20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비는 2015년 36.8%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경향에 있음

<표 2-32> 전라남도 장애정도별¹⁾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등록 장애인	인구	141,897	141,578	142,174	142,213	141,888
	증감율	-0.9	-0.2	0.4	0.03	-0.2
심한 장애	인구	52,252	51,952	51,906	51,453	51,204
	구성비	36.8	36.7	36.5	36.2	36.1
심하지 않은 장애	인구	89,585	89,626	90,268	90,760	90,684
	구성비	63.1	63.3	63.5	63.8	63.9

자료 : 보건복지부(장애인현황), 2019. 12. 31. 전라남도 홈페이지(통계연보), 2019. 12. 31.

1) 2019년 7월 1일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시행 2019.7.1.)에 따르면, 기존 장애등급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재분류함

•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현황

<표 2-33> 전라남도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시설 수
생활시설	유형별	시각	1
		중증	8
		지적장애	26
		지체	3
	장애인단기보호시설		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3
이용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17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7
		장애인체육시설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21
		수화통역센터	21
		점자도서관	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19
		장애인근로사업장	3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
	성폭력보호시설		-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

자료 :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시설), 2019. 12. 31.

7) 저소득층 부문

- 2018년 기준 전라남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2015년 88,568명에서 2016년 93,109명으로 4,541명이 증가하였고, 2018년 84,819명으로 8,290명 감소하였음
- 다수의 시·군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17개 광역시·도와 비교하였을 때 전체 1순위를 차지함

<표 2-34> 전라남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목포시	13,427	13,587	13,151	14,122
여주시	12,372	12,607	10,748	11,257
순천시	8,425	8,633	7,467	7,878
나주시	5,025	5,202	4,577	5,037
광양시	3,651	3,853	3,395	3,871
담양군	2,187	2,395	1,956	2,241
곡성군	1,892	2,102	1,600	1,673
구례군	1,533	1,743	1,328	1,355
고흥군	4,120	4,341	3,772	4,048
보성군	2,667	2,871	2,342	2,503
화순군	3,248	3,447	2,779	3,262
장흥군	2,775	2,979	2,480	2,563
강진군	2,190	2,410	2,008	2,082
해남군	4,281	4,478	3,672	4,304
영암군	2,413	2,640	2,114	2,199
무안군	2,905	3,137	2,548	2,732
함평군	1,993	2,201	1,669	1,743
영광군	3,532	3,736	3,118	3,153
장성군	2,754	2,947	2,267	2,307
완도군	2,540	2,747	2,265	2,551
진도군	2,281	2,485	1,964	2,003
신안군	2,357	2,568	1,976	1,935
계	88,568	93,109	79,196	84,819

자료 : 통계청(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통계), 2018. 12. 31.

8) 다문화가족 부문

- 전라남도의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표2-35>과 같음
 - 2020년 기준 전라남도의 다문화가족 자녀는 전국 237,506명중에 13,660명으로 5.8%를 차지하였고, 최근 6년간 12.4% 증가함

<표2-35> 연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국	191,328	204,204	197,550	199,161	220,950	237,506
전 남	12,149	12,832	11,524	11,286	13,099	13,660
전국대비	6.3	6.3	5.8	5.7	5.9	5.8

자료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2020. 06. 30.

- 2020년 기준 전라남도의 다문화 학생 수는 17개 시·도의 전체 다문화 학생 수의 6.28%를 차지함
 - 2019년도 기준 전라남도 내 전체학생 대비4.8%로 2015년부터 3,247명 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표2-36> 최근 5년간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현황

(단위 : 명, %)

구분		다문화 학생 수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비율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전국	2015	82,135	60,162	13,827	8,146	1.1	1.8	0.7	0.4
	2016	98,868	73,972	15,080	9,816	1.3	2.2	0.9	0.5
	2017	109,012	82,733	15,945	10,334	1.7	2.8	1.0	0.6
	2018	121,783	93,027	18,068	10,688	1.9	3.1	1.2	0.6
	2019	136,808	103,881	21,693	11,234	2.5	3.8	1.7	0.8
전남	2015	6,090	4,101	1,242	747	2.7	4.3	2.1	1.1
	2016	6,977	4,783	1,270	924	3.3	5.1	2.4	1.4
	2017	7,819	5,499	1,272	1,048	3.8	5.9	2.6	1.6
	2018	8,571	6,095	1,377	1,099	4.3	6.5	2.9	1.9
	2019	9,337	6,748	1,485	1,104	4.8	7.1	3.3	2.1

자료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2020. 06. 30.

- 2020년 기준 전라남도 시·군별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급별 순위는 순천시 844명, 여수시 840명, 나주시 725명, 목포시 661명, 광양시 629명, 영암군 518명 등의 순서임
- 전라남도 시·군별 다문화가족 자녀는 전라남도 내의 18세 미만 아동인구(31만 명)의 4.4%를 차지하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군은 여수 9.8%, 순천 9.7%, 목포(8.1%) 등의 순서임

<표2-37> 전라남도 시·군별 다문화학생 현황

(단위 : 명, %)

시군	시·군별 다문화가족 자녀 전체		학교급별			
	다문화가족 자녀 전체 수	비율	합계	초	중	고
전남	13,660	4.4	9,338	6,748	1,485	1,105
목포시	1,109	8.1	661	500	85	76
여수시	1,341	9.8	840	628	120	92
순천시	1,320	9.7	844	659	104	81
나주시	938	6.9	725	458	131	136
광양시	1,069	7.8	629	517	79	33
담양군	430	3.2	293	206	60	27
곡성군	308	2.3	236	146	49	41
구례군	253	1.8	202	140	35	27
고흥군	600	4.4	424	315	79	30
보성군	421	3.1	334	233	61	40
화순군	590	4.3	477	318	95	64
장흥군	400	2.9	268	176	54	38
강진군	337	2.5	279	189	38	52
해남군	732	5.3	505	374	81	50
영암군	682	5.0	518	366	89	63
무안군	615	4.5	419	291	65	63
함평군	384	2.8	284	190	51	43
영광군	466	3.4	320	238	46	36
장성군	509	3.7	346	259	54	33
완도군	443	3.2	279	203	46	30
진도군	364	2.6	230	168	35	27
신안군	349	2.6	225	174	28	23

자료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2020. 06. 30.

9) 기타 부문

① 성폭력·가정폭력

- 전라남도 성폭력 피해 보호·상담시설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2-38> 성폭력 피해 보호·상담시설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분	지역	시설명	종사자
상담소	목포시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여성장애인대상)	5
	여수시	여수성폭력상담소	4
	순천시	순천전남성폭력상담소	4
	나주시	나주여성상담센터	4
	담양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5
	해남군	해남성폭력상담소	4
	무안군	무안여성상담센터	4
	함평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4
보호시설	목포시	해늘(여성장애인 대상)	8
	여수시	담쟁이쉼터	6
계		10개소	48

자료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2020. 06. 30.

- 전라남도 가정폭력 피해 보호·상담시설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2-39> 가정폭력 피해 보호·상담시설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분	지역	시설명	종사자
상담소	목포시	목포 여성상담 센터	6
	여수시	여수 여성상담 센터	4
	순천시	순천 여성상담 센터	4
	광양시	광양 여성상담 센터	4
	고흥군	고흥 나누리상담 센터	5
	화순군	화순 어울림가정상담 센터	4
	영암군	영암 행복한가정 상담소	4
	무안군	무안 열린가정상담 센터	4
	함평군	함평 열린 가정상담 센터	4
	영광군	영광 여성상담 센터	4
보호시설	목포시	목포 여성의 쉼터	6
	여수시	여수여성쉼터	7
	순천시	순천 다솜 공동체	5
	광양시	광양 행복을 여는 집	5
계		14개소	66

자료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2020. 06. 30.

② 성매매

- 전라남도 성매매 피해 보호·상담·자활지원시설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2-40> 성매매 피해 보호·상담·자활지원시설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분	지역	시설명	종사자
상담소	목포시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5
	여수시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5
	순천시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5
보호시설	여수시	여수무지개쉼터	5
	순천시	순천헤아림	5
자활지원센터	여수시	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6
계		6개소	31

자료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2020. 06. 30.

③ 한부모가족

- 전라남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2-4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분	지역	시설명	종사자
모자 보호시설	목포시	목포태화모자원	4
	함평군	함평자광드림빌	4
미혼모자 공동 생활가정	순천군	순천살로메나눔터	2
	나주시	나주어린엄마동지	2
미혼 모자시설	목포시	목포성모의집	5
계		5개소	17

자료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2020. 06. 30.

④ 다문화가족

-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2-42> 전라남도 시·군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분	시설명	종사자
목포시	목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여수시	여수시건가·다가센터	5
순천시	순천시건가·다가센터	11
	전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2
나주시	나주시건가·다가센터	5
광양시	광양시건가·다가센터	10
담양군	담양군건가·다가센터	5
곡성군	곡성군건가·다가센터	5
구례군	구례군건가·다가센터	6
고흥군	고흥군건가·다가센터	5
보성군	보성군건가·다가센터	6
화순군	화순군건가·다가센터	5
장흥군	장흥군건가·다가센터	7
강진군	강진군건가·다가센터	5
해남군	해남군건가·다가센터	7
영암군	영암군건가·다가센터	5
무안군	무안군건가·다가센터	5
함평군	함평군건가·다가센터	5
영광군	영광군건가·다가센터	6
장성군	장성군건가·다가센터	7
완도군	완도군건가·다가센터	9
진도군	진도군건가·다가센터	9
신안군	신안군건가·다가센터	4
계	23개소	138

자료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2020. 06. 30.

- 전라남도 폭력 이주여성 보호·상담시설은 아래와 같음

<표2-43> 폭력 이주여성 보호·상담시설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분	지역	시설명	종사자
보호시설	여수시	여수 이주여성쉼터	5
	여수시	여수 다문화여성쉼터	5
	목포시	전남 이주여성쉼터	5
상담시설	목포시	전남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6
계		4개소	21

자료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2020. 06. 30.

(2) 전라남도 복지재정 현황

1) 광역시도별 복지재정 현황 비교

- 전라남도의 사회복지 세출예산은 2,872,815백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9번째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전국 17개시도의 구성비 비교 시 기초생활보장(26.4%)로 충북과 나란히 9번째, 취약계층지원(9.1%)은 15번째, 보육가족 및 여성(20.0%) 12번째, 노인 청소년(42.4%) 2번째, 노동(0.03%) 17번째, 사회복지일반(2.1%) 3번째 순서임

<표 2-44> 2020 사회복지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서울	예산액	14,166,425	-	4,797,533	2,909,436	2,995,533
	구성비	35.83	-	33.9	20.5	21.1
부산	예산액	5,050,449	1,683,807	874,784	687,906	1,734,542
	구성비	40.11	33.3	17.3	13.6	34.3
대구	예산액	3,272,599	1,088,948	385,233	715,321	987,567
	구성비	25.99	33.3	11.8	21.9	30.2
인천	예산액	3,824,600	1,230,595	256,558	933,193	1,140,768
	구성비	33.96	32.2	6.7	24.4	29.8
광주	예산액	2,180,821	645,496	225,708	548,183	567,063
	구성비	38.18	29.6	10.3	25.1	26.0
대전	예산액	2,021,002	555,487	260,469	526,303	555,481
	구성비	39.94	27.5	12.9	26.0	27.5
울산	예산액	1,127,951	216,273	229,960	307,178	322,178
	구성비	29.23	19.2	20.4	27.2	28.6
세종	예산액	384,348	46,797	77,138	143,361	96,337
	구성비	23.95	12.2	20.1	37.3	25.1
경기	예산액	11,231,561	3,167,511	1,948,310	3,038,838	2,903,134
	구성비	41.98	28.2	17.3	27.1	25.8
강원	예산액	2,215,437	575,075	194,990	463,113	776,032
	구성비	37.98	26.0	8.8	20.9	35.0
충북	예산액	2,029,694	536,401	286,610	383,361	647,240
	구성비	39.75	26.4	14.1	18.9	31.9
충남	예산액	2,586,440	639,800	389,266	404,661	949,880
	구성비	41.21	24.7	15.1	15.6	36.7
전북	예산액	2,917,419	1,054,581	336,140	404,950	1,027,902
	구성비	42.82	36.1	11.5	13.9	35.2
전남	예산액	2,872,815	759,017	261,099	574,664	1,217,239
	구성비	35.21	26.4	9.1	20.0	42.4
경북	예산액	3,679,116	992,401	396,966	579,644	1,604,639
	구성비	38.18	27.0	10.8	15.8	43.6
경남	예산액	3,882,431	1,116,643	355,865	954,605	1,262,150
	구성비	40.98	28.8	9.2	24.6	32.5
제주	예산액	1,265,925	203,415	207,789	351,650	355,904
	구성비	21.74	16.1	16.4	27.8	28.1

<표 2-44> 2020 사회복지 세출예산 현황(계속)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서울	예산액	14,166,425	235,108	-	3,189,578	39,234
	구성비	35.83	1.7	-	22.5	0.3
부산	예산액	5,050,449	49,979	19,429	-	-
	구성비	40.11	1.0	0.4	-	-
대구	예산액	3,272,599	79,741	15,787	-	-
	구성비	25.99	2.4	0.5	-	-
인천	예산액	3,824,600	45,950	23,744	138,678	55,109
	구성비	33.96	1.2	0.6	3.6	1.4
광주	예산액	2,180,821	67,126	5,189	73,306	48,747
	구성비	38.18	3.1	0.2	3.4	2.2
대전	예산액	2,021,002	20,966	8,064	51,990	42,240
	구성비	39.94	1.0	0.4	2.6	2.1
울산	예산액	1,127,951	19,368	7,167	25,825	-
	구성비	29.23	1.7	0.6	2.3	-
세종	예산액	384,348	12,901	2,754	4,102	955
	구성비	23.95	3.4	0.7	1.1	0.2
경기	예산액	11,231,561	82,692	-	-	91,073
	구성비	41.98	0.7	-	-	0.8
강원	예산액	2,215,437	109,050	5,885	61,203	30,084
	구성비	37.98	4.9	0.3	2.8	1.4
충북	예산액	2,029,694	50,365	3,058	122,657	-
	구성비	39.75	2.5	0.2	6.0	-
충남	예산액	2,586,440	52,260	2,152	122,486	25,932
	구성비	41.21	2.0	0.1	4.7	1.0
전북	예산액	2,917,419	59,665	5,259	-	28,919
	구성비	42.82	2.0	0.2	-	1.0
전남	예산액	2,872,815	947	-	-	59,847
	구성비	35.21	0.03	-	-	2.1
경북	예산액	3,679,116	86,897	18,566	-	-
	구성비	38.18	2.4	0.5	-	-
경남	예산액	3,882,431	67,365	21,492	104,308	-
	구성비	40.98	1.7	0.6	2.7	-
제주	예산액	1,265,925	63,689	15,553	46,300	21,622
	구성비	21.74	5.0	1.2	3.7	1.7

자료 : 17개 광역시·도 홈페이지(기능별세출자료총괄표), 2019. 12. 31.

- 전라남도의 노인인구 비율은 22.61%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고, 사회복지예산 대비 노인·청소년비율을 보았을 때 경북(43.6%)을 이어 전라남도(42.4%)가 17개 시·도 중 2번째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전라남도의 노인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 또한 노인·청소년부분에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 9개 도를 비교하였을 때, 모든 도의 비중이 노인·청소년비율 평균과 비슷하며, 전라남도 역시 9개 도 중 42.4%로 경북 다음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2-45> 사회복지예산 대비 노인·청소년 비율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인구			예산		
	총 인구	노인인구	비율 ¹⁾	사회복지 예산	노인· 청소년	비율 ²⁾
서울	9,729,107	1,478,664	15.20	14,166,425	2,995,533	21.1
부산	3,413,841	620,123	18.16	5,050,449	1,734,542	34.3
대구	2,438,031	379,277	15.56	3,272,599	987,567	30.2
인천	2,957,026	384,548	13.00	3,824,600	1,140,768	29.8
광주	1,456,468	195,479	13.42	2,180,821	567,063	26.0
대전	1,474,870	198,691	13.47	2,021,002	555,481	27.5
울산	1,148,019	132,565	11.55	1,127,951	322,178	28.6
세종	340,575	31,949	9.38	384,348	96,337	25.1
경기	13,239,666	1,651,341	12.47	11,231,561	2,903,134	25.8
강원	1,541,502	302,886	19.65	2,215,437	776,032	35.0
충북	1,600,007	273,425	17.09	2,029,694	647,240	31.9
충남	2,123,709	386,674	18.21	2,586,440	949,880	36.7
전북	1,818,917	370,676	20.38	2,917,419	1,027,902	35.2
전남	1,868,745	422,548	22.61	2,872,815	1,217,239	42.4
경북	2,665,836	549,415	20.61	3,679,116	1,604,639	43.6
경남	3,362,553	548,257	16.30	3,882,431	1,262,150	32.5
제주	670,989	100,397	14.96	1,265,925	355,904	28.1
계	51,849,861	8,026,915	15.48	64,709,033	1,977,140	3.1

자료 : 17개 광역시·도 홈페이지(기능별세출자료총괄표), 통계청(주민등록 인구현황), 2019. 12. 31.

1)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

2) 사회복지예산 대비 노인·청소년예산 비율

2) 전라남도 복지재정 현황

- 전라남도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 간 보육·가족 및 여성과 노인·청소년 분야의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2-46> 전라남도 연도별 사회복지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총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 여성	노인·청소년	보훈	사회복지일반
2013	예산액	1,154,298,394	264,271,174	158,519,694	306,744,870	399,764,300	421,400	24,576,956
	구성비	23.77	5.44	3.26	6.32	8.23	0.01	0.51
2014	예산액	1,445,983,388	260,685,833	170,210,384	404,184,918	568,722,355	578,000	41,601,898
	구성비	28.68	5.17	3.38	8.02	11.28	0.01	0.83
2015	예산액	1,590,624,763	212,724,975	171,235,490	405,403,468	766,304,027	740,110	34,216,693
	구성비	29.06	3.89	3.13	7.41	14.00	0.01	0.63
2016	예산액	1,561,526,483	237,066,616	178,449,361	329,864,236	776,927,627	2,568,000	36,650,643
	구성비	28.11	4.27	3.21	5.94	13.98	0.05	0.66
2017	예산액	1,702,776,274	251,275,439	178,547,045	437,266,653	796,000,199	697,700	38,989,238
	구성비	29.81	4.40	3.13	7.66	13.94	0.01	0.68
2018	예산액	2,326,616,754	666,056,027	197,657,179	473,840,699	944,010,559	686,996	44,365,294
	구성비	34.46	9.87	2.93	7.02	13.98	0.01	0.66
2019	예산액	2,602,744,120	730,482,914	235,415,081	540,685,447	1,047,318,234	840,535	48,001,909
	구성비	35.32	9.91	3.19	7.34	14.21	0.01	0.65
2020	예산액	2,872,815,892	759,017,896	261,099,640	574,664,407	1,217,239,723	947,100	59,847,126
	구성비	35.21	9.30	3.20	7.04	14.92	0.01	0.73

자료 : 전라남도 홈페이지,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_기능별세출자료총괄표

3. 요약 및 시사점

1) 지역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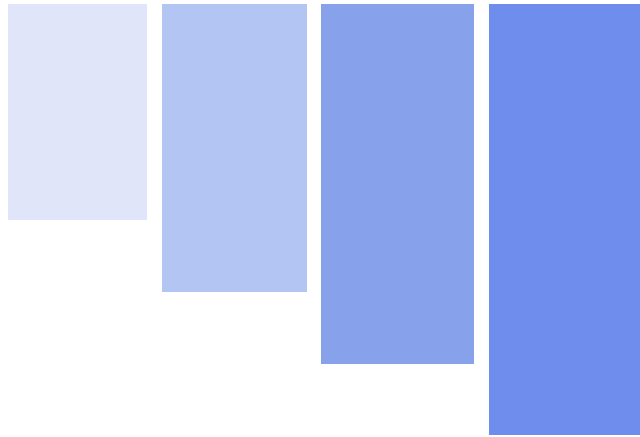
- 전라남도 인구 수,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저출산으로 인한 매년 출생아 수 급감하여 심각한 수준
- 2015년 이후 유입인구 대비 유출인구 편차가 급증하여 인구 수 감소 가속화
- 유소년 및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인구수가 증가, 향후 2040년 노령인구비율 50% 이상 예상
- 전남 재정자립도, 최근 5개년 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
- 전남복지, 농어촌 지역 특성 반영 및 물리적·사회적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계층 대상 복지 접근성 강화 등을 고려한 기준 수립 및 방향 설정 필요

2) 사회서비스 관련 대상수요 현황

- 사회서비스 대상자 비율을 고려해 볼 때, 여성 > 노인 > 청소년 > 아동 > 장애인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서비스원은 보육과 돌봄에 포커스, 전남도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고려한 사회서비스원의 중점 역할 필요
- 영·유아는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3.28% 수준, 향후 2~3년 내 3% 미만으로 하락이 예상됨
- 또한 전라남도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영향으로 아동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중
- 노인은 전체 인구 대비 22.61%(2019년) 수준으로 전국 최고, 독거노인 가구도 동시 증가
- 노인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장애인수 역시 전국 최고 수준, 고흥군과 함평군이 가장 비율이 높음

3) 사회서비스 관련 공급 자원 현황

- 사회복지 예산 비중 지속적 증가 중, 노인 및 청소년의 비중이 가장 높음
- 노인과 아동, 장애인 대상 시설 전체 98%
 - 장애인 수 대비 시설 부족, 시·군 공급 격차 큼
- 노인복지 부문은 주거복지시설 보다 의료복지시설의 수가 대다수 차지, 향후 노인요양 시설 신규 확충으로 노인생활복지 강화
- 고흥·보성·신안군(전국에서 고령인구, 초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음) 노인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밀집도가 낮아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도내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 약 66.1% 과반 이상 분포, 국·공립 어린이집 12.8%에 불과,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확충으로 이용자수 점진적 확대 필요
-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시설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8순위, 1개소당 장애인수는 815명 수준(= 시설수 부족 의미)



제3장 상위계획 및 법규 검토

1. 중앙정부의 정책 환경 분석
2. 상위계획 검토
3. 관련법규 검토

제3장 상위계획 및 법규 검토

1. 중앙정부의 정책 환경 분석

(1) 사회서비스 정책

1) 사회서비스 개념 및 특성

-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그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에 가족 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던 가족(영·유아,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돌봄이 어려워졌으며, 이에 ‘사회서비스’라는 형태로 영·유아 보육, 아동교육, 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는 공공부조,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복지의 핵심 3개 제도 중 하나로 분류되는데,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제도이고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방식을 통한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는 보장제도로 볼 수 있음(김은정, 2013)
- ‘사회서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으며,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정된 몇몇 법안의 법적 개념을 통해 사회서비스 용어를 이해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라고 규정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보육, 예술, 관광, 운동, 산림 보전과 관리, 간병 및 가사지원, 문화재보존, 청소 등 시설관리, 고용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상당한 편차가 있어서 개념적 수렴화를 유도하지는 못한 한계점이 있음(김은정, 2013)

- 법적 개념으로 사회서비스를 정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의는 2012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데, 동 법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정의가 새롭게 정립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호에서는 사회서비스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개정 기본법은 이전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를 결합하고 여기에 몇 가지 제도를 추가하여 이를 ‘사회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음(남찬섭, 2012)
- 즉, 사회서비스를 협의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보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포함하는 비물질적, 사회 심리적 그리고 대인적인 서비스로 규정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정책 전반적인 영역에서 제공되는 일종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를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사회서비스’는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위험에 대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역량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회적 집단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자 예방적인 공공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음(양기용, 2013)
-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이수경·오미옥, 2012)
 - 첫째, 대인적 성격을 특징으로 하여 전달체계 자체가 사회서비스의 내용에서 관계성을 중요하게 실천하는 인적 자원의 전문성과 구성 조직 및 체계가 사회서비스의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것임
 - 둘째, 사회서비스 자체는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의 특성상 사회서비스에는 공공적 성격과 개별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음
 - 셋째, 복지혼합(welfare mix)이 활성화된 영역으로 서비스의 집합적이고 사회적 성격으로 인해 공공부문이 개입하지만 서비스 내용의 대인적이고 개별적인 속성 때문에 민간부문이 일선 전달체계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음

- 넷째,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개입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국가는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사회서비스의 수요자 혹은 공급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현금, 현물, 선택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개입함
- 다섯째, 사회서비스는 보편적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용이하여 정치적 기반이 강해진다는 점에서 사회참여적인 지향을 갖게 된다는 것임

2)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문제점

-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2000년 이후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확대되었는데, 2007년부터는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재활치료, 역량 강화 서비스 등이 개발되고 그 밖에 다양한 일상생활지원이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음
- 2008년부터는 노인요양서비스가, 2011년에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소득 계층과 관련 없이 욕구 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었음
-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을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 두고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공급자 지원방식을 중심으로 시행해오다가 2007년 이후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도입되면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서비스 공급을 도모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이수경·오미옥, 2012)
- 수요자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은 바우처(이용권)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서비스 공급 기관들 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행되었음
- 바우처를 이용한 사회서비스 재정지원방식은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어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에 도움이 되었으며, 고용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그리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환경을 구축하였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림 3-1>의 2007년 대비 2017년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재정 및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확인할 수 있음



자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그림 3-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현황

- 이처럼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양상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들 수 있는데, 사회서비스 영역에 비영리단체, 지역대학, 영리기업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공급기관이 참여하여 새로운 형태와 내용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사회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공급기관이 등장하게 되었음
- 사회서비스가 일정 부분에서 시장화 된다는 것은 시장원리의 적용을 통한 효율적운용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그러나 공급 기관들이 기관의 생존과 관련된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가치와 접근방식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경쟁에 참여하는 공급기관들은 공공 적인 관심보다는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용자를 역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자 선별이나 특정 사회서비스만을 한정하여 공급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됨(양기용, 2013)
- 앞서 살펴본 <그림 3-1>에서와 같이 2007년 1,274였던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가 2017년에는 12,437개소로 확대되어 976%의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12년 보건 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공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결과이기도 함

- 이에 따라 바우처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사회서비스 시장에서의 기관 간 경쟁이 활성화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도출된 것도 사실이나 사회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민간 기관 혹은 개인 사업자들의 상당수가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들이었고 적정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서비스 수가 구조에서 과도한 경쟁구조에 내몰렸음
- 서비스 제공주체로 민간부문의 비율이 95%가 넘으며 특히 영리성 민간기관의 비중이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보육기관이나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서비스 급여에 대한 허위나 부당청구, 서비스 부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김은정, 2013)
-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분야인 보육과 요양시설 현황을 통해 민간기관의 확대와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살펴볼 수 있음(김연명 외, 2017)
- 먼저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서비스 초기 부족한 시설 문제를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해결하는 정책을 선택하여 민간시설이 급팽창된 반면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2015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42,517개 중 2,629개소로 6.18%에 불과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의 11.4%(16만 6천명)로 10명 중 1명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음으로 요양시설을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급여서비스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의 비중은 2.2%에 불과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할 경우 3.3%, 재가 요양기관은 0.8%에 불과함. 재가급여 모두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 80.9%를 차지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대부분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주체별 추이를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시설이 급팽창하여 2010년 11,113개에서 2015년 13,995개로 2,882개가 늘어났음. 노인인구의 증가로 향후 개인운영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다 경쟁과 수가 문제로 운영의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시설(공공시설)은 최근 거의 변동이 없으며 법인 운영 요양시설은 소폭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단기간에 대량의 인력이 양성되고 이들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기관들에 흡수되면서 요양·보육서비스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이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노동 조건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근로조건이 서비스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종사자의 노동 조건 개선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사회 서비스 종사자 중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및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이 낮은 급여와, 노동 강도 등에서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은 <표3-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표3-1>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수준

-
- 서울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2015)
 - 요양보호사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정규직 19.6%, 기간제 15.7%, 시간제 64.6%임
 - 방문요양원의 급여수준은 지난 한달 기준 평균 96만9천원임
 - 보육교사의 급여수준
 - 보육교사의 고용형태는 원칙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는 정규직, 나머지 시설의 경우는 보통 비 정규직 계약직임(대표자 또는 원장과 고용계약 체결)
 - 2018년 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결과, 전체 보육교사 평균 경력은 6년 4개월, 근무시간은 8시간 12분임.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평균 경력은 6년 9개월, 근무시간은 8시간 8분임
 - 전체 보육교사의 총 급여 평균은 236.3만원이며, 국공립시설 보육교사는 평균 302.5만원, 민간시설 보육교사는 평균 229.3만원임
 -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급여수준
 - 서울시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급여 수준과 관련한 공식 통계는 없음. 다만 추정해 볼 경우, 활동보조 1인당 급여액은 약 107.7만원, 실질 수령액은 약 80만원 상회
 - 2015년 기준 활동보조급여 지급액 월평균 총액 14,523만원, 활동보조인 수 13,611명임
 - 실제 활동보조인의 수령급여액은 이 급여 총량의 75% 이상으로 책정됨
-

자료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 모색-사회서비스 소포럼 운영결과), 2018.

보건복지부(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2019.

3)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관점

① 사회서비스 공공성

-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쟁점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임
-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는 과정은 결국 기존에 사적 영역에서 시장이나 가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해결하였던 문제들이 사회서비스라는 공적 가치를 지니는 공공서비스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함(윤홍식, 2012)
- 공공성은 사전적으로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어 있는 성질’로 정의되기도 하나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공공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며, 이에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는 않음
- 양성욱·노연희(2012)는 공공성의 기준으로 행위주체, 행위목적, 공적가치 및 속성으로 분류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음
- 먼저 행위의 목적으로 사회서비스는 보편적인 시민의 기본권, 즉 사회권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가지는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사회권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서비스에 대한 공공소유 그리고 서비스 수혜 자격의 범위와 관련된다는 것임
- 즉,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사회서비스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지의 정도와 범위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수혜자의 범위가 서비스에 대한 공공소유권으로서 얼마만큼 공유되는지, 서비스 수혜자격이 시민의 자격에 기반 하는지와 관련된다는 것임
- 또한 행위목적으로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서비스 수혜자들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서비스의 구성과 그 내용에 대한 규제라는 내용적 차원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적 목적의 달성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음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공적 가치 및 속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사회서비스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음
- 신뢰에 기반한 직접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정보의비대칭성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본질적 특성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의 신뢰 및 사회서비스 자체에 대한 신뢰를 사회서비스가 보여주는 공공성의 또 다른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임

-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행위주체라는 측면에서도 논의됨. 국가의 역할범위는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주요한 측면이지만 사회서비스의 공급주체는 다른 일반적인 공공 서비스와는 다르게 다양하게 구성됨으로써 범위를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는 민간 부문이라 할지라도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행위 주체로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주체에 대한 논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이므로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음
- 한편, 공공성을 형식적 공공성과 내용적 공공성으로 구분해보았을 때, 내용적 공공성 측면인 공익성, 책임성, 민주성, 투명성을 구현하기 위한 4가지 요소 즉, 행위주체, 공공조달방식, 통제기전, 그리고 제공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내용적 공공성의 확보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짐
- 결국에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최고 수준으로 구현하는 것이 공공성을 추구하는 목표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분야가 공공성의 측면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위 4가지 요소에 의해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음(보건복지부, 2018)

가. 행위주체의 측면

- 과도한 민간의존, 혹은 민간에 의한 과잉규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즉 공공이 기관 운영과 서비스제공을 위한 재정적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은 민간설립-민간운영, 공공설립-민간위탁이 고착화되어 있음. 이에 민간 및 영리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사회서비스 전 영역에 걸쳐 심화 되었으며 공공직접 서비스 제공이나 공공설립-공공운영과 같은 ‘공영’모델이 부재한 상황임

나. 재정 측면

- 대부분의 주요 사회서비스가 거의 공공재원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재정조달의 불충분성이 상존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민간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에게는 공공의 재정투여에 대한 적절성이나 심지어 효율성에 대한 확신조차 부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다. 통제기전의 측면

- 공공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공공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적 통제 기전의 작동이 필수적임.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관리를 하기 위한 인력(주로 지자체 공무원)의 규모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와 같은 통제 및 관리기전의 부실함은 결과적으로 적절한 지원과 관리의 통제기전 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규제 방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라. 제공인력의 측면

-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의존성은 결과적으로 사회서비스 영역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이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음을 의미하며, ‘최소한으로 적정화된 질’을 추구하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은 종사노동자의 불안정한 신분을 고착화하고 이를 통해 필요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동인으로 작동하게 됨. 이에 사회서비스분야종사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지위는 매우 취약하며, 근로여건 역시 열악함을 벗지 못해 공공성 실현의 주체로서의 정체성이 저하되고 있음

② 사회서비스 제공주체와 공공성

- 공공성의 주체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경제학의 경우 공공성의 행위 주체는 꼭 국가가 되어야만 공공성을 인정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분야는 행위주체와 상관없이 즉, 민간이건 국가이건 행위의 성질이 공익을 포함하면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됨(김연명 외, 2017)
- 공공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인가 민간기관인가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임. 오히려 해당기관의 업무 수행결과가 어떠한 결과 즉 공적인 영향을 가져왔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서비스 확대는 공공성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 가장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장원리의 확대 적용 즉 공급기관 간 경쟁과 이용자 선택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서비스 축소, 이용자에 대한 역 선택과 수혜자 감축, 서비스 품질 저하와 같은 공공성 훼손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 특히 비영리기관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공급시장의 경우 참여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공익과 공공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듯이 영리기관들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부정수급과 같은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더욱 높음
- 이러한 점에서 공공성 확보의 관건은 민간 또는 공공 참여기관들을 공공성 훼손보다는 공공성 확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음. 따라서 어떠한 기제를 사용하여 각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과 지방정부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들 간의 협력 및 규제관계를 설정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볼 수 있음(양기용, 2013)
- 앞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사회서비스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와 관련된 것이 아닌 전체 사회구성원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음
- 하나는 사회서비스의 대상이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욕구가 있는 누구나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사회구성원 공통의 욕구에 대응하기위해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다시 말해 사회서비스와 관련해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대상의 보편성과 질이 담보되는 서비스 제공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윤홍식, 2012)
- 이에 사회서비스정책에서 “공공성”은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의 문제이기보다는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하는가의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국가가 재원과 서비스제공을 모두 담당한다고 해도 대상이 보편적이지 않고, 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공적서비스라고 할지라도 공공성을 담보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임
-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가 재원을 부담하고, 비영리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서비스 제공의 보편성과 질을 담보한다면 공적서비스로 분류하는 데는 논란이 있을지 모르지만 공공성을 담보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임
- 또한 누가 행위주체인가와 관계없이 사회서비스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통합 및 공익의 달성, 사회서비스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재정적 책임성 등이 반드시 확보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행위주체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목적, 공적가치, 그리고 자원의 활용 등의 측면에서 국가는 포괄적인 수혜자 범위의 확보, 적절한 서비스 내용의 구성과 이에 대한 규제, 보편성과 형평성의 확보를 통한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의 형성 등의 방식으로 공공성을 구체화할 수 있음
- 반면 비영리와 영리를 포함한 민간영역은 국가가 규정한 내용의 서비스 제공, 수혜자와의 신뢰관계 형성, 서비스 제공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공평성 확보 등을 통해 공공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양성욱·노연희, 2012)
- 결론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제공 주체와 관련해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제공주체의 특성과 등치될 수는 없는데, 공공성을 담보하는 유력한 방식으로 공적서비스를 분류할 수는 있지만 공적서비스가 곧 공공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것임
- 또한 민간서비스 제공기관도 공적서비스로 분류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는 있음. 그러나 이윤추구 동기가 없는 비영리기관을 제외하고, 서비스의 보편성과 질을 동시에 담보하는 민간기관과 비공식 제공주체는 현실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음
- 이러한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것이 현상적으로는 공적서비스 기관의 확대와 등치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이에 향후 공공성을 실현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2) 사회서비스원 설립 경과

- 현 정부는 사회정책에 있어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우고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에 있어서도 국가의 역할 및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임
- 사회서비스원은 앞서 살펴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및 공공인프라 구축의 결과로 도출된 형태라 볼 수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논의는 2010년 지자체 선거 전후부터 ‘복지서비스인력공단 설립’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이후 서울시에서 요양서비스종사자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의 한 방안으로 그리고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서울사회서비스재단’설립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진행되었음
- 이어 2017년 대선 국면에서 공공 일자리창출과 공공성 확보가 결합되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으로 등장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국정기획자문위’의 100대 국정과제에 확정되어 추진이 본격화 되게 되었음(보건복지부, 2018)
- 100대 국정과제 중 17번인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은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2017년 신정부 출범에 따른 7월 12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 마련”이라는 국정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17개 시·도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아동보육, 노인요양 등에서 공공복지시설에 의한 사회서비스제공을 강화하기로 발표하였음(김윤수, 2018)
- 앞서 살펴본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민간중심의 제공기관 급증 등으로 인해 야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사회서비스가 가지는 공공성 실현을 위해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된 것임. 즉, 사회서비스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과 더불어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과제가 된 것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시설을 직영화 또는 공영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이었음(김운수, 2018)
- 이처럼 사회서비스 분야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도입 초기와 양적 성장시기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보다 구체화 된 것이라 볼 수 있음
-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사회서비스 포럼 개최 등 총 60여 차례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음
- 이를 토대로 2018년 12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2018. 12. 14)’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 59억 7천만 원을 편성 하였음
- 사회서비스원은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임
-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법률로는 2018. 5. 4 발의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1인)’과 2018. 10. 16 발의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이 있는데 두 법률안 모두 현재 국회 계류 중임
- <표 3-2>, <표 3-3>와 같이 두 법률안의 법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보다 더 현실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2>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이유

-
- 저출산·고령화 및 맞벌이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적 돌봄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 및 가족해체 등의 신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음
 - 민간시장의 확대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을 확충하고 바우처 방식 도입을 통한 수요자중심 주의 선택권 강화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의 양적 성장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사회서비스공급기관간 과도한 경쟁구조 등으로 인해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과 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고, 비중이 낮은 국공립 복지시설도 대부분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사회서비스 시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임. 사회서비스 품질을 견인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 확충에 따라 해당 국·공립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및 민간시설에 대한 선도적 운영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공립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민간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절차, 운영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자료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

<표 3-3>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제정 이유

-
- 한국 사회는 핵가족화, 고령화라는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로 인하여 보육,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적,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수요자가 취약한 상태에서 필요로 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려우며, 모든 인간의 존엄한 삶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편적이고 감당 가능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 정부는 그동안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과도한 민간 경쟁과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서비스의 질 또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장되지 못함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운영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자료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

- 위 두 법률안은 모두 그동안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보 과정상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공공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지지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3) 중앙정부의 정책내용 및 가이드라인

1) 주요 업무

① 국·공립 제공기관 직접 운영

- 사회서비스원이 국·공립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면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여 시·도 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선 위탁 가능 시설의 범위를 설정하기도 함
 - 첫째,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중 시·도지사가 서비스원이 운영하기로 결정한 분야의 시설
 - 둘째,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결과가 저조한 국·공립 시설
 - 셋째, 시·군·구청장이 사회서비스원에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임

②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 사회서비스원의 또 다른 주요 업무는 커뮤니티 케어 제공 전달체계로서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여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는 것임
- 재가서비스 사업의 규모화,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직접 고용 등을 통해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및 처우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 단일서비스, 단시간의 서비스제공에 기반하여 시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의 운영 방식에서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기타 유사서비스 등을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본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이를 토대로 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그림 3-2> 종합재가센터 사업 및 통합·연계

③ 민간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원

- 사회서비스원의 세 번째 주요 업무는 민간 제공시설에 대한 품질관리 지원으로, 특히 재무, 회계, 법무, 노무와 관련하여 상담 및 자문을 지원하는 것임
- 중장기적으로 시설 대체인력 및 안전점검 지원, 표준 운영모델 연구, 평가 지원 등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④ 지자체 사회서비스 체계적 관리 지원

-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질 제고 관련 연구, 서비스 수급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주된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음

2) 사회서비스원 설립 개요

① 설립 형태

-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민법」 및 「공인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익법인 형태로 설립하며, 설립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됨
-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후에는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될 예정임

② 설립 예산

- 보건복지부는 2020년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1개 지자체 당 총 9억 8천만원을 지원함
- 9억 8천만원 중 5억은 초기 설치비이며, 4억 8천만원은 본부 인건비 및 운영비(6개월)로 광역자치단체와 50% 매칭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될 예정임

③ 운영 방안

- 사회서비스원 본부 직원 및 소속 시설 직원 등은 직접 고용하며,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을 추진하되, 사회서비스원이 기존 운영시설(위·불법, 평가저조 등)을 수탁하는 경우 종사자의 고용보장을 원칙으로 함
-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임금 기준이 있는 경우(어린이집)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며, 임금 기준이 없는 경우(요양시설 등)는 기준을 마련해야 함.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재정 운영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에 따라 소속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수입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며, 운영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제공 인력의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함

2. 상위계획 검토

(1)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 비전 및 정책방향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 붙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설정하고 있음

<표 3-4>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비전 및 국정전략

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및 20대 국정전략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대통령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더붙어 잘사는 경제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2) 관련 국정과제 및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를 주관 부처로 하는 관련 국정과제별 주요 내용(실천 과제) 검토 결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양육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

<표 3-5> 국정과제 주요내용

국정과제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목표 :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 - 사회서비스 일자리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창출 - 사회서비스공단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 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품질 향상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지역사회 보건복지 전달체계 혁신 등을 통해주민의 복지체감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및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대폭 확충 *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직 공무원 등을 2021년까지 확충하고 0세아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공공부조 혁신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추진, 자활대상자 확대 및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등 취약계층 자립 지원 -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 2018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월10만원 지급 등추진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장애인 지원 강화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

<표 3-5> 국정과제 주요내용(계속)

국정과제	주요내용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 노후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적정수준 보장 - 신중년 생활안정 지원 :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 추진 - 치매 국가책임제 : 20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등 추진
의료 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기반 의료체계 :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 등 - 의료격차 해소 :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거점 종합병원 확충 추진 - 의료 공공성 강화 : 소아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등 추진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 2017년부터 난임 시술비 등 건강보험 적용 - 보육·양육 지원 강화 : 매년 어린이집 대폭 확충하여 20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등 -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 2018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등 - 저출산 대책 : 저출산 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 학대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등 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공공성 강화

(2)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년)

1) 계획의 성격

-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되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며, 사회보장 분야의 최상위기본계획임

2) 비전 및 정책방향

- 계획의 설정 비전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4대 분야 총 12대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표 3-6>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비전 및 핵심 추진 과제

국정과제	주요내용			
추진 원칙 및 전략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조정 강화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중장기 목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OECD 28위(2017) → 20위(2023)→ 10위(2040)			
4대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	고용교육	-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 -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및 일·생활 균형 달성		
	소득	-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역할 강화 -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확대 -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건강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 필수 의료 보장 -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3) 관련 핵심과제 및 주요 추진과제

- 사회서비스 분야 관련 핵심과제별 주요 추진과제 검토 결과, 종합재가센터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인프라 확충, 국·공립 돌봄시설 확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임

<표 3-7>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주요과제

핵심과제	주요 추진과제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 노인 :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통합적 재가서비스 강화 *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정식 개소 등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 장애인 : 맞춤형 서비스 확대 * 발달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 교육, 취업 등 서비스 확대 - 아동 : 아동 자립지원 강화, 아동 중심의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 보호대상 자립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강화 * 공적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 취약계층 : 에너지 부담 완화 및 문화·예술 스포츠 등 접근성 제고 * 에너지 복지체계 확대 * 저소득층 문화향유기회 확대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개발 및 인프라 확충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및 모델 개발 *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등 인프라 확충 -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돌봄-요양 서비스 연계 제공 * 병원과 지역 간 협력으로 퇴원·지역연계 강화 * 방문의료 제공 및 재가 의료급여 도입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도입 * 장애인 종합판정도구 도입 및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 국공립 돌봄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 어린이집·유치원, 요양시설 등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 공립 임대주택 확대 * 주거급여 강화 - 사회서비스 제공 거점, 인력양성 및 품질관리 강화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등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 보육·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및 커뮤니티 케어 특성화 대학원 지정 등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 종사자 처우개선 예시 : 사회복지종사자 1일 8시간 월급제, 사회복지시설 근로형태 개선(2교대→3교대), 상해보험 가입 확대, 상습가해 이용자 제재 근거 마련 등 개선방안 검토

(3)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

1) 추진 배경

(필수노동자) 코로나19 사회의 생명·안전·기능유지 + 대면서비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서비스업의 시장·고용규모는 축소, 온라인·비대면방식의 서비스 제공 및 재택근무 활용 확대
 - 비대면 소비확산으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등 피보험자 수는 3월 이후 지속 증가세
- 반면, 국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유지를 위해 대면서비스를 중단 없이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은 더욱 강화

<표3-8> 재난(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사회기능유지를 위한 업무종사자 라는 특성

구분	특성
미국	•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lock-down)시, 유지 및 재가동 시 우선 고려될 업무 - 운송 배달 - 돌봄(의사·간호사·응급인력 등 의료진, 요양보호사 등) - 공공안전(폐기물처리, 재해예방 등) - 에너지(에너지 생산·관리·운송 등)
캐나다	• 각 주정부에서 필수직군(+저임금) 지정 - 의료·사회서비스, 돌봄, 청소, 교통·물류 등
유럽	• 운송, 노인돌봄, 보육, 식품, 공공시설 종사자 등 국가별로 다양

(보호필요성) 전통적 취약일자리 + 감염·과로 위험 가중

- 이러한 필수노동 대면서비스 분야는 전통적으로 근무여건(저임금, 장시간근로, 산업 재해 등) 및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일자리가 다수
 - 택배·퀵서비스의 재해율은 7.0으로, 전체산업 평균(0.58) 대비 높은 수준(지속 증가)
- 코로나19 확산으로 필수노동자는 대면서비스 업무량과 노동의 강도가 오히려 증가 → 감염, 과로 등 산업재해 위험 가중
 - 월택배 물량 242백만개(19.7월) → 292백만개(20.7월, 20%↑)
- 우선, 안전, 근무여건 등이 취약한 분야의 필수노동자를 중심으로 재해(감염)·과로·실업 등 위험에서 보호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

<표3-9> 9.22. 국무회의시 대통령님 말씀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 요양과 육아를 담당하는 돌봄 종사자들, 배달업 종사자들이나 환경미화원들, 제조, 물류, 운송, 건설, 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필수노동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①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

- (감염) 필수노동자는 대면·접촉을 통한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해야 하는 업무 특성 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크게 노출
 - 요양병원 코호트(Cohort) 격리 시 요양보호사 감염위험 노출(실제 감염사례 다수)
- (사고) 업무 특성, 물량단위 계약, 취약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사고발생 및 업무상 질환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 다수
 - '20.1~6월, 이륜차 사고사망자는 전년동기비 13.7% 증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8.2%

② 지나친 과로 및 근무여건 취약

- (과로) 고용형태, 불명확한 업무범위, 인력부족 등으로 상시적 장시간 근로 위험에 노출, 일부 분야는 코로나19로 과로 문제 심화
 - (택배기사) 코로나19 이후 물량 증가에 따라 노동시간 증가
 - (사회복지시설) 1주 평균 52.3시간(사회복지 생활시설 근로형태 개선방안 연구, '19년)
- (근로조건) 택배·배달 등은 소득이 불안정하고, 돌봄 등은 저임금이 대부분
 -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업 평균임금 212만원(전산업 평균의 60.7%)

③ 노동법 보호 및 안전망 사각지대

- (노동관계법) 필수노동자 중 다수는 임금근로자가 아닌 특고 및 프리랜서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틀 밖에 존재
- (안전망) 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실제 가입률이 낮아 실업·산재 등 사회적 위험에 취약

3) 추진목표 및 전략

목표	필수노동자 안전 및 사회적보호 강화를 통해 재난극복 및 포용사회 구현에 기여					
정책방향	· 코로나19로 가중된 위험 안전, 근무환경 개선, 안전망 확충 · 우선, 취약부문 필수노동자 보호 강화 보호영역 확대					
추진 전략	정책 과제	분야별 적용(例)				
		보건 의료	돌봄	택배	배달	환경미 화
1. 안전 및 건강 보호 강화	① 방역실태 점검 및 방역물품 지원	✓	✓	✓	✓	✓
	② 건강관리 및 위생· 안전 인프라 지원	✓	✓	✓	✓	✓
	③ 산재보험 적용 확대	既적용	✓	✓	✓	既적용
2. 과로방지 및 근무여건 개선	①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	✓	
	② 취약분야 노동관계법 준수 점검·감독 강화		✓	✓	✓	
	③ 신규·대체인력 채용지원	✓	✓	✓	✓	✓
3. 공정한 보상 및 안전망 확대	① 훈련 및 경력관리 체계 마련		✓	✓	✓	
	② 사회안전망 확대		✓	✓	✓	
4.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	① 보건·의료 : 종사자 처우개선, 의료인력 보강 등 ② 돌봄서비스 : 보수수준 합리화, 대체인력 지원 등 ③ 택배기사 : 인력운용 점검, 과로 실태조사 등 ④ 배달종사자 : 가이드라인 배포, 안전인프라 지원 등 ⑤ 환경미화원 : 안전조치의무 점검, 건강진단 등					
	·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 필요시 추가 예산확보 방안 강구 ·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민적 존중, 연대와 배려 분위기 조성					

4) 주요 추진과제

가. 안전 및 건강 보호 강화

① (안전) 방역지도·관리 및 방역물품 지원

- (방역지도·관리 강화) 콜센터, 물류센터, 육가공·식품제조 등 감염 취약분야 지속 발굴 및 방역실태 지도·점검(자율+현장점검)
 - 질병청 집단감염 DB 및 지방노동관서 사업장정보를 활용하여 분석·취약분야 발굴
- 사업장 근로감독, 건설·제조 패트롤점검, 건설업 안전지킴이 및 민간전문기관 기술지도 시 방역실태 연중 상시 지도·점검 병행
- (방역물품 지원)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3밀*(밀집·밀폐·밀접) 사업장(50인 미만)에 대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장비 구매비용 지원
 - *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 소요금액 70% 지원(칸막이, 체온계, 손소독제, 열화상카메라 등)
- 대면 접촉으로 감염위험이 큰 배달업 종사자, 택배기사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지원('20.10~12월, 약 100만개)
 - 배달라이더, 택시기사, 콜센터 등 사업장 대상 마스크 442만개 배포('20.上)

② (건강보호) 건강관리 및 위생·안전 인프라 지원

- (건강관리 지원) 근골격계·뇌심혈관 등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전국 23개소)를 통한 건강진단 및 상담 제공
 - (근골질환) 통증척도 설문, 올바른 작업자세 안내, 스트레칭·근력강화 프로그램 등 (뇌심질환) 개인력 검토, 혈압, 체중 등 기초 측정, 절주·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 상담 등
- (위생시설 지원)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등 위생시설 지원(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최대 70% 지원)

-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세척·세안시설, 산업단지 목욕·세탁시설 지원
→ (개선) 배달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을 위한 휴게·샤워시설 지원('20.10월~) 추가

- (건강보호 매뉴얼 지원) 고객응대 직종 종사자*를 위한 건강보호 및 사후조치 사항 등을 담은 매뉴얼 제작·배포('20.12월)
 - * 재가요양보호사 및 노인돌보미, 아이돌보미, 방문간호사,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사, 도시가스점검원·검침원, 설치·수리 현장기사, 대여제품점검원 등
- 마트노동자를 위한 박스 손잡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배포('20.12월) 및 유통·제조업체의 자체 개선 방안 수립·이행지도

③ (산재보험) 적용범위 및 가입 확대

-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 가능한 특고 직종(간병인 등)을 지속 발굴·적용('20.7월 적용직종 확대, 9→14개)
- (산재보험 가입 확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을 추진하고, 특고·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전속성 기준** 개편 검토
 - * 종사자의 질병, 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으로 제한
 - ** 현행은 산재보험법상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만 적용 가능 → 법리적 쟁점, 분야·직종별 특수성 등을 반영한 개편방안 마련('21.上)
- 배달노동 종사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근로복지공단-배달플랫폼) 확산
 - * 모아플래닛과 근로복지공단 배달 종사자 등에 대한 정보 공유 업무협약 既체결(9.16) → 주요 배달플랫폼사(생각대로, 부릉, 바르고 등) 확대 추진

나. 과로 방지 및 근무여건 개선

① (기준) 공정한 노무제공 관행 조성 지원

- (표준계약서 확산) 배달, 킥서비스 등 특고종사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금지, 안전·권익 보호 등을 규정한 표준계약서 도입·확산
 - 배달기사, 킥서비스, 대리기사에 대한 표준계약서 마련·배포('20.12월)
 - (플랫폼종사자 보호) 플랫폼노동 종사자 규모 추정, 실태파악* 등을 토대로 안전망 강화, 노무제공조건 보호 등 종합대책 마련('20.12월)
- * ▲ 규모파악(8~12월), ▲ 노무제공 형태 등 실태조사(한고원, 3~11월) 진행 中

<표3-10> 표준계약서(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 계약사항 외 업무강요, 배달·배차 정보 차단, 부담비용 청구,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배상 책임 전가 등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 사업주는 종사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 • 종사자의 업무수행 소요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하는 행위 금지
종사자 권리보호	• 수수료 지급기준·일자 등을 명시, 일방적 계약 해지·변경 금지 • 분쟁 발생 시 쌍방 합의에 의하고 미해결 시 법원 소송으로 해결

② (점검·감독) 취약분야 노동관계법 준수 점검·감독 강화

- (취약분야별 감독 강화) 유통업체, 감시·단속근로자 등 장시간 노동, 근로조건 취약 분야를 발굴하여 집중 근로감독 실시
 - '20.5.7~6.5, 택배 4사의 물류센터 28개소 감독결과, 총 25개소에서 근로·휴게시간 위반, 연장·주휴 수당 미지급, 불법파견 등 98건 적발
 -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점검) 생산량 급증 등의 사유로 인가받은 사업장 대상 건강보호 조치* 등 인가기준 준수여부 점검(~12월)
- * 근로자 요청시 건강진단, 주 8시간 이내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③ (채용) 신규대체인력 채용 지원

- (고용장려금 집중 연계) 고용보험DB 분석을 토대로, 필수노동 분야 사업장 중 신규채용 사업장 대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연계·지원
 - 지방관서별 「고용안정 현장지원 TF」 통해 사업장 발굴 및 지원제도 연계(10월~)
 - (지원개요) '20.2월 이후 한달이상 실업중이거나, 채용일 이전 6월 이상 장기실업자 등을 중소·중견기업이 채용할 시 1인당 월 최대 중소 100만원, 중견 80만원 지원
- (고령자 대체인력 채용지원) 환경미화·방역·운수 등 업종의 '60세 이상 고용지원금'(1인당 분기 30만원) 지원기준을 하향 조정
 - 전체 고용인원대비 60세 이상 고령비율이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지원
(예시: <청소업> 23 → 12%, <소독방제> 23 → 12%, <건물관리업> 23 → 12%)
- (고용서비스 강화) 해당 직종의 특성과 함께 사업장의 근로조건, 채용애로 등 여건을 감안하여 유형별 맞춤형 매칭서비스* 제공
- * 근로조건 유사 직종(돌봄, 미화 등)에 대해 우선안내(알림톡, 푸시알림 등 활용) 및 신속한 매칭 유도 → 매칭이 어려운 직종은 고용센터 밀착 지원

다. 공정한 보상 및 안전망 확대

① 훈련 및 경력관리 체계 마련

- (특고 직종별 특화훈련) 배달·택배 직종 특화훈련 과정을 신설*하고, 추후 현장수요를 토대로 추가 직종 발굴**·지원(공동훈련센터 활용)
- * (대림오토바이 사례) 배달근로자 대상 대형 배달대행사 연계 취업 프로그램 적용 중
- ** 「특고 및 자영업자 특화훈련 체제마련 방안」 연구용역 중
- (직종별 경력관리체계) 필수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무능력·경력관리기준 및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한 보상 및 처우개선 지원
 - 분야별 직무능력, 경력관리, 표준임금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1년)

② 사회안전망 확대

- (고용보험 적용 확대)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 우선 검토)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실직 위험에 안전망 제공
 - *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20.9월) → 금년 정기국회 통과 추진
- 전체 특고 및 플랫폼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12월)
 - 취업자의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 및 소득정보 공유 확대 방안도 포함
- (협동조합 설립 지원) 특고, 프리랜서 권리보호를 위한 조직화 및 안전망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직종별 협·단체 및 협동조합 설립* 지원
 - *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사업 및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기재부, 사회적기업진흥원)

라. 돌봄서비스 종사자(복지부, 여가부, 고용부) 지원방안

구분	내용
현황	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3만여명 ② 재가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약 38만명 ③ 아이돌보미 2.3만명 ④ 민간 가사. 간병인력 21만명 수준 추정
근로실태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코호트 격리 등)되어 있으며, 보수수준이 낮고(불안정), 장시간 근로, 휴게시간 확보 곤란 등 근로여건 취약

① 처우 개선

- 보수수준이 낮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은 공통처우 개선율(0.9%)보다 단가인상률을 높게 책정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
 - ('21년) 장애인/정신/노인양로 1.9%, 아동공동생활가정 등 아동시설 2.9% 인상
 - 중장기적으로 직무를 반영한 임금체계·가이드라인 준수율 산정방식 등 제도개선('20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설간 격차해소 추진
- '22년까지 모든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공공부문 돌봄종사자를 확충하고, 정규직 채용** 등 처우 개선 추진
 - * 사회서비스원 '20.10월 8개 → '21년 14개 → '22년 17개 시·도 확대
 - **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등 우수사례 확산,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추진('20년)
-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확대*를 통해 아이돌보미의 소득확대 지원
 - * 지원시간(연 720→840시간), 지원비율(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

② 근무여건 개선

- 근로기준법 개정 적용 시기에 맞춰 사회복지시설 인력 확충*(교대근무자) 및 종사자 휴가·교육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 * 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시간특례제외('20.1월 50~299인→ '21.7월 5~49인)
 - ▲(종사자 50~299인) 795명(184억) 既 확보, ▲(종사자 5~49인) 3,051명(384억) → '21년 정부 예산안 반영(국고시설 기준)
- 4개 직무* 대상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요건 완화('20년 한시)
 - * 간호사,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보건·의료종사자,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 근로계약 기간 요건 (현행) 무기계약 → (개선) 6개월 이상으로 완화('20년 한시)
- 요양병원 등의 주 52시간제 안착 및 휴게시간 부여 점검·감독('21.上)

③ 관련 법체계 마련

-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 공식화 및 종사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20년)
 - 법 제정 이후 돌봄서비스 시장에서 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3. 관련법규 검토

(1) 재단법인 설립 관련 법률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지정·고시에 대한 사항,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관련 사항,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원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하게 되며, 임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함
- 재단의 경영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

<표 3-1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4) 주요내용

조항		연장거리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표 3-1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4) 주요내용(계속)

조항		주요내용
제8조	정관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	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제12조	직원의 채용	① 출자·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	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관련 조례 제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	경영공시	① 출자·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2) 민법

-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 등기, 정관 사항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는 재단법인 등 설립의 근거 조문으로 학술, 종교,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3-12> 민법(시행 2018. 2. 1) 상 재단법인 설립 관련 규정

조항		주요내용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법인설립의 동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장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적용됨
- 제4조(설립허가 기준)상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3-1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7. 12. 12) 주요내용

조항		주요내용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제4조	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의안)

- 2018년 5월 국회 소관위에 발의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절차, 사업, 운영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국회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사회서비스원을 동 법률안에 근거한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 사회서비스원 대상 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사회서비스 유관 법률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수행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등으로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유관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각종 서비스 등 제공 사업을 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3-14>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조항		주요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 하고,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당 사회 서비스 및 이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이를 제공하는 주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간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발생한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표 3-14>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계속)

조항		주요내용
제4조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관할 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서비스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을 향상시키고, 그 관할 지역 내에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 등	① 서비스원은 제3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2. 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3.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설치 및 운영 나. 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 4. 제31조에 따라서 위탁받은 업무 5.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관련 연구·개발 6.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7.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8.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공공성 제고 등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서비스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직접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유관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한다. ④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등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 및 제3항에 따른 우선위탁의 절차, 범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서비스원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그 서비스원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조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비스원의 사업 및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	권한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단 또는 서비스원에 위탁 할 수 있다.
제34조	기부금품의 접수	① 서비스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2) 사회서비스 관련 법규

1) 사회서비스 관련 법규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필요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 개발·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3-1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0. 3. 24) 주요내용

조항		주요내용
제2조	정의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제공자의 등록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	교육과 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음
- 제5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등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34조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3-16> 사회복지사업법(시행 2020. 7. 1) 주요내용

조항		주요내용
제5조의2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원칙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34조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 대상별 관련 주요 법규

- 저소득, 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 아동 등 사회복지서비스 대상별 관련 주요 법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17> 사회복지서비스 대상별 관련 주요 법규 검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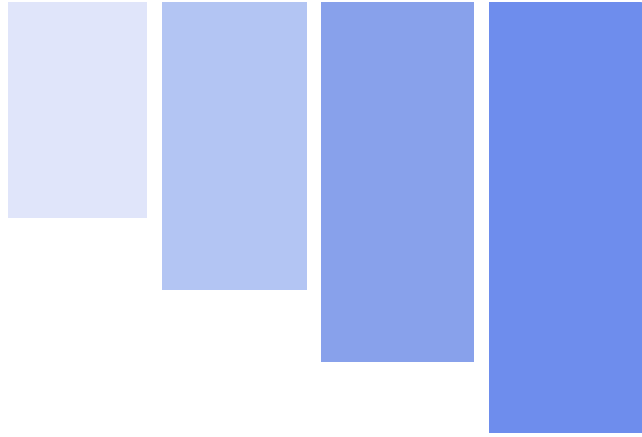
구분	관련주요법규	주요내용
저소득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서비스 정의, 사회서비스 보장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임 - 급여의 종류와 방법, 자활지원,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보장시설, 보장비용 등의 사항을 규정
노인	노인복지법	-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체에 관한사항 등을 규정 - 고령자에 대한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

<표 3-17> 사회복지서비스 대상별 관련 주요 법규 검토 결과(계속)

구분	관련주요법규	주요내용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도록 규정 - 제53조(자립생활지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	-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 활동지원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여성	양성평등기본법	-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제26조(일·가정 양립지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
보육	영·유아보육법	-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4조(책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에 의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 제36조(비용의 보조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 지방육아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등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도록 규정

<표 3-17> 사회복지서비스 대상별 관련 주요 법규 검토 결과(계속)

구분	관련주요법규	주요내용
아동	아동복지법	- 아동의 복지 보장을 위해 아동 보호 서비스 및 학대 예방 및 방지, 지원 서비스, 아동복지시설 관련 사항을 규정 -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의하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등 돌봄서비스 제공 등 돌봄서비스를(방과 후 돌봄 서비스)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 제4조(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등 복지 지원 및 복지지원 제공기관 등 사항을 규정 -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아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행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하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지원법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이 목적임 -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제4장 사례조사

1.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사례조사

제4장 사례조사

1.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사례조사

(1)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1) 설립 현황

- 설립형태
 - 재단법인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원일자 : 2019년 3월 11일
- 예산 규모
 - 설립 출연금 : 10억원
 - 설립·운영 예산 : 총 83.7억원 (국비 12.4억원 + 지방비 71.3억원)
- 운영방안
 -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 제정 후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
 - 시급성 및 서비스 체감도가 높은 장기요양(주·야간보호, 재가방문),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 보육(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선도적 추진
 - 초기 규모는 영역별로 최소화하되 시범운영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
 -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 단계별 확대로 공공인프라 확충,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 등으로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좋은 돌봄체계 구축, 민관 상생 제도적 기반 구축 등 4가지를 추진 방향으로 설정
 - 종사자 직접고용과 직접서비스로 일자리 질과 서비스 질 제고, 민간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동반 발전 전략 마련, 보육-요양-장애인활동지원 등 주요서비스 정착 후 서비스 확대, 이용자 편의 확대와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전략으로 설정

2) 추진 경과

- 2016. 사회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 2017. 6. 사회서비스원 설립 TF 구성 및 운영
- 2017. 7. 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구기획단 구성 및 운영
- 2017. 7.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시-보건복지부’ 협의체 구성
- 2018. 5. 타당성 연구 용역
- 2018. 8.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2018. 12. 시의회 심의(조례 제정안, 출연 동의안, 2019 예산안)
(가칭)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19. 3.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서울복지재단과 별개로 독립적 설치)

3) 주요 역할 및 기능

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 장기요양, 보육 분야 등을 대상으로 신규 또는 위탁계약이 만료된 국·공립시설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종사자 직접 고용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종사자 전문성 교육과 수시 모니터링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민간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장기요양 시설의 경우 신규를 중심으로 하되 위탁만료 시설을 검토할 예정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2019년 이후 신축 시설을 중심으로 수탁 운영할 계획임

②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 장기요양(주·야간보호, 재가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편리한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재가장기요양 서비스의 경우 방문요양을 중심으로 초기 운영을 하고 시설 설치 및 이용자 확보 등 운영 여건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며, 바우처 사업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안정화 이후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아이돌봄 등 사업의 확장성을 검토할 예정임

- 전 자치구에 2021년까지 25개를 설치할 예정이며, 돌봄SOS 연계를 통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유기적 연계를 도모할 계획임

③ 민간기관 지원

- 민간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전문가(법률, 회계, 노무) 상담지원 및 서비스 표준운영모델 전파로 민관 상생 협력 체계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걱정수가 현실화 노력 등 제도개선 발굴 및 건의,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민간의 긍정적 기대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 법률·회계·노무 분야 전문가 채용을 통한 상담 및 컨설팅 지원, 국공립 시설 운영·연구를 통한 표준운영모델 마련·전파 등 민간 컨설팅과 종사자의 휴가 등 쉼 권리 보장과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요양보호사·보육교사 등 대체 인력 지원, 민간 영세 기관 종사자 교육 등 교육 지원 예정임

④ 서비스 품질관리

- 사회서비스원의 통합서비스 제공 모형에 적합한 표준운영 모델 구축, 서비스 품질 관리체계 개발, 제공인력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함
- 사업별·기관별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표준모델 및 특화서비스를 개발하고, 직급별 교육운영 등 종사자 교육을 체계화하며,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및 환류를 하는 과정을 통해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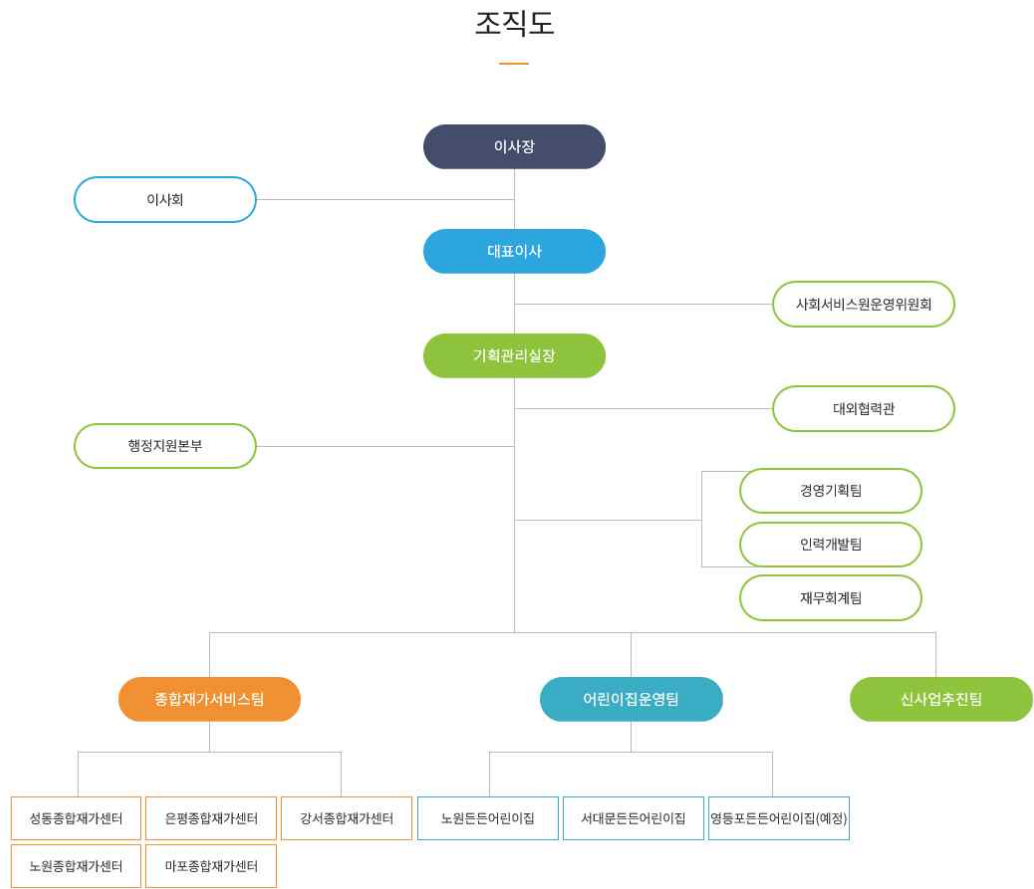
4) 조직 구성(안)

• 인력 구성(안)

- 설립 시 본부 조직은 원장, 1실, 4팀 체계로 구성하여, 소요 인력은 총 22명 규모에서 2022년 72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임
- 2019년 산하 시설을 포함한 종사자 규모는 총 572명이며, 2022년은 총 4,016명 규모임
- 산하 수탁시설별 종사자 규모는 종합재가센터 4개소 480명,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 70명임(총 550명→ 2022년 3,944명)
- 서비스원에서 본부 및 산하기관 인력을 직접 채용·배치할 계획이며, 고용형태로는 상용형 풀타임을 원칙으로 하되, 산하기관 서비스 제공인력 및 대체인력 일부는 상용형 파트타임으로 채용함
-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수준을 적용하고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 지원 등의 처우수준을 개선할 계획임
- 복지부 급여 가이드라인과 임금체계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임금형태를 적용할 예정임

• 조직 구성(안)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최종 조직 구성(안)은 다음 <그림 4-1>과 같음



<그림 4-1>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최종 조직 구성(안)

(2)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1) 설립 현황

- 설립형태
 - 재단법인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원일자
 - 2019년 4월 1일
- 예산 규모
 - 초기 출연금 : 34.6억원(미사용 교통카드충전선수금에서 지정 기부) 설립 후 매년 5억원의 출연금을 별도 출연하여 100억 확보예정
 - 설립·운영 예산 : 총 21.4억원 (국비 13.2억원 + 지방비 8.2억원)
- 운영방안
 - 문제 발생 대구시립희망원 등 국·공립 시설의 우선 수탁으로 정상화 추진 예정
 - 인권 강화 및 학대예방 통합 운영 등 대구 특화형 통합학대예방센터 설립·운영
 - 대구형 복지정책 연구·개발 등의 기능 병행 예정(대구복지재단 부재)
 - 희망원·국공립시설 등 시설 직접 운영, 통합돌봄서비스, 고용안정·질 개선, 사회서비스 개발·확산 등을 전략으로 설정

2) 추진 경과

- 2017. 11. 대구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추진위원회 발족
- 2018. 6. 서비스원 설립 예정지 선정 및 재산관리관 지정 (연면적 2,481㎡, 지상3층, 지하1층 규모)
- 2018. 6. 타당성 연구 용역
- 2018. 9 ~ 2019. 3. 서비스원 설립 예정지 리모델링 설계 및 실시

- 2018. 11. 행정안전부 협의
- 2018. 12. 조례 제정(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18. 12 ~ 1. 정관 및 제 규정 제정 (임원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구성, 진흥원 운영
세입·세출예산 편성, 창립총회)
- 2019. 1 ~ 2. 보건복지부 설립허가 및 행정안전부 지정·고시
- 2019. 2 ~ 3. 본부직원 채용 공모 및 채용
- 2019. 3. 사회서비스원 개원

3) 주요 역할 및 기능

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 국·공립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관리함
-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시설,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등임
-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
되,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함
- 어린이집 2개소, 노숙인 재활 1개, 요양시설(노숙, 정신) 2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1
개, 공공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대체인력지원사업단) 3개 등
총 9개소의 국·공립 시설을 수탁 운영함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1개소)은 2020년 신축 및 위탁운영 예정임

②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제공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처우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 본형(재가방문 + 노인돌봄 + 가사간병)과 확대형(재가방문 + 노인돌봄 + 가사간병 +
장애인활동지원) 2개 유형의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임

③ 민간기관 지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전문관리자 시설안전점검지원, 소규모 시설에 대한 재무·회계·인사 등 경영 컨설팅, 민관 협치 자문위 운영 및 서비스 질 개선 등 민관협력지원 등 민간제공기관 지원사업을 진행함

④ 서비스 품질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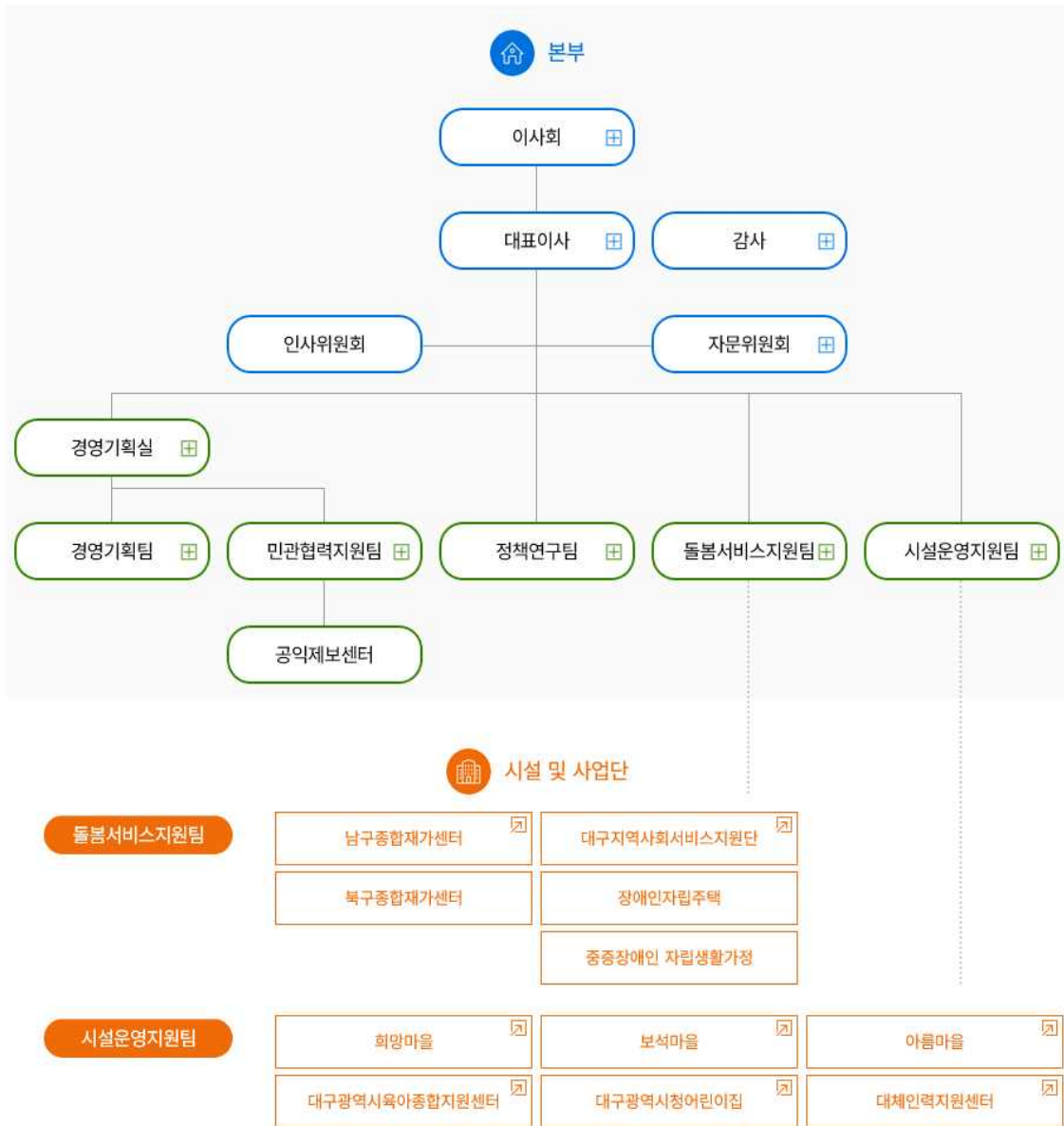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 품질개선 및 사회서비스 표준화방안에 대한 연구, 직영시설 성과관리 및 서비스 질 관리, 지역사회서비스제공기관 성과관리 및 품질관리 지원 등을 진행함

4) 조직 구성(안)

- 인력 구성(안)
 - 본부 조직 체계는 원장, 1실, 3팀으로 구성되며 소요 인력은 24명에서 2022년 80명 규모로 계획됨
 - 직영시설은 5개 분야 14종·15개 시설 및 사업에 총 종사자 340여명(돌봄인력 포함)으로 구성할 예정임
 - 운영시설 전체의 통합 인사관리로 승진 등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추진함
 - 직영시설은 개별 사업·시설 지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본부직원의 경우 복지부 사업단 논의 후 별도의 인건비 기준(보수규정)을 마련함

• 조직 구성(안)

-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최종 조직 구성(안)은 다음 <그림 4-2>와 같음



<그림 4-2>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최종 조직 구성(안)

(3)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1) 설립 현황

- 설립형태
 - 재단법인(지방 출연기관)
- 설립근거
 -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민법 제32조
 - 구체적인 설립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의거 진행
- 개원일자
 - 2019년 4월,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으로 시작
 - 2019년 10월 개원
- 예산 규모
 - 설립 출연금 : 10억원(전액 도비)
 - 설립·운영 예산 : 총 19.8억원 (국비 12.4억원 + 지방비 7.4억원)
- 운영방안
 - 사회서비스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 운영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재무, 회계, 법무, 노무 등의 상담 및 자문
 -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 등의 서비스 질 제고 관련 연구·개발
 -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



2) 추진 경과

- 2017. 7. 사회서비스원 기본 방향 발표
- 2018. 3 ~ 7. 사회서비스 포럼 개최
- 2018. 5 ~ 10.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안 발의
- 2018. 7. 2019년 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 편성
- 2018. 10. 사회서비스원·일자리 추진단 구성·운영
- 2018. 12.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 발표
- 2019. 1.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공모 및 대상지역 선정
- 2019. 7. 타당성 연구 용역
- 2019. 10. 개원

3) 주요 역할 및 기능

① 경기도 차원의 사회서비스 컨트롤타워 수행

- 경기도가 설치한 공공센터 우선 수탁 운영으로 광역 차원의 거시적인 지원체계 구축
- 광역 차원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빅데이터 관리로 수요와 공급 매칭
- 지리적 특성 및 복지자원 편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적정 기준 마련

② 전 생애 통합돌봄체계 구축

- 시범사업에서는 영·유아(국·공립어린이집) - 초등학생(다함께돌봄) - 노인(요양시설 및 종합재가센터)을 중점 추진 후 본 사업에서 사업영역을 성인(장애인/정신·중독 등)까지 확장 도모
- 영·유아 -초등학생 -성인 -노인을 아우르는 경기도형 전 생애 통합돌봄체계 구축

③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도모

- 서비스 제공 인력과 제공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 단위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지역·시설 간 격차 해소 견인
- 지역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형 사회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에 따른 일자리창출로 경기도 내 공익형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도모

④ 체감도 높은 도민 복지지원체계 구축

- 전국 최대 규모의 복지대상자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필요성 증대
- 지역 간 경기도민의 차별 없는 사회서비스 수혜,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역 및 시설 간 균질한 서비스 기준선 제시 등을 통해 도민의 체감도 제고

4) 조직 구성(안)

- 인력 구성(안)
 - 설립 초기인 1단계 조직 체계는 원장, 본부장, 대외협력관, 3팀으로 구성하며, 소요 인력은 총 20명, 수탁 운영 시설별 종사자 인력 규모는 총 326명 규모임
 - 안정기인 2단계 조직 체계는 원장, 3본부, 11팀으로 구성되는 본부 조직 및 시설운영본부 내 별도의 산하 수탁 시설 조직 체계로 구성됨
 - 2022년 기준 소요 인력은 총 70명 규모이며, 시설운영본부 산하 수탁 시설은 총 126개소, 수탁 시설 종사자는 4,272명 규모임
 - 소요 인력의 연차별 규모는 2019년 20명에서 2020년 30명, 2021년 50명, 2022년 7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
 - 인건비 기준단가는 경기도 지방 출연기관으로서 가장 유사한 기관인 경기복지재단 2019년 기준 직급별 인건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적용함

• 조직 구성(안)

-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최종 조직 구성(안)은 다음 <그림 4-3>과 같음



<그림 4-3>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최종 조직 구성(안)

(4)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1) 설립 현황

- 설립형태
 - 별도의 재단법인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
- 개원일자
 - 2019년 6월 19일
- 예산 규모
 - 초기 출연금 : 5억원(도비 100%)
 - 설립·운영 예산 : 총 21.6억원 (국비 11.6억원 + 지방비 10.0억원)
- 운영방안
 -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시설은 최소화하고 단계적 확대를 추진
 - 설립 초기 대상 시설은 2019년 신규 및 위탁기간 만료 시설을 우선 운영할 예정
 - 시·군 직영 및 위탁시설은 도·시군 간 MOU 체결로 서비스원에서 직접 운영
 - 커뮤니티케어센터와 종합재가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제공
 - 대상 분야별(국·공립어린이집, 공립 노인요양, 종합재가센터, 커뮤니티케어) 시설운영자, 종사자, 도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불안 심리 해소
 - 민간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에서 지원기능 강화
 - 사회서비스원에서 복지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기능 수행

2) 추진 경과

- 2018. 9.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따라 운영계획 작성
- 2018. 10.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 기준과 지침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수립
- 2018. 11 ~ 2019. 3. 설립 추진단 구성, 실무협의체 구성
- 2018. 12 ~ 2019. 4. 이해관계자 컨설팅
- 2019. 1 ~ 2. 사업 설명회
- 2019. 2. MOU 체결
- 2019. 2. 대상시설 선정
- 2019. 2.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 2019. 5. 종사자 고용승계
- 2019. 5. 사회서비스원 개원

3) 주요 역할 및 기능

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 국·공립시설을 시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함
-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중 서비스원이 운영하기로 결정한 분야의 시설은 서비스원이 우선 위탁하여 직접 운영함
- 위법, 불법 발생 또는 평가결과 저조 시설 등을 우선 위탁하여 직접 운영함
- 시·군이 서비스원에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등을 거치지 않고 우선위탁 직접 운영함

② 커뮤니케어센터 및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 종합재가센터(기본형) 설치로 방문요양, 노인돌봄 및 가사·간병서비스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함

-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에 케어통합창구를 통해 재가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함
- 시·군 단위 공모를 통해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통해 선정하여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시행함

③ 민간기관 지원

- 제공인력 정보를 제공하여 신규채용 등이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력정보 지원을 하고, 운영모델·서비스 매뉴얼 등 표준운영모델을 전파하고,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경영·재무·회계·프로그램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안전 점검 전문요원 등을 지원하고, 운영 및 서비스모델·보수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지원함

④ 사회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

- 사회서비스(보육, 노인, 장애인 등) 정책연구, 지역사회 복지 동향 관리 및 지역사회 전달체계 연구, 지역 특화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표준화 등의 연구를 진행함

4) 조직 구성(안)

- 인력 구성(안)
 - 조직 체계는 원장, 1본부, 4팀으로 구성되며, 소요 인력은 20명 규모에서 2022년 7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임
 - 직영시설은 4종 9개 시설에 종사자 총 345명으로 구성할 예정임
 -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에서 본부·직영시설의 직원 직접고용으로 신분불안을 해소하고 운영시설 전체의 통합 인사관리와 우수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추진할 계획임
 - 교육·연수 등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승진 등 비전을 제사할 계획임
 - 직영시설은 개별 사업·시설 지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
 - 본부직원의 경우 복지부사업단 논의 후 별도의 인건비 기준(보수규정)을 마련하여 지급함
 - 재가서비스 종사자는 업무량 확보를 통해 고정월급제를 기본으로 함

• 조직 구성(안)

- 2022년 이후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안정단계 진입 시 최종 조직 구성(안)은 다음 <그림 4-4>과 같음



<그림 4-4>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최종 조직 구성(안)

(5) 설립 사례 종합검토

- 2019년 시범사업 지역 4개소의 설립 사례 종합검토 내용은 다음 <표 4-1>과 같음

<표4-1>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례 종합 검토

구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설립 형태	재단법인	재단법인	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시기	2019년 4월	2019년 3월	2019년 4월 경기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 으로 운영 2019년 10월 별도 설립	2019년 5월
설립 운영 방향	- 시급성 및 서비스 체감도가 높은 장 기요양, 장애인활 동지원, 보육중심 선도추진	- 문제 발생 국·공립 시설 우선 수탁 - 대구 특화형 통합학 대예방 센터 설립 운영 - 대구형 복지정책 연 구 개발 기능 병행	- 커뮤니티케어 등 지 역사회통합 돌봄 체 계 연계 - 종합재가센터 시·군 확대 설치 - 지부 설치 및 지역 재단(시·군 사회서비 스원) 협업	- 시·군 직영 및 위 탁시설은 와 시 군간 MOU 체결 로 서비스원에서 직접 운영 - 커뮤니티케어 센 터 및 종합재가센 터 통합 운영
주요 기능	- 국·공립 사회복지 시설 운영 - 종합재가센터 설 치· 운영 - 민간기관 지원 - 서비스 품질관리	- 국·공립 사회복지시 설 운영 - 통합학대예방센터 및 종합 재가센터 설치· 운영 - 민간기관 지원 - 서비스 품질관리	- 국·공립 시설 수탁 운영 -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원 - 시군 사회서비스 체 계적 관리 지원	- 국·공립 사회복지 시설 운영 - 커뮤니티케어센터 및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 민간기관 지원 - 사회복지정책 연 구 및 개발
본부 조직	1실 4팀 22명 (2022년 72명)	1실 3팀 24명 (2022년 80명)	1본부 3팀 20명 (2022년 70명)	1본부 4팀 20명 (2022년 70명)
예산 규모	83.7억원	21.4억원	19.8억원	21.6억원

①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시급성 및 서비스 체감도가 높은 장기요양(주·야간 보호, 재가 방문),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보육(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초기 규모는 영역별로 최소화하되 다양한 운영모델을 적용하여 시범운영, 사업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영역 및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음
- 다른 시범운영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종사 인력에 대해 서울시의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수준을 적용하여 처우개선을 도모한다는 것임. 또한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돌봄 SOS센터 시범사업’등과 연계 추진으로 지역 내 종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할겠다는 계획임

<표 4-2> 서울시 돌봄 SOS센터 시범사업

-
- 사업기간 : 2019. 7. 18 ~ 계속
 - 신청대상 :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 * '21년까지 서비스 대상 보편적 확대 예정
 - 서비스 신청기준(아래 3가지 항목 모두 충족)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서비스 내용(8대 서비스 제공)
 - 일시재가서비스(돌봄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발 등 수행)
 - 단기시설서비스(돌봄대상자 단기간 시설 입소)
 - 이동지원서비스(필수적인 외출 활동 지원)
 - 주거편의서비스(가정 내 시설에 대한 간단한 수리, 보수)
 - 식사지원서비스(기본적 식생활 유지 위한 식사 배달)
 - 건강지원서비스(건강상담, 검사, 투약, 영양, 의료관리 등)
 - 안부확인서비스(안부, 야간안전확인, 말벗 등 정서지원)
 - 정보상담서비스(돌봄관련 제도,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제공)
 - 신청 및 이용방법
 -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이용방법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료, 일반주민 100% 자부담
-

-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최대 200명 직접 고용을 통해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려운 최종증장애인을 직접 서비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19. 9. 26 서울척수장애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동 협약을 통해 척수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실시, 척수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매뉴얼 개발, 종합재가센터 편의시설 자문,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협력 등을 구체적 사업으로 협력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제도 개선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을 밝히고 있음

② 대구광역시

-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한 유형의 요양시설을 운영하며, 기존 문제 시설을 수탁하여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 등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기본적으로 대구시립희망원을 맡아서 운영하는데, 대구천주교회 유지재단이 36년간 위탁운영 했던 희망원은 지난 2016년 거주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학대, 비리와 횡령 등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곳이기도 함
- 당시 7년간 30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2의 형제복지원’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후 지역 장애계가 시설 폐쇄와 함께 시설 거주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자립생활 대책을 요구하였고 결국 대구시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이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음
- 이에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기본적인 업무 외 희망원내 탈시설 전담팀을 구성하여 장애인, 노숙인 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 한편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정책 현안 등을 진단하고사회복지 최신 동향 등을 공유할 목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을 홍보하는 홍보매거진 ‘이슈 진’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음

③ 경기도

-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을 사업 분야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경기복지재단에서 2019년 4월에서 9월까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을 운영한 후 독립하는 형태로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할 계획임
- 경기 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한 유형의 공공센터를 운영하며, 기초 지자체와의 갈등 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모델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경기도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등 광역 공공센터 8곳을 수탁 운영해 경기도만의 특색을 가진 사회서비스원을 만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커뮤니티 케어와 종합재가센터의 융합모델 개발도 계획하고 있음

④ 경상남도

- 경남 사회서비스원은 기초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 국·공립 시설 위탁 기간 종료 시 수탁기관을 서비스원으로 전환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특히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모형 구축’을 위해 2019년 8월 고성군과 경남사회서비스원은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의 주 내용은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 사업 협력에 따른 관련 분야 인력·정보 교류, 협업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한 협력 등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것임
- 한편, 경남 사회서비스원은 고성군뿐만 아니라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의령군, 창원시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경남 김해시가 ‘노인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임
- 김해시에는 사회서비스원 사무실과 종합재가센터 이외에 커뮤니티케어센터를 설치해 전문 사례관리사를 배치하며, 읍·면·동 케어 안내 창구와 연계해 돌봄 서비스사각지대 발굴과 체계적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

- 4개소 시·도별 4개년 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대상 중 국·공립 시설의 수는 전체 총 개소에서 170개소로, 종합재가센터는 10개소에서 70개소로 종사자수는 1,740명에서 11,200명으로 확충할 계획임
- 시설유형으로는 4개소 모두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구는 노숙인 시설, 장애인시설, 기타 공공센터 등을 추가로 포함하고, 경기도는 다함께돌봄센터, 기타 공공센터 등을 추가로 포함하며, 경남은 커뮤니티케어 센터 등을 추가로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음
- 민간시설 지원사업으로는 4개소 모두 경영컨설팅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3개 지역은 공통적으로 시설 안전점검 지원, 대체인력 지원을 추진 중에 있음

<표4-3>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4개소 비교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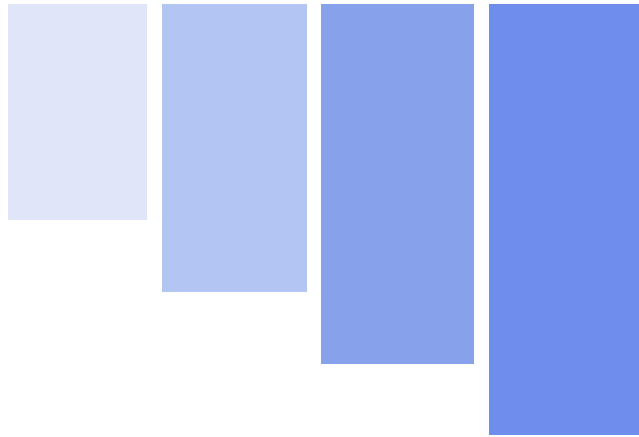
구분		국·공립 시설 등 운영				민간시설 지원사업
		국·공립 시설	종합 재가센터	종사자 수	시설유형	
서울	’19	5	4	550여명	어린이집, 요양시설 (’20년 이후)	① 경영 컨설팅
	(~’22)	20	25	3,900여명		
대구	’19	9	2	470여명	어린이집, 요양시설, 노숙인 시설, 장애인시설, 기타 공공센터 등	① 시설 안전점검 지원 ② 경영 컨설팅 ③ 대체인력지원 ④ 민관협력지원사업
	(~’22)	28	8	1,500여명		
경기	’19	10	2	330여명	어린이집, 요양시설, 다함께 돌봄, 기타 공공센터 등	① 시설 안전점검 지원 ② 경영 컨설팅 ③ 대체인력지원 ④ 인력수급지원
	(~’22)	97	29	4,300여명		
경남	’19	7	2	390여명	어린이집, 요양시설, 커뮤니티케어 센터 등	① 시설 안전점검 지원 ② 경영 컨설팅 ③ 대체인력지원 ④ 교육훈련지원
	(~’22)	25	8	1,500여명		
계	’19	31	10	1,740명	-	-
	(~’22)	170	70	11,200명		

자료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9.

• 시범사업 운영지역 4개소의 운영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4-4> 시범운영 지자체 운영 특징

구분	특징
서울	• 다양한 모델의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서비스원 종사자 임금향상 위한 추가재정 투입
대구	• 다양한 유형의 요양시설 운영(노인·노숙·정신장애 등) • 기존 문제시설을 수탁하여 운영방식 개선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 등 추진
경기	• 기존 재단법인에서 서비스원 별도 독립 • 다양한 유형의 공공센터 운영 • 다양한 기초 지자체와의 갈등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모델
경남	• 기초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통해 기존 국·공립 시설 위탁기간 종료 시 수탁기관을 서비스원으로 전환하여 재위탁 추진



■ 제5장 지역 의견수렴 및 FGI

1. 개요
2. 공급자 대상 설문조사
3.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4. FGI 조사 개요

제5장 지역 의견수렴 및 FGI

1. 개요

1) 조사 목적

- 지역민 의견 수렴은 전라남도 시·군 공무원, 사회서비스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음
- 본 조사의 목적은 전라남도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대한 공급자와 이용자간의 인식과 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적정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음

2) 조사 설계

- 조사 대상은 전라남도 시·군 공무원, 사회서비스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와 사회서비스 이용자(일반 시민 포함, 잠재적인 이용자)임
-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 시·군 공무원, 사회서비스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를 하나의 조사 집단으로 하고 사회서비스 수요자로서 시설 이용자 또는 경험자, 일반 도민을 또 하나의 조사 집단으로 나누고 집단별 설문 내용을 달리하여 조사를 실시함.
-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자 집단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에 초점을 두고, 이용자 집단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서비스 이용 의향 등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음
- 구체적인 표집은 시·군 공무원은 사회서비스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청 및 구별 비례할당표집을 하였고,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그리고 이용자의 경우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배경과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시설을 중심으로 FGI와 병행(연구 수행 당시 코로나 상황 고려)하여 실시하였음
- 실제 조사는 기관들을 방문하여 1:1 또는 1:다수의 FGI와 개별면접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면접이 불가함을 고려하여 웹설문 방식으로 진행함

<표5-1> 설문 조사 설계

구분	시·군 공무원,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이용자
조사대상	전라남도 시·군 공무원, 사회서비스 시설 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	
표본 틀	2020년 9월 말 기준 전라남도 22개 시군별 시·군 공무원,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	
표본 크기	유효표본 408명 (시·군공무원 79명 +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329명)	유효표본 473명
조사기간	2020.10.13. ~ 2020.10.30.	
자료수집방법	조사원 방문 1:1 개별면접조사	
조사 항목	리커트 4~5점 척도 및 명목 척도	

3) 조사 내용

- 조사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이며, 앞서 언급했듯이, 공급자인 시·군 공무원, 사회서비스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그리고 수요자인 사회서비스 이용자 두 집단을 구분하여 질문지를 구성함
- 먼저, 시·군 공무원, 사회서비스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는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평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인식과 의견,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기대효과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사업 영역,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의견에 대한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됨
-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는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전라남도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및 평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인식과 의견,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의견에 대한 개방형 문항임

4) 분석 방법

- 자료 분석을 위해 집단별로 부호화 작업을 실시하고, 기초통계량 산출을 통해 오류검토 작업을 실시, SPSS 통계 분석 Tool과 엑셀을 활용하여 분석함

2. 공급자 대상 설문조사

(1) 조사결과

1) 응답자 특성

<표5-2>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성별	남자	121	29.7%	29.7%
	여자	287	70.3%	100.0%
	계	408	100.0%	
연령	20대	40	9.8%	9.8%
	30대	92	22.5%	32.4%
	40대	134	32.8%	65.2%
	50대	123	30.1%	95.3%
	60세	19	4.7%	100.0%
	70세 이상	0	0.0%	100.0%
	계	408	100.0%	
응답자구분	도·시·군 공무원	80	19.6%	19.6%
	시설 대표자 및 운영자	88	21.6%	41.2%
	시설 종사자	240	58.8%	100.0%
	계	408	100.0%	
소속시설	도·시·군청	79	19.4%	19.4%
	아동 관련 시설	104	25.5%	44.9%
	노인 관련 시설	115	28.2%	73.0%
	장애인 관련 시설	35	8.6%	81.6%
	기타	75	18.4%	100.0%
	계	408	100.0%	
소속시설 형태	법인	181	44.4%	44.4%
	민간(개인)	84	20.6%	65.0%
	지방자치단체	96	23.5%	88.5%
	기타	47	11.5%	100.0%
	계	408	100.0%	

2) 전라남도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평가

① 전라남도 사회서비스 수준

- 현재 전라남도 사회서비스 수준에 대해 총 11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100점 만점 기준 평균 56.67점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의 처우 47.06점,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54.90점, 시민들의 체감도 54.95점 등의 순서로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복지정책의 수준 56.08점 역시 평균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전라남도 현 사회서비스 수준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1순위인 제공기관의 신뢰성 60.78점과 최하순위인 종사자의 처우 47.06의 차이는 13.72점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5-3> 전남 사회서비스 수준

(단위 : 점, 순위)

	5점 만점	100점 만점	순위
제공기관의 수	3.02	60.49	2
서비스 환경 및 품질	2.99	59.75	4
종사자의 처우	2.35	47.06	11
복지정책의 수준	2.80	56.08	7
시민들의 체감도	2.75	54.95	9
서비스 접근성	2.85	56.91	6
종사자의 역량 및 전문성	3.00	59.95	3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2.75	54.90	10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	2.77	55.49	8
복지자원 이용 수준	2.85	57.01	5
제공기관의 신뢰성	3.04	60.78	1
평균	2.83	56.67	



<그림5-1> 전남 사회서비스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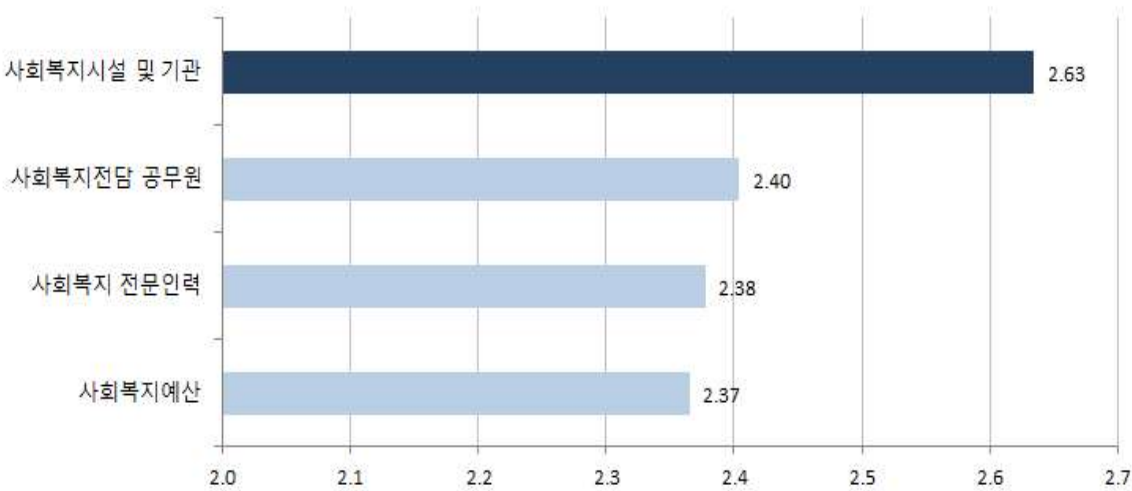
② 전라남도의 사회복지환경

- 현재 전라남도의 사회복지환경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4개 항목의 평균은 48.91점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예산 47.30점, 사회복지 전문인력 47.55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48.09점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음
-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52.70은 평균과 1.79점 밖에 차이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표5-4> 전남 사회복지환경

(단위 : 점, 순위)

	5점 만점	100점 만점	순위
사회복지예산	2.37	47.30	4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2.63	52.70	1
사회복지 전문인력	2.38	47.55	3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40	48.09	2
평균		48.91	



<그림5-2> 전남 사회복지환경

3)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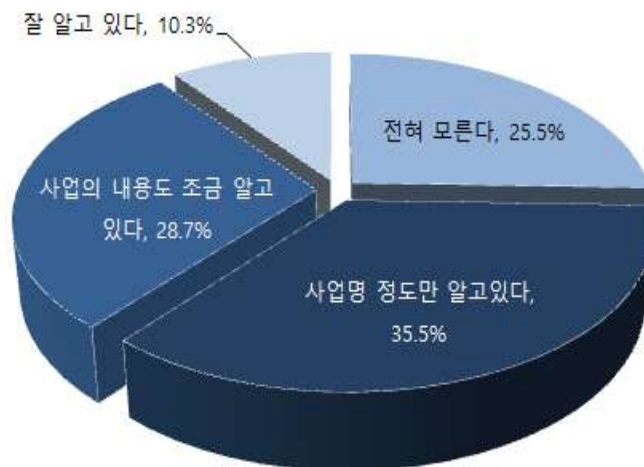
①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인지도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3%(4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음

<표5-5>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인지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모른다	104	25.5%	25.5%
사업명 정도만 알고 있다	145	35.5%	61.0%
사업의 내용도 조금 알고 있다	117	28.7%	89.7%
잘 알고 있다	42	10.3%	100.0%
계	408	100.0%	
시스템 결측값	0		
합계	408		



<그림5-3>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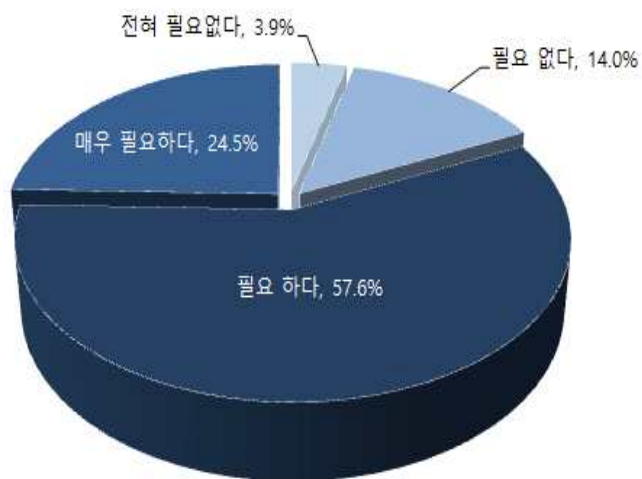
②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설립 필요성 및 이유

-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235명, 57.6%), 매우 필요하다(100명, 24.5%)의 높은 비율을 보이며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찬성 인원이 82.1%로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이 부각됨

<표5-6>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필요없다	16	3.9%	3.9%
필요 없다	57	14.0%	17.9%
필요 하다	235	57.6%	75.5%
매우 필요하다	100	24.5%	100.0%
계	408	100.0%	
시스템 결측값	0		
합계	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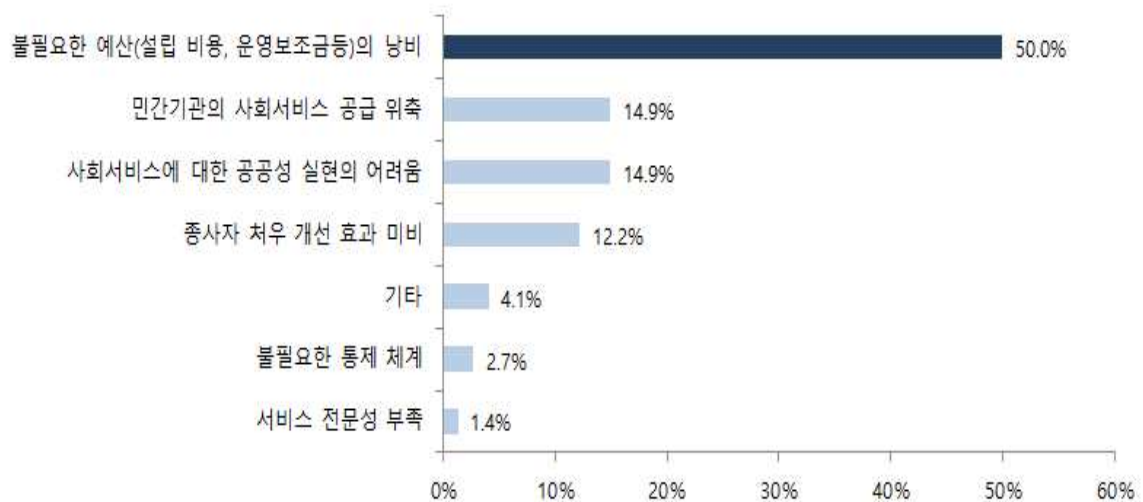
<그림5-4>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성

- 설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불필요한 예산(설립 비용, 운영보조금 등)의 낭비(37명, 50.0%)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현 기관들과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설립 비용, 운영보조금 등에 대한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5-7> 설립 필요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실현의 어려움	11	14.9%	14.9%
종사자 처우 개선 효과 미비	9	12.2%	27.0%
불필요한 예산(설립 비용, 운영보조금등)의 낭비	37	50.0%	77.0%
민간기관의 사회서비스 공급 위축	11	14.9%	91.9%
서비스 전문성 부족	1	1.4%	93.2%
불필요한 통제 체계	2	2.7%	95.9%
기타	3	4.1%	100.0%
계	74	100.0%	
시스템 결측값	334		
합계	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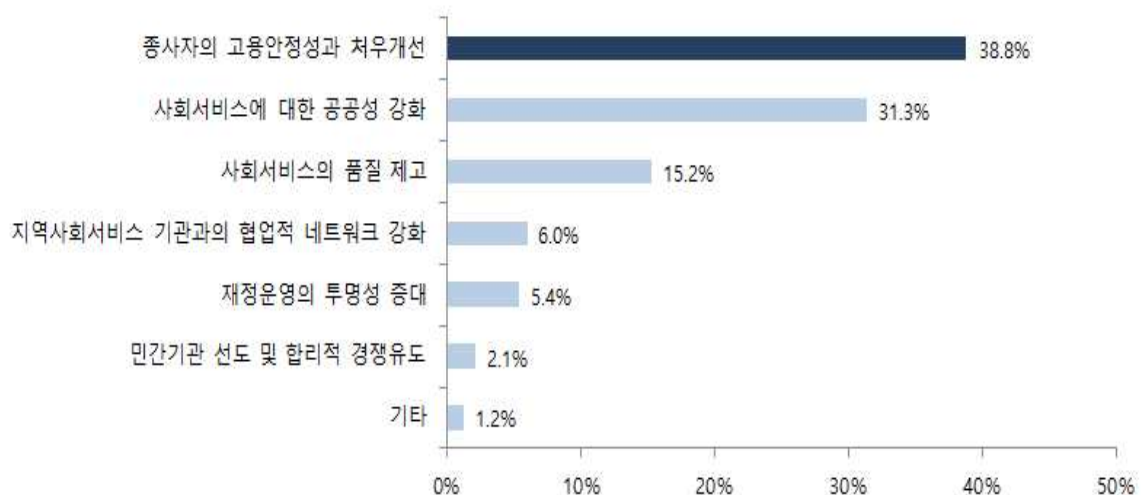
<그림5-5> 설립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 설립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종사자의 고용안정성과 처우 개선(130명, 38.8%),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강화(105명, 31.3%)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5-8> 설립 필요한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강화	105	31.3%	31.3%
종사자의 고용안정성과 처우개선	130	38.8%	70.1%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	51	15.2%	85.4%
재정운영의 투명성 증대	18	5.4%	90.7%
민간기관 선도 및 합리적 경쟁유도	7	2.1%	92.8%
지역사회서비스 기관과의 협업적 네트워크 강화	20	6.0%	98.8%
기타	4	1.2%	100.0%
계	335	100.0%	
시스템 결측값	73		
합계	408		



<그림5-6> 설립이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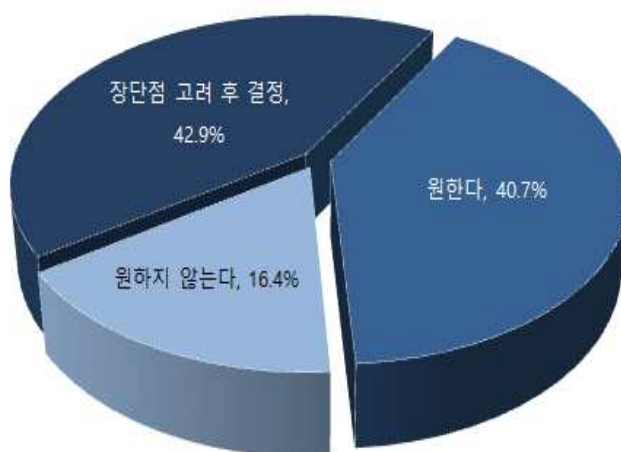
③ 전남사회서비스원에 소속 희망 여부 및 원하지 않는 이유

- 전남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질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장단점 고려 후 결정(175명, 42.9%), 원한다(166명, 40.7%), 원하지 않는다(67명, 16.4%)로 나타났으며, 원한다와 원하지 않는다는 차이는 24.3%로 소속되길 원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5-9> 사회서비스원 소속 희망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원한다	166	40.7%	40.7%
원하지 않는다	67	16.4%	57.1%
장단점 고려 후 결정	175	42.9%	100.0%
계	408	100.0%	
시스템 결측값	0		
합계	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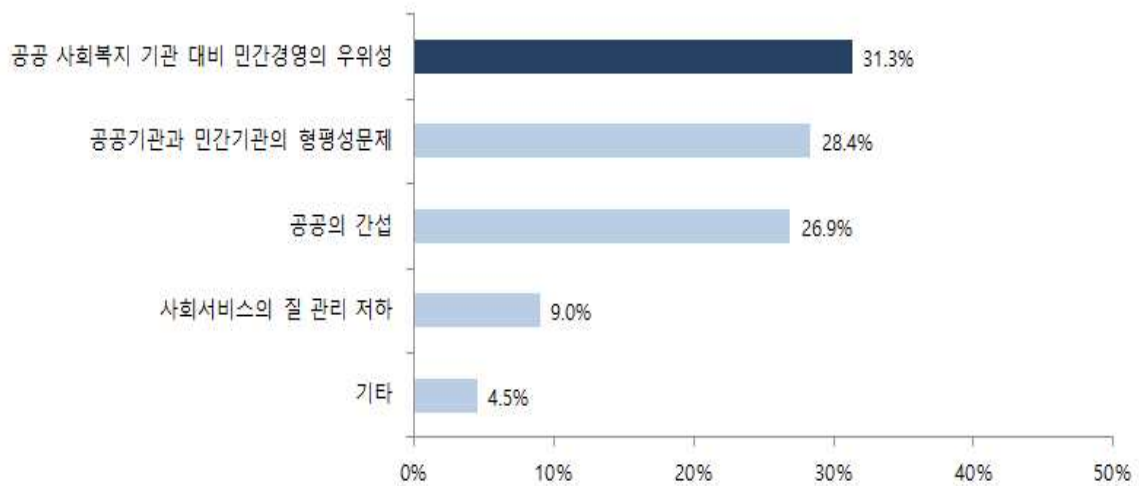
<그림5-7> 사회서비스원 소속 희망 여부

- 전남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공 사회복지 기관 대비 민간경영의 우위성(21명, 31.3%),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형평성문제(19명, 28.4%)등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원인이 다양하게 나타남

<표5-10> 소속 원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공공의 간섭	18	26.9%	26.9%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형평성문제	19	28.4%	55.2%
사회서비스의 질 관리 저하	6	9.0%	64.2%
공공 사회복지 기관 대비 민간경영의 우위성	21	31.3%	95.5%
기타	3	4.5%	100.0%
계	67	100.0%	
시스템 결측값	341		
합계	408		



<그림5-8> 전남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되길 원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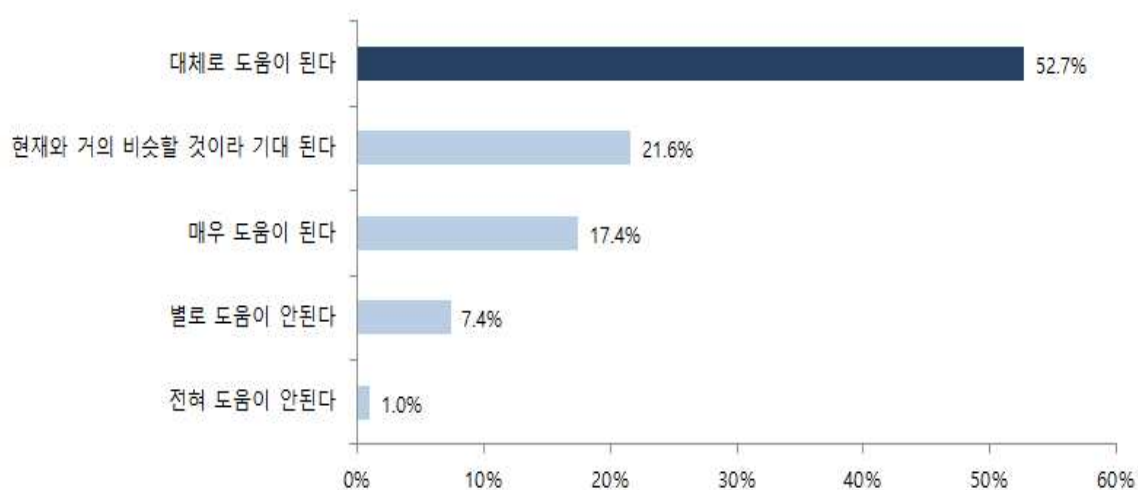
④ 전라남도 복지수준에 대한 영향

-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면 전라남도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체로 도움이 된다(215명, 52.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도움이 된다(70.1%)와 도움이 안된다(8.4%)의 차이는 61.7%로 긍정적인 반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5-11> 설립 시, 전남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의견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도움이 된다	71	17.4%	17.4%
대체로 도움이 된다	215	52.7%	70.1%
현재와 거의 비슷할 것이라 기대 된다	88	21.6%	91.7%
별로 도움이 안된다	30	7.4%	99.0%
전혀 도움이 안된다	4	1.0%	100.0%
계	408	100.0%	
시스템 결측값	0		
합계	408		



<그림5-9> 설립 시, 전남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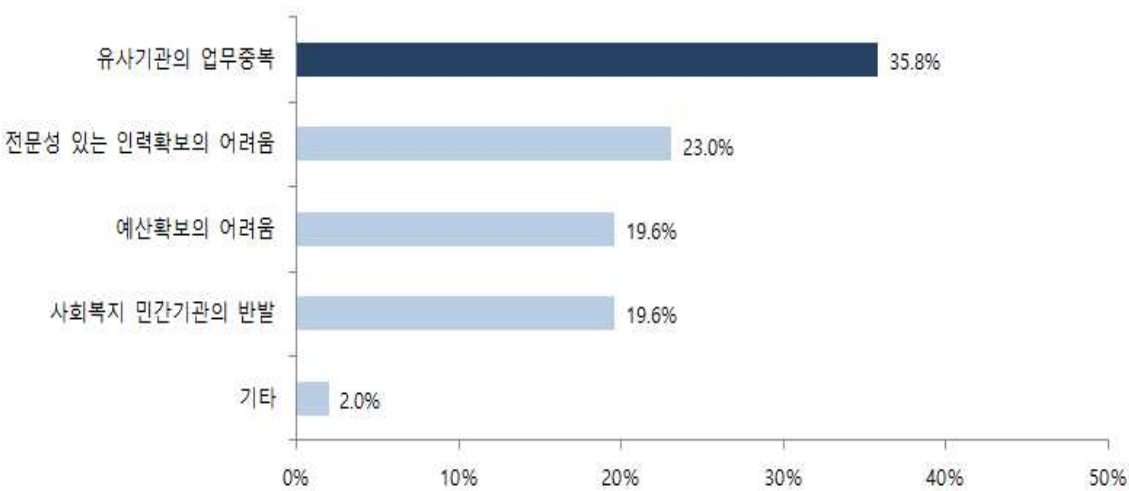
⑤ 가장 어려울 것 같은 요소

-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시,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사기관의 업무중복(146명, 35.8%)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업무중복에 대한 우려심이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5-12> 설립 시, 어려울 것 같은 요소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사회복지 민간기관의 반발	80	19.6%	19.6%
전문성 있는 인력확보의 어려움	94	23.0%	42.6%
유사기관의 업무중복	146	35.8%	78.4%
예산확보의 어려움	80	19.6%	98.0%
기타	8	2.0%	100.0%
계	408	100.0%	
시스템 결측값	0		
합계	408		



<그림5-10> 설립 시, 어려울 것 같은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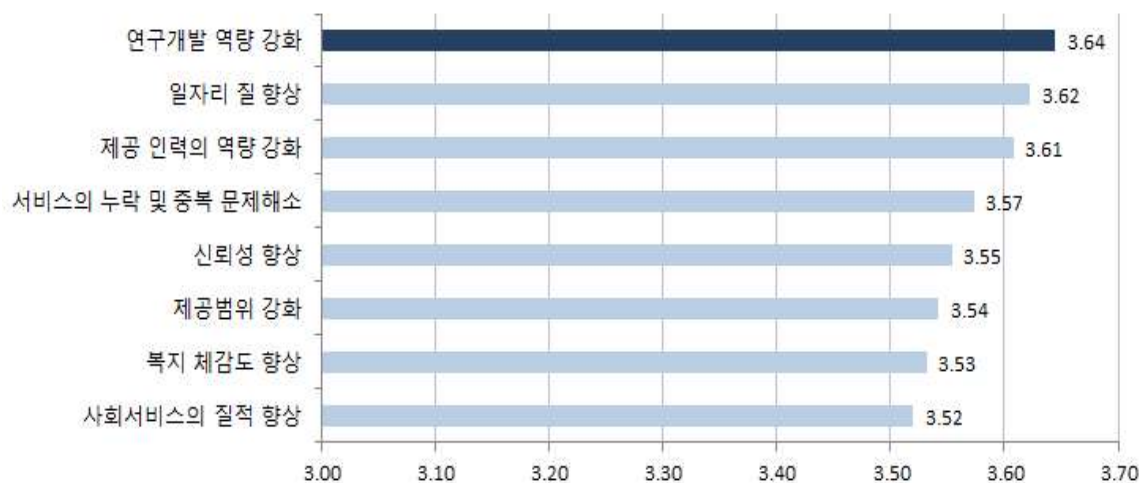
⑥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전남도민의 복지 향상에 관한 영향

-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시, 전남도민의 복지 향상에 대해 8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총 평균은 71.49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역량 강화 72.89점, 일자리 질 향상 72.45점, 제공인력의 역량 강화 72.16점이 평균보다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가장 낮은 점수인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 70.39점과 복지 체감도 향상 70.64점은 평균과 1.1~0.85점 밖에 차이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 즉,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전남도민의 복지 향상에 관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을 파악 할 수 있음

<표5-13> 전남도민의 복지 향상에 관한 영향

(단위 : 명, %)

구분	5점 만점	100점 만점	순위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	3.52	70.39	8
신뢰성 향상	3.55	71.08	5
제공범위 강화	3.54	70.83	6
일자리 질 향상	3.62	72.45	2
제공인력의 역량 강화	3.61	72.16	3
연구개발 역량 강화	3.64	72.89	1
복지 체감도 향상	3.53	70.64	7
서비스의 누락 및 중복 문제해소	3.57	71.47	4
평균		71.49	



<그림5-11> 전남도민의 복지 향상에 관한 영향

⑦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수행해야 할 기능 및 역할

-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면 수행해야 할 기능(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82.79점, 사각지대 틈새 보완 및 확장된 서비스 제공 80.59점으로 나타나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의 배경과 목적(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사회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음

<표5-14> 수행해야 할 기능 및 역할

(단위 : 명, %)

구분	5점 만점	100점 만점	순위
국·공립시설 위탁받아 직접 제공	3.73	74.56	11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	3.86	77.16	7
제공기관 컨설팅 지원	3.80	75.93	10
표준 운영모델 개발 제공	3.85	77.06	8
민간 제공기관 운영지원	3.91	78.28	4
질 제고 관련 연구	3.92	78.33	3
관련 계획 수립 지원	3.84	76.81	9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4.14	82.79	1
사회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사업	3.91	78.28	4
재가서비스 구축·연계사업	3.91	78.14	6
사각지대 틈새 보완, 확장된 서비스 제공	4.03	80.59	2
평균	3.90	77.99	



<그림5-12> 수행해야 할 기능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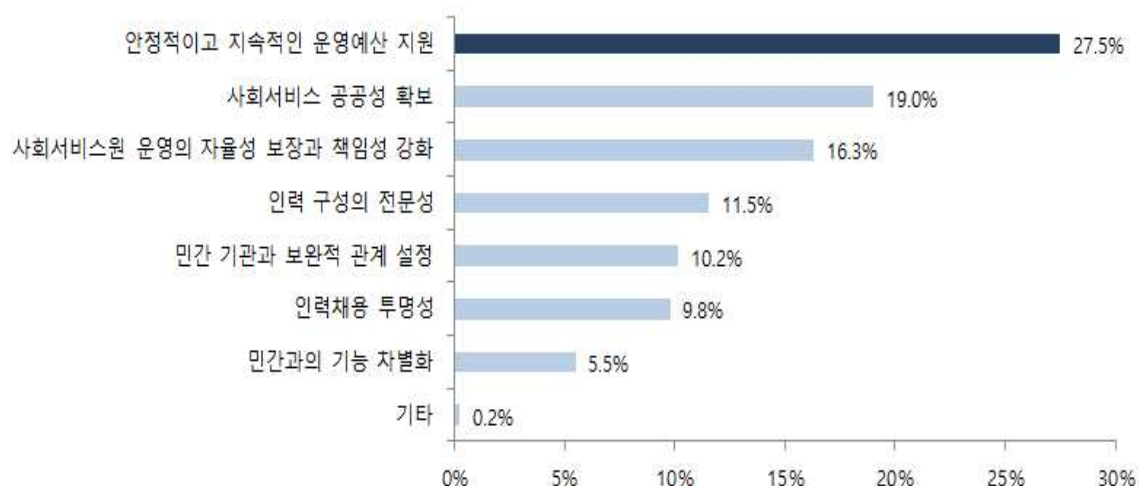
⑧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 전제조건

-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예산 지원(224명, 27.5%)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155명, 19.0%),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책임성 강화(133명, 16.3%)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5-15>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 전제조건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예산 지원	224	27.5%	27.5%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155	19.0%	46.4%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책임성 강화	133	16.3%	62.7%
인력 구성의 전문성	94	11.5%	74.3%
인력채용 투명성	80	9.8%	84.1%
민간 기관과 보완적 관계 설정	83	10.2%	94.2%
민간과의 기능 차별화	45	5.5%	99.8%
기타	2	0.2%	100.0%
계	816	100.0%	
시스템 결측값	0		
합계	816		



<그림5-13>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 전제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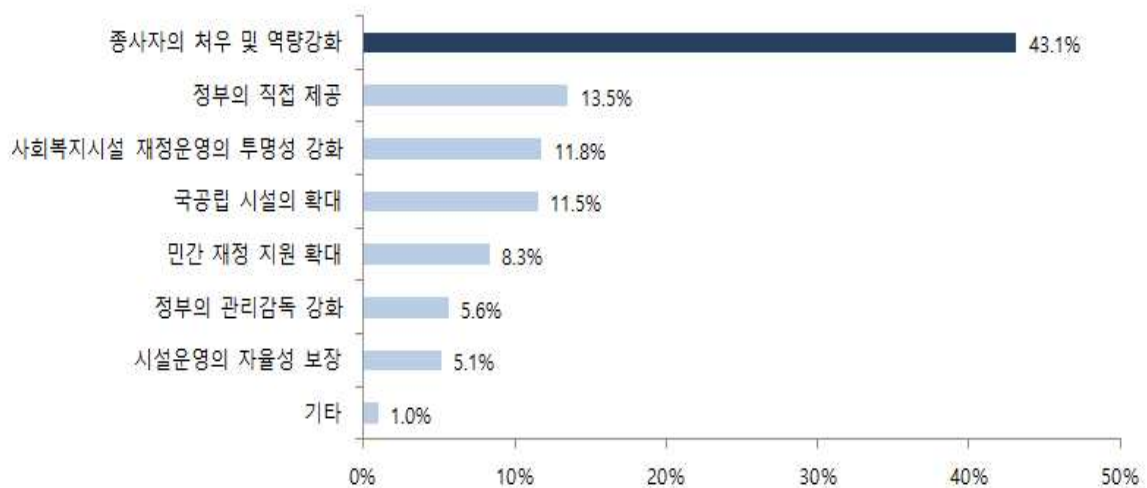
⑨ 사회서비스의 수준 향상 중요 요소

-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강화(176명, 43.1%)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종사자 처우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

<표5-16> 수준 향상을 위한 중요 요소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정부의 직접 제공	55	13.5%	13.5%
국공립 시설의 확대	47	11.5%	25.0%
민간 재정 지원 확대	34	8.3%	33.3%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23	5.6%	39.0%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강화	176	43.1%	82.1%
시설운영의 자율성 보장	21	5.1%	87.3%
사회복지시설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48	11.8%	99.0%
기타	4	1.0%	100.0%
계	408	100.0%	
시스템 결측값	0		
합계	408		



<그림5-14> 수준 향상을 위한 중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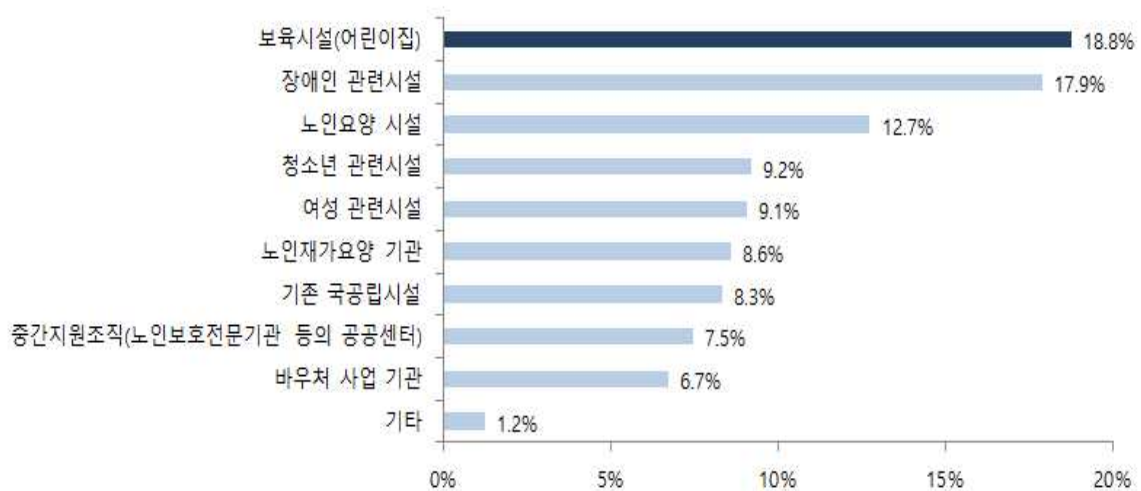
⑩ 포함시켜야 할 사회복지 기관

- 전남사회서비스에 포함시켜야 할 사회복지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노인관련 시설(재가+요양, 174명, 21.3%), 보육시설(153명, 18.8%), 장애인 관련시설(146명, 17.9%), 등의 순서로 나타남

<표5-17> 포함해야하는 사회복지 기관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보육 관련시설(어린이집)	153	18.8%	18.8%
청소년 관련시설	75	9.2%	27.9%
여성 관련시설	74	9.1%	37.0%
노인재가요양 기관	70	8.6%	45.6%
노인요양 시설	104	12.7%	58.3%
장애인 관련시설	146	17.9%	76.2%
기존 국공립시설	68	8.3%	84.6%
중간지원조직(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공공센터)	61	7.5%	92.0%
바우처 사업 기관	55	6.7%	98.8%
기타	10	1.2%	100.0%
계	816	100.0%	
시스템 결측값	0		
합계	816		



<그림5-15> 포함해야하는 사회복지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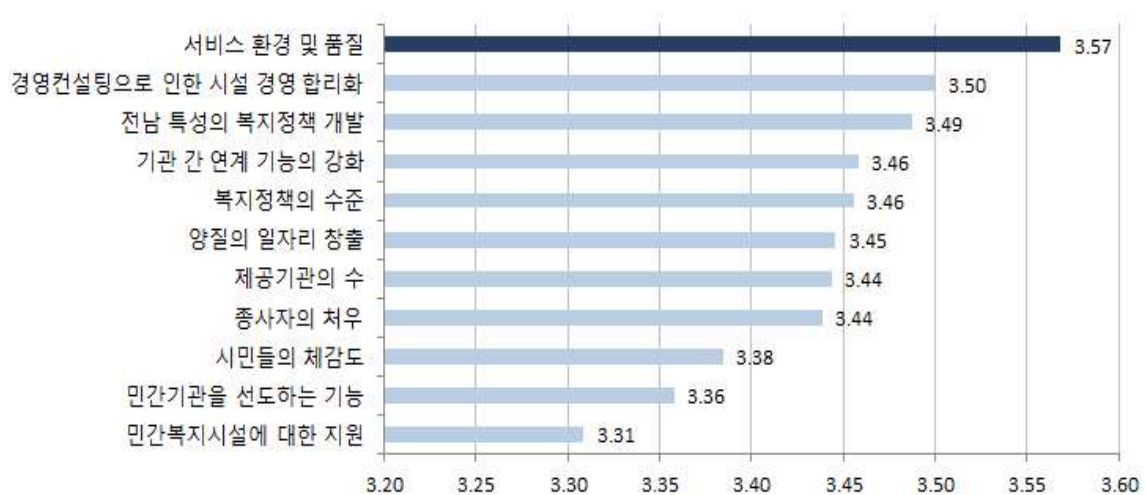
⑪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예상되는 효과

-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예상되는 효과 11개 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총 평균은 68.82점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환경 및 품질 71.37점, 경영컨설팅으로 인한 시설 경영 합리화 70.00점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서비스 환경 및 품질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음

<표5-18> 설립 시, 예상되는 효과

(단위 : 명, %)

구분	5점 만점	100점 만점	순위
제공기관의 수	3.44	68.87	7
서비스 환경 및 품질	3.57	71.37	1
종사자의 처우	3.44	68.77	8
복지정책의 수준	3.46	69.12	5
시민들의 체감도	3.38	67.70	9
기관 간 연계 기능의 강화	3.46	69.17	4
전남 특성의 복지정책 개발	3.49	69.75	3
경영컨설팅으로 인한 시설 경영 합리화	3.50	70.00	2
민간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3.31	66.18	11
양질의 일자리 창출	3.45	68.92	6
민간기관을 선도하는 기능	3.36	67.16	10
평균		68.82	



<그림5-16> 설립 시, 예상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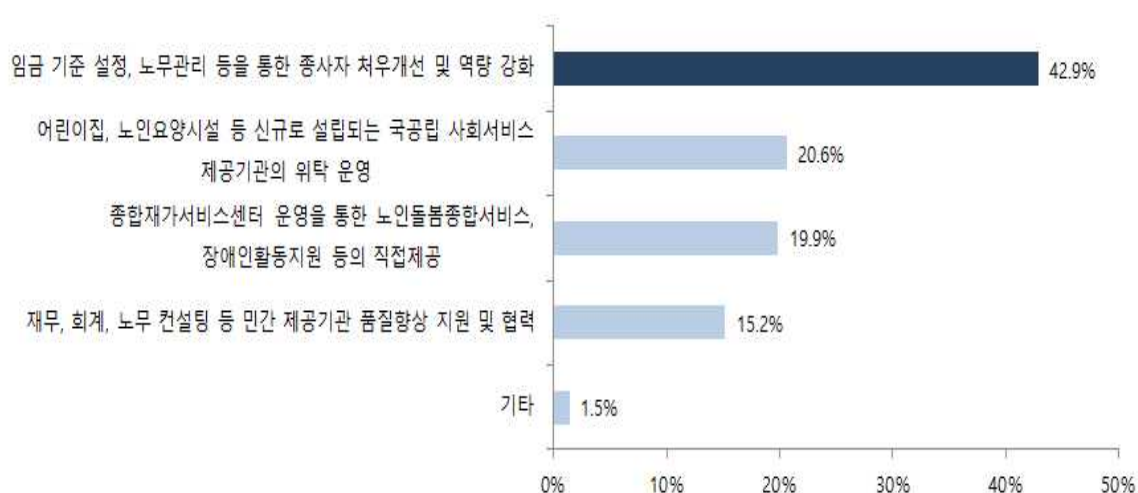
⑫ 사회서비스원의 우선적 역할

- 전남사회서비스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임금 기준 설정, 노무관리 등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175명, 42.9%)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 또한, 종사자의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5-19>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우선적 역할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신규로 설립되는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위탁 운영	84	20.6%	20.6%
종합재가서비스센터 운영을 통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직접제공	81	19.9%	40.4%
재무, 회계, 노무 컨설팅 등 민간 제공기관 품질향상 지원 및 협력	62	15.2%	55.6%
임금 기준 설정, 노무관리 등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175	42.9%	98.5%
기타	6	1.5%	100.0%
계	408	100.0%	
시스템 결측값	0		
합계	408		



<그림5-17>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우선적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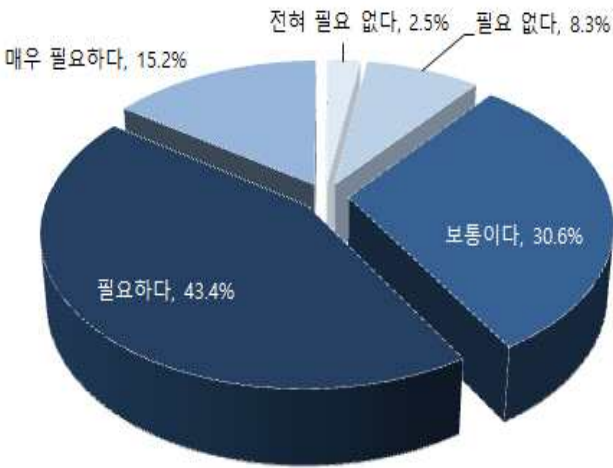
⑬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직접 고용

-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직접 고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239명, 58.6%)라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과 연계된 것을 알 수 있음

<표5-20> 종사자 직접 고용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필요 없다	10	2.5%	2.5%
필요 없다	34	8.3%	10.8%
보통이다	125	30.6%	41.4%
필요하다	177	43.4%	84.8%
매우 필요하다	62	15.2%	100.0%
계	408	100.0%	
시스템 결측값	0		
합계	408		



<그림5-18> 종사자 직접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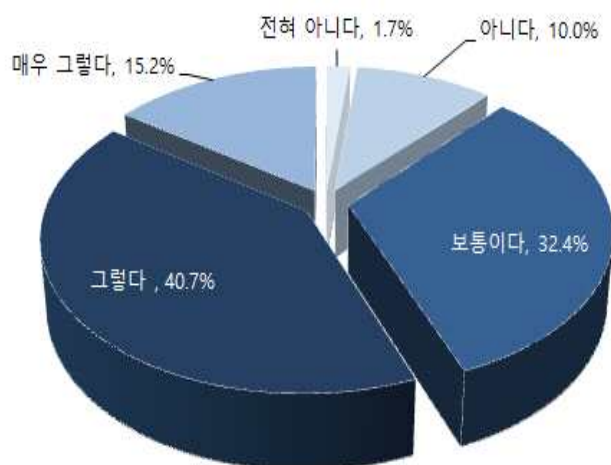
⑭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공공성 강화

-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간의존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그렇다(228명, 55.9%)가 아니다(48명, 11.7%)보다 44.2%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하여금 공공성 강화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5-21>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공공성 강화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아니다	7	1.7%	1.7%
아니다	41	10.0%	11.8%
보통이다	132	32.4%	44.1%
그렇다	166	40.7%	84.8%
매우 그렇다	62	15.2%	100.0%
계	408	100.0%	
시스템 결측값	0		
합계	408		



<그림5-19>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공공성 강화

3.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1) 조사결과

1) 응답자 특성 분석 결과

<표5-22> 성별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성별	남자	196	41.4%	41.4%
	여자	277	58.6%	100.0%
	계	473	100.0%	
연령	10대	2	0.4%	0.4%
	20대	35	7.4%	7.8%
	30대	98	20.7%	28.5%
	40대	102	21.6%	50.1%
	50대	181	38.3%	88.4%
	60세	55	11.6%	100.0%
	70세 이상	0	0.0%	100.0%
	계	473	100.0%	
응답자구분	시설 이용자 및 경험자	163	34.5%	34.5%
	일반시민	310	65.5%	100.0%
	계	473	100.0%	
이용시설 (시설 이용자 및 경험자)	아동 관련 시설	51	31.3%	31.3%
	노인 관련 시설	80	49.1%	80.4%
	장애인 관련 시설	23	14.1%	94.5%
	기타	9	5.5%	100.0%
	계	163	100.0%	

2)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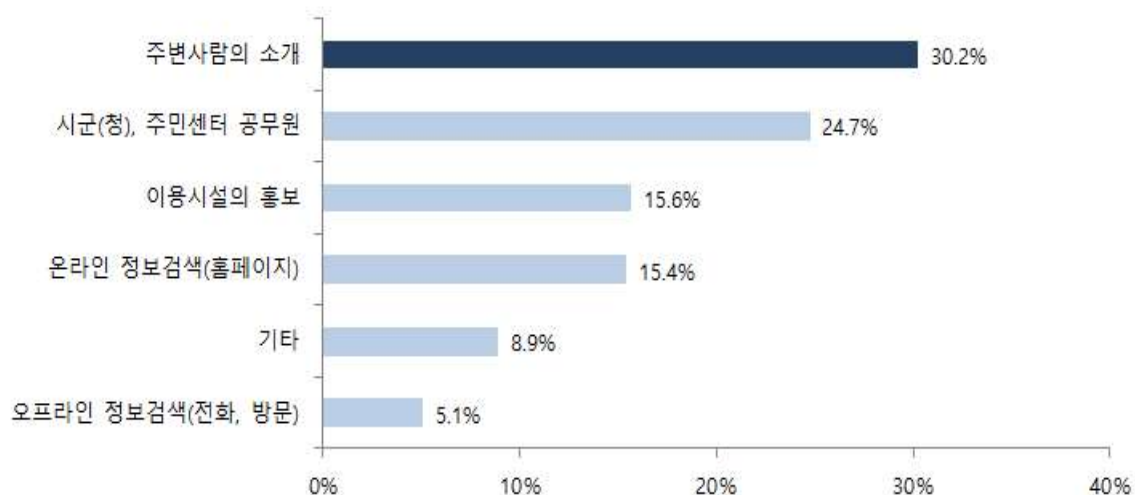
① 이용 중인 시설 알게 된 계기

-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알게 된 계기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주변사람의 소개(143명, 30.2%), 시군(청), 주민센터 공무원(117명, 24.7%)등의 순서로 다른 사람을 통해 시설을 알게 된 계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표5-23> 알게 된 계기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시군(청), 주민센터 공무원	117	24.7%	24.7%
이용시설의 홍보	74	15.6%	40.4%
온라인 정보검색(홈페이지)	73	15.4%	55.8%
오프라인 정보검색(전화, 방문)	24	5.1%	60.9%
주변사람의 소개	143	30.2%	91.1%
기타	42	8.9%	100.0%
계	473	100.0%	
시스템 결측값	0		
합계	473		



<그림5-20> 알게 된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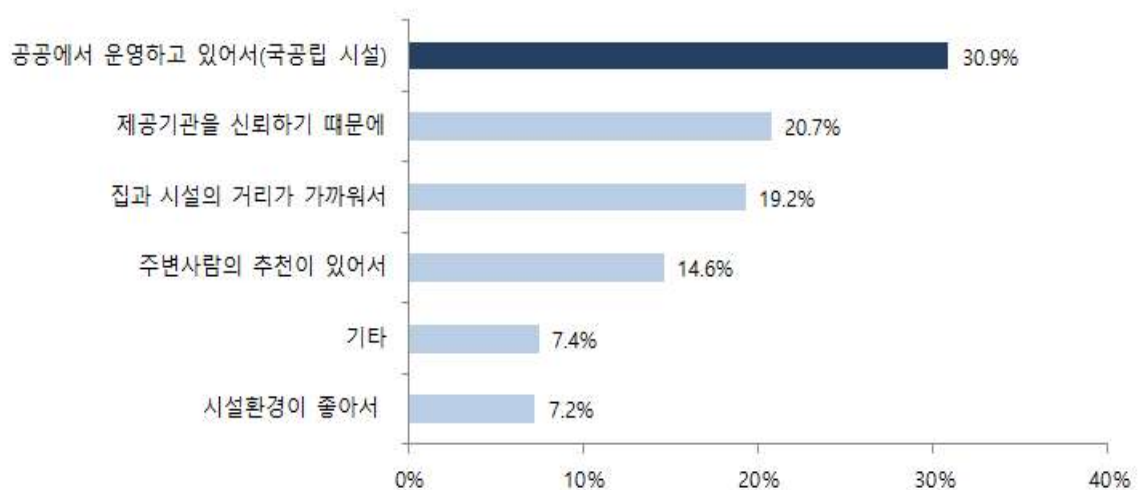
② 이용 중인 시설 선택한 이유

-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어서(국·공립 시설) (146명, 30.9%)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공공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5-24> 이용 중인 시설 선택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어서(국·공립 시설)	146	30.9%	30.9%
집과 시설의 거리가 가까워서	91	19.2%	50.1%
제공기관을 신뢰하기 때문에	98	20.7%	70.8%
시설환경이 좋아서	34	7.2%	78.0%
주변사람의 추천이 있어서	69	14.6%	92.6%
기타	35	7.4%	100.0%
계	473	100.0%	
시스템 결측값	0		
합계	473		



<그림5-21> 이용 중인 시설 선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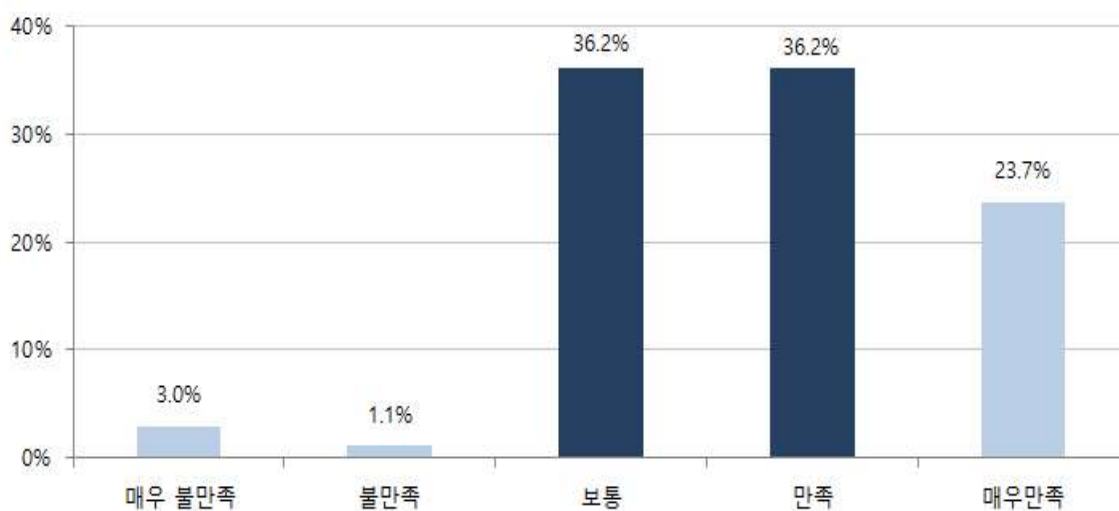
③ 이용 중인 시설 만족도 및 이유

-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만족(283명, 59.9%)이 불만족(19명, 4.1%)보다 55.8%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이용 중인 시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5-25> 이용 중인 시설의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불만족	14	3.0%	3.0%
불만족	5	1.1%	4.0%
보통	171	36.2%	40.2%
만족	171	36.2%	76.3%
매우만족	112	23.7%	100.0%
계	473	100.0%	
시스템 결측값	0		
합계	473		



<그림5-22> 이용 중인 시설의 만족도

-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불만족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서비스 신청과 이용절차가 어려워서(4명, 21.1%), 제공기관의 시설과 환경이 쾌적하지 않아서(3명, 15.8%)등의 불만족 이유 순서를 보이며 신청 및 절차와 시설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5-26> 불만족하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서비스 신청과 이용절차가 어려워서	4	21.1%	21.1%
제공인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	5.3%	26.3%
제공기관의 시설과 환경이 쾌적하지 않아서	3	15.8%	42.1%
받고 있는 서비스(가격, 시간 등)가 좋지 않아서	2	10.5%	52.6%
이용시간과 기간이 너무 짧아서	2	10.5%	63.2%
불편사항을 잘 들어주지 않아서	2	10.5%	73.7%
기타	5	26.3%	100.0%
계	19	100.0%	
시스템 결측값	454		
합계	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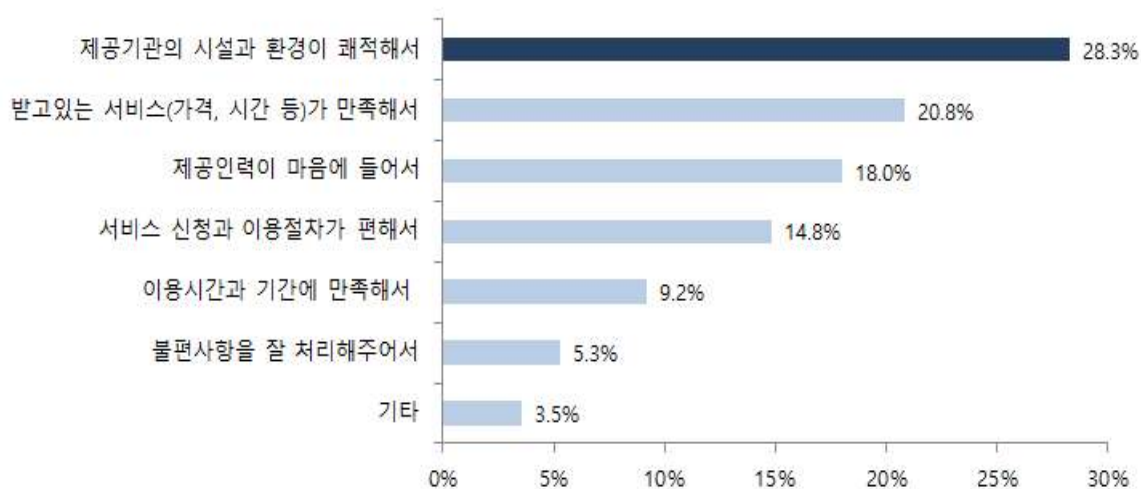
<그림5-23> 불만족하는 이유

-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만족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제공기관의 시설과 환경이 쾌적해서(80명, 28.3%)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받고 있는 서비스(가격, 시간 등)에 만족해서(59명, 20.8%)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음

<표5-27> 만족하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서비스 신청과 이용절차가 편해서	42	14.8%	14.8%
제공인력이 마음에 들어서	51	18.0%	32.9%
제공기관의 시설과 환경이 쾌적해서	80	28.3%	61.1%
받고 있는 서비스(가격, 시간 등)에 만족해서	59	20.8%	82.0%
이용시간과 기간에 만족해서	26	9.2%	91.2%
불편사항을 잘 처리해주어서	15	5.3%	96.5%
기타	10	3.5%	100.0%
계	283	100.0%	
시스템 결측값	190		
합계	473		



<그림5-24> 만족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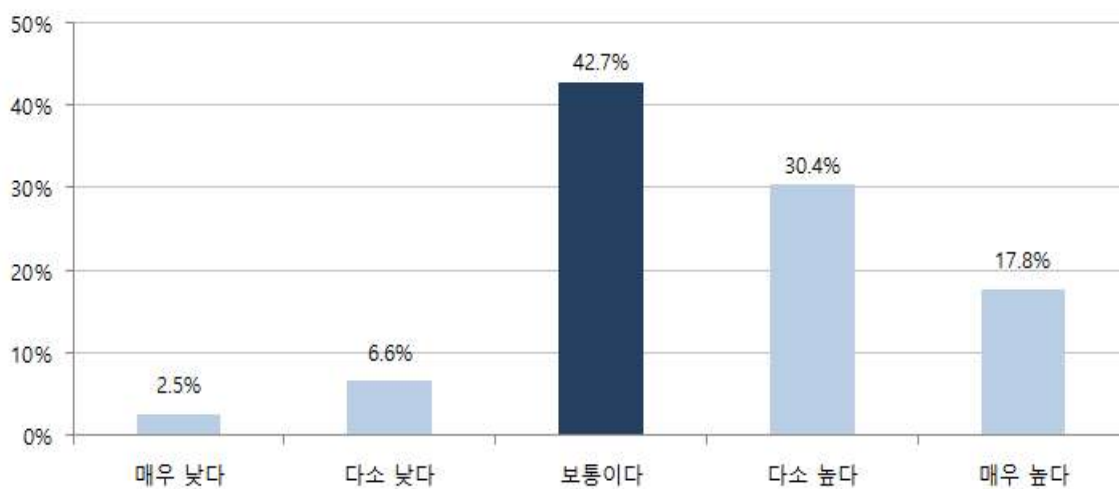
④ 제공기관 및 시설 신뢰도

- 현재 거주지역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시설에 대한 신뢰수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높다(228명, 48.2%), 낮다(43명, 9.1%)를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5-28> 제공기관 및 시설 신뢰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낮다	12	2.5%	2.5%
다소 낮다	31	6.6%	9.1%
보통이다	202	42.7%	51.8%
다소 높다	144	30.4%	82.2%
매우 높다	84	17.8%	100.0%
계	473	100.0%	
시스템 결측값	0		
합계	473		



<그림5-25> 제공기관 및 시설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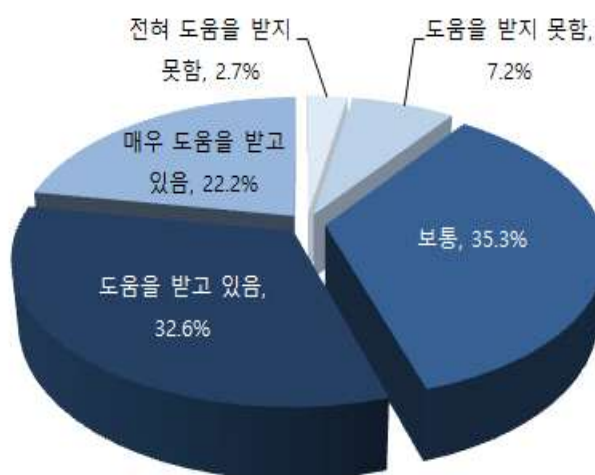
⑤ 복지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 현재 거주 지역에서 제공되는 복지가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신뢰 수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움을 받고 있음(259명, 54.8%), 도움을 받지 못함(47명, 9.9%)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생활에 다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남

<표5-29> 복지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함	13	2.7%	2.7%
도움을 받지 못함	34	7.2%	9.9%
보통	167	35.3%	45.2%
도움을 받고 있음	154	32.6%	77.8%
매우 도움을 받고 있음	105	22.2%	100.0%
계	473	100.0%	
시스템 결측값	0		
합계	473		



<그림5-26> 복지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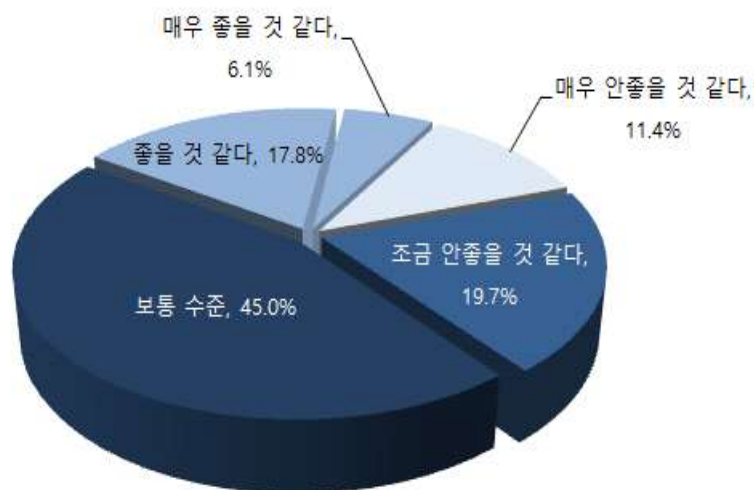
⑥ 제공인력 처우에 대한 생각

- 이용하는 사회서비스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인력(보육교사,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에 대해 분석한 결과 조금 안 좋을 것 같다(147명, 31.1%), 좋을 것 같다(113명, 23.9%)로 제공인력 처우에 대해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것을 알 수 있음

<표5-30> 제공인력 처우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안 좋을 것 같다	54	11.4%	11.4%
조금 안 좋을 것 같다	93	19.7%	31.1%
보통 수준	213	45.0%	76.1%
좋을 것 같다	84	17.8%	93.9%
매우 좋을 것 같다	29	6.1%	100.0%
계	473	100.0%	
시스템 결측값	0		
합계	473		



<그림5-27> 제공인력 처우에 대한 생각

3)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인식과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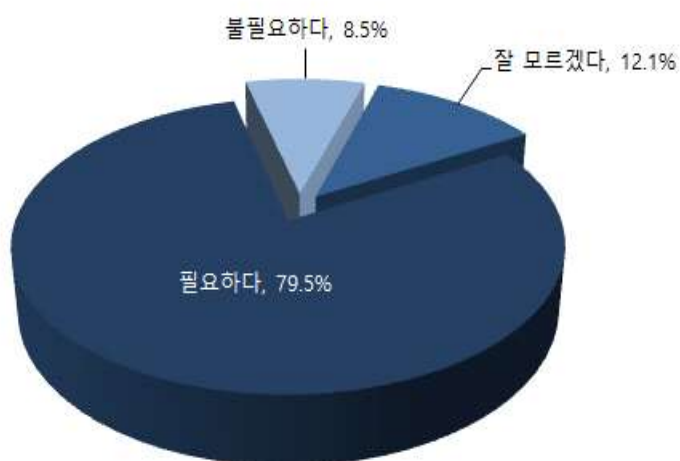
①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도 및 이유

- 전남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필요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376명, 79.5%)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5-31>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필요하다	376	79.5%	79.5%
불필요하다	40	8.5%	87.9%
잘 모르겠다	57	12.1%	100.0%
계	473	100.0%	
시스템 결측값	0		
합계	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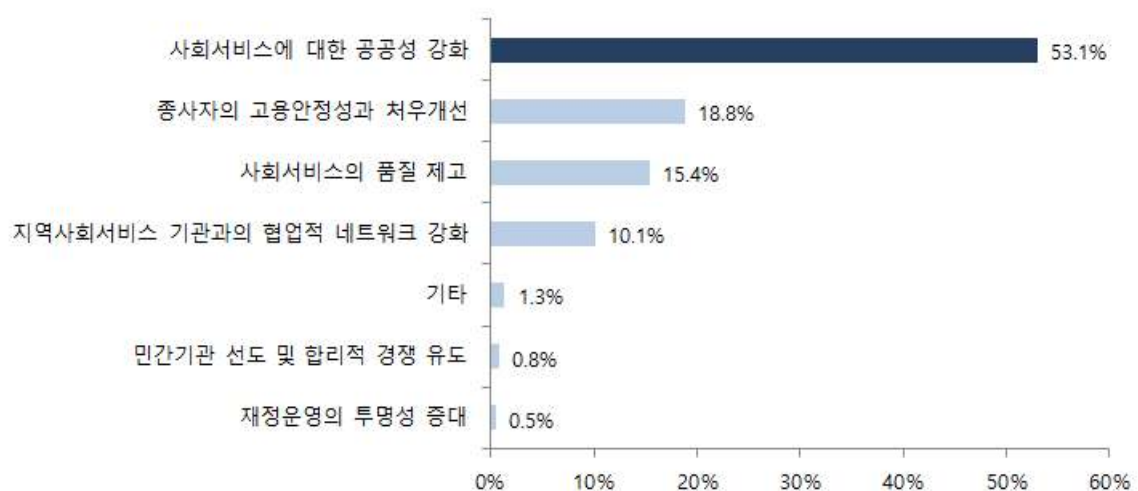
<그림5-28>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도

- 전남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강화(200명, 53.1%)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용 중인 시설 선택에 있어서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높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5-32> 설립이 필요한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강화	200	53.1%	53.1%
종사자의 고용안정성과 처우개선	71	18.8%	71.9%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	58	15.4%	87.3%
재정운영의 투명성 증대	2	0.5%	87.8%
민간기관 선도 및 합리적 경쟁 유도	3	0.8%	88.6%
지역사회서비스 기관과의 협업적 네트워크 강화	38	10.1%	98.7%
기타	5	1.3%	100.0%
계	377	100.0%	
시스템 결측값	96		
합계	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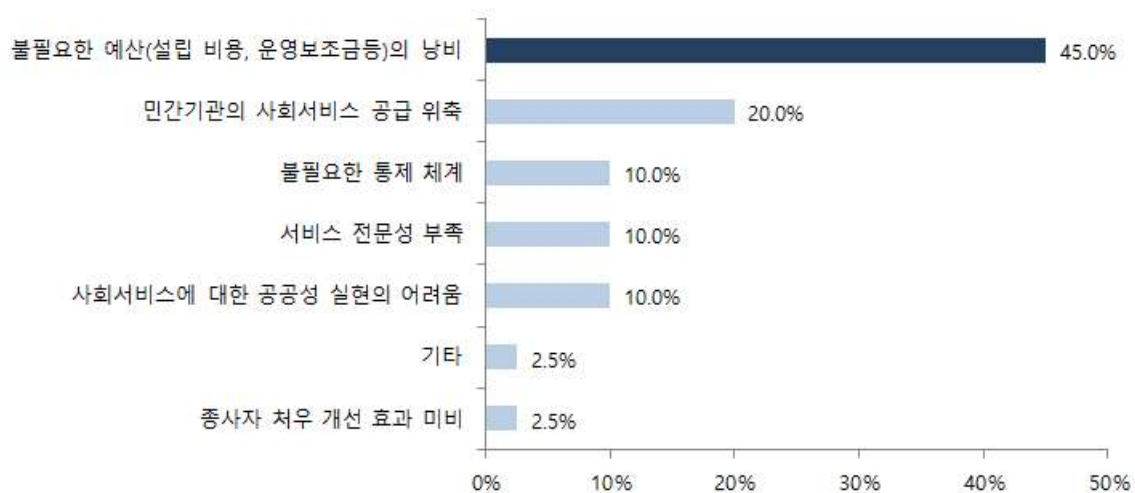
<그림5-29> 설립이 필요한 이유

- 전남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불필요한 예산(설립 비용, 운영보조금 등)의 낭비(18명, 45.0%)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5-33> 설립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실현의 어려움	4	10.0%	10.0%
종사자 처우 개선 효과 미비	1	2.5%	12.5%
불필요한 예산(설립 비용, 운영보조금 등)의 낭비	18	45.0%	57.5%
민간기관의 사회서비스 공급 위축	8	20.0%	77.5%
서비스 전문성 부족	4	10.0%	87.5%
불필요한 통제 체계	4	10.0%	97.5%
기타	1	2.5%	100.0%
계	40	100.0%	
시스템 결측값	433		
합계	473		



<그림5-30> 설립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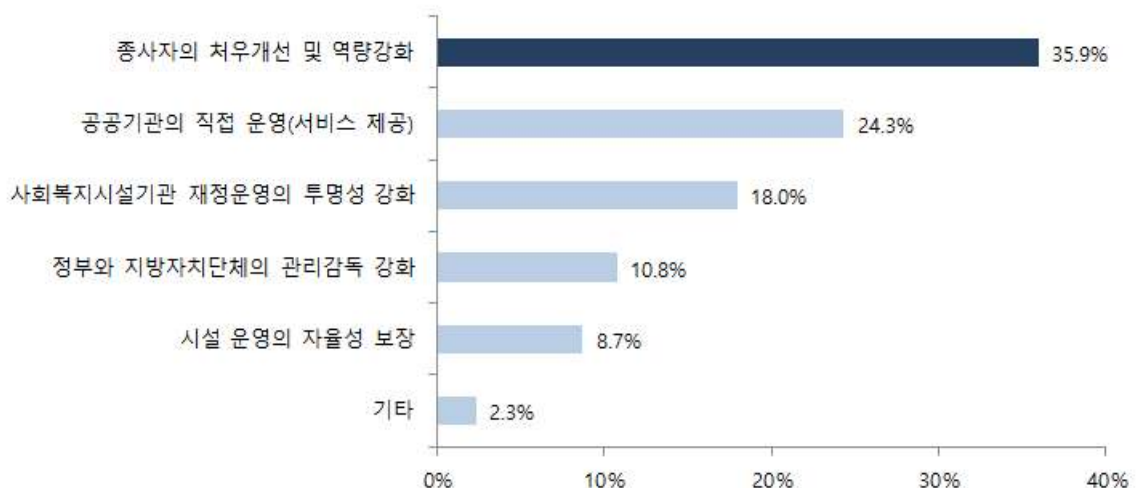
② 사회서비스원 만족도 향상 요소

- 사회서비스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분석한 결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170명, 35.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공공기관의 직접 운영(서비스 제공) (115명, 24.3%)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설립이 필요한 이유에서 공공성강화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만족도 향상 요소 또한 공공기관의 직접운영(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음

<표5-34> 사회서비스원 만족도 향상 요소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공공기관의 직접 운영(서비스 제공)	115	24.3%	24.3%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170	35.9%	60.3%
시설 운영의 자율성 보장	41	8.7%	68.9%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51	10.8%	79.7%
사회복지시설기관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85	18.0%	97.7%
기타	11	2.3%	100.0%
계	473	100.0%	
시스템 결측값	0		
합계	473		



<그림5-31> 사회서비스원 만족도 향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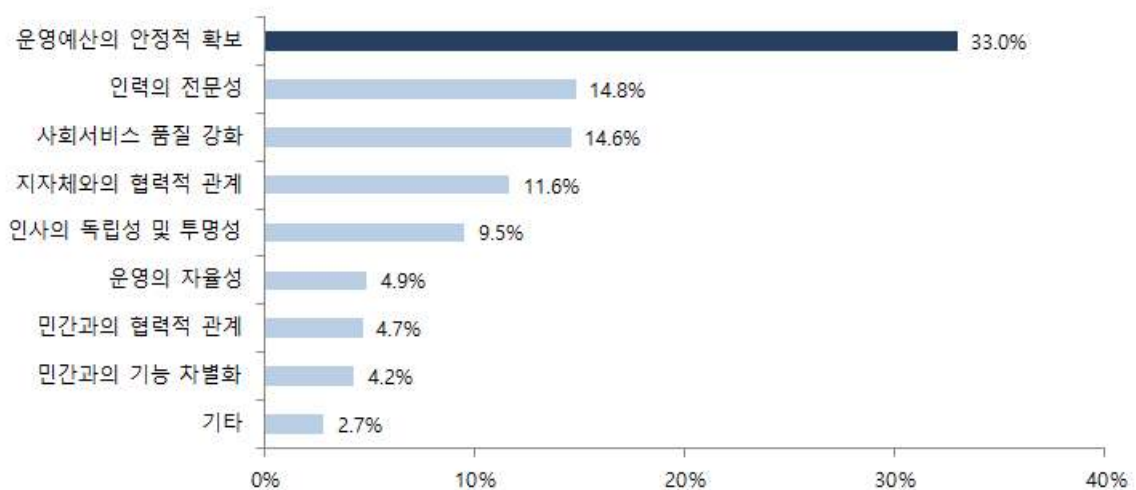
③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 위한 사항

-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 운영예산의 안정적 확보(156명, 33.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인력의 전문성(70명, 14.8%), 사회서비스 품질 강화(69명, 14.6%)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표5-35>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 위한 사항

(단위 :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운영예산의 안정적 확보	156	33.0%	33.0%
지자체와의 협력적 관계	55	11.6%	44.6%
인사의 독립성 및 투명성	45	9.5%	54.1%
운영의 자율성	23	4.9%	59.0%
인력의 전문성	70	14.8%	73.8%
민간과의 기능 차별화	20	4.2%	78.0%
민간과의 협력적 관계	22	4.7%	82.7%
사회서비스 품질 강화	69	14.6%	97.3%
기타	13	2.7%	100.0%
계	473	100.0%	
시스템 결측값	0		
합계	473		



<그림5-32>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 위한 사항

4. FGI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 도내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의견수렴

(2) 조사방법 및 범위

1) 조사 대상

-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 전라남도청 사회복지과에서 추천받은 50인 내에서 진행

2) 조사 방법

- 대면 설문조사
 - 조사 시작단계, FGI(초점집단 심층면접) 연구참여자 대상 분야별 집단 인터뷰 일정 계획
 - 지역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분야별 대상자에 대한 FGI 시행의 현실적 어려움 발생
 - 개인별 대면 인터뷰 및 안전수칙 준수 아래 3인 이하 FGI 진행 이후 의견 취합

3) 조사 기간

- 2020년 10월 5일(월) ~ 11월 20일(금)

4) 조사 내용

-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평가
-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인식
- 전라남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및 만족도
-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의견
- 전라남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등

(3) 인터뷰 진행

<표 5-36> 분야별 FGI 진행 과정

회차	분야	지역	참여자	참여인원
1	노인복지시설	여수	시설장 및 종사원	2명
2	장애인복지시설	순천	시설장	1명
3	노숙인시설	순천	시설장	1명
4	종합사회복지시설	순천	종사원	1명
5	어린이집	여수	시설장 및 종사원	4명
6	어린이집	나주	시설장	1명
7	노인복지시설	목포	시설장 및 종사원	3명
8	종합사회복지시설	순천	종사원	2명
9	종합사회복지시설	목포	종사원	1명
10	장기요양시설	화순	시설장	3명
11	어린이집	화순	시설장	1명
12	서부권역 공청회	목포	지역 내 관계자	
13	동부권역 공청회	순천	지역 내 관계자	
14	통합 공청회	장흥	지역 내 관계자	



(4) FGI(초점집단 심층면접) 결과

1)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예상되는 문제점

① 사회서비스원의 성급한 추진에 대한 우려

-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지역 내 관계자 대상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에 대한 단계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의 부족으로 인한 기존 시설과의 상생 한계점 발생 우려
- 현재 위·수탁 시설의 계약기간 종료 후 국·공립시설 전환 등 사회서비스원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시 전환 시설의 지향점 변화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스트레스 증가, 인력 개편에 따른 기존 인력(시설장)의 고용 불안 발생 등을 걱정하고 있음
- 국정과제라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명분만 내세우는 사회서비스원의 원만한 설립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임
- 운영관리시설의 증가 등 도내 사회서비스를 위한 효율적 지원 가능성 부족
- 사회복지·노인장기요양·어린이집 종사자들의 동등한 급여체계 및 신분 보장 가능성에 의구심 존재

②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지속적인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 예산에 대한 국가의 항구적 지원 없이 향후 운영예산에 대해 도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바라봄
- 국·공립 위·수탁시설 및 종합재가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 종합재가센터 운영 시, 물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지속적인 인력지원 및 유지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 초기 사회서비스원 창립 구성원으로 참여 시 고용의 안정성은 보장받을 수 있으나 기관의 안정기 단계까지 예상되는 업무의 과중함, 단계적 시행착오 극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종사원들의 인력 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③ 사회서비스원 위·수탁기관과 기존 민간시설 사이의 격차 발생

- 사회서비스원 위·수탁기관 운영 시 기존 민간시설과 대비하여 인력확충 및 운영예산 등에서 발생하는 격차로 인해 서비스 질의 차이 발생 예상
- 수요대상자의 사회서비스원 위·수탁기관 사용 이후 수요자의 욕구 증가로 인해 기존 민간시설들의 반발감 및 경쟁력 악화 우려
- 국·공립시설과 법인 및 개인시설의 공정한 경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으로 민간사업을 침범할 것으로 우려
 - 사회서비스원 소속 시설 대비 예산의 부족으로 운영상의 경쟁력 확보 불가능
 - 사회서비스원 소속이 아닌 종사자들의 처우 및 의욕 저하 우려
 - 국공립시설로 물리는 종사자들로 인해 기존 시설의 쇠퇴화 우려
 - 민간에서 열심히 교육시키고, 육성한 전문 인력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이동 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적 특성상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생각함
 -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종사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나 정규직 전환 시 안주성에 의해 개개인의 전문적인 능력향상을 위한 노력 및 서비스 질 감소 우려

④ 기존 기관들과의 업무 중복 발생, 인력 및 예산 낭비 우려

- 복지재단 등 기존의 기관들과 중복되는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들면서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은 도와 도민들에게 가중될 것이 분명할 것으로 생각함
 - 전국 광역시도에서 시행 중인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도입 시 이와 같은 이유로 신규 설립 및 복지재단 확대 개편을 통한 사회서비스원 전환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각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2)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및 기능

①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연구 기반 처우개선 필요

- 신분보장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한 고용안정성 확보
 - 요양보호사 수가 체계 개선 등 현재 법적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종사자를 위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연구를 통해 사회서비스 질 향상,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시설의 투명성 제고 등을 기대
-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 이후 조직 구성 및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 필요

② 기관의 취약점 우선 지원 및 표준화 모델 구축 필요

- 사회서비스원에 사회복지 경험과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복지 전문가가 참여하길 희망
- 현장에 대한 지원은 강제·강압의 통제가 아닌 현장의 상황을 직접보고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 현실적인 도움을 지원해주는 현장 지원방안 필요
-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만의 표준화 모델 개발을 통해 영세한 시설 및 기존 민간시설의 취약점 보완 및 수요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 제시
- 도내 부족한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 각 지역의 지속적인 인재 양성 지원, 인력 확보 기반 인력 부족지역 파견 등 필요
-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길 희망하며, 민간시설 종사자 대상 주기적 교육, 고용 안정성 방안 제시 등 종사자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종사자 수준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방안 및 업무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③ 수요자의 공정한 서비스 혜택 실현

-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요자를 위한 도서지역 도달방법,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서비스 지원방안 구축, 물리적 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가 체계의 맹점을 극복할 수 있는 예산지원 방안 등 체계화된 대책 마련 필요
 - 도서지역의 사회복지 수요자의 소외감 존재

④ 기존 시설과의 역할 중복 정리 필요

- 사회서비스원이 신규 설립될 경우, 전남복지재단의 영향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 전남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중복 정리가 필요하며 사회서비스원의 신규 설립보다 복지재단의 확대개편을 통한 운영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3) 사회서비스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방안

① 사회서비스원의 국비 예산 운영 희망

- 사회복지 관련 정부 시책으로 인해 시행되었던 기존 사업들의 경우, 지속적인 국비 지원없이 도비 및 시군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였을 때 성공사례 거의 없음
- 서울시처럼 재정이 풍부하지 못한 지방의 경우,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우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확충 및 운영 유지의 한계에 직면할 위험이 큼
- 운영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사회서비스원 또한 선행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선거기간마다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우려가 있음

② 전문 인력의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사회서비스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 채용 시 관련 전공분야 이수자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되어야 함
- 확실한 신분 및 정년을 보장하여 인력 유출 방지와 안정적인 조직 유지 방안 필요

4)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오해

① 기존 시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기관에 대한 사회서비스원의 통제 및 개입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업무 성과가 저하되고 기관의 발전 기여도가 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사회 복지의 보편적 수준 향상에 있으며, 민간과의 경쟁이 아닌 민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② 법인 및 민간시설 전체에 대한 사회서비스원 국·공립 위·수탁이 가능하다고 생각

-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홍보 및 이해부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위수탁을 희망하는 민간시설 모두 신분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고용의 안정성 보장을 공무원 신분으로의 전환으로 오해하고 있음

(5) 공청회

1) 서부권역(2020. 11. 04)

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단계별 추진을 시행해야 함

-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시도에서도 운영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에 위치한 전라남도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시작 전부터 걱정이 됨
- 아울러 도민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게 될 경우,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학계, 현장, 도민 등 지역 내 모든 사람들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수렴을 통해 전남형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방향제시가 필요함

② 공공과 민간에 속한 종사원의 차별없는 처우개선 방안 필요

- 도내에 위치한 민간시설의 소속전환 및 소속 종사원의 100%정규직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 향후 사회서비스원 내에 속한 종사원과 민간시설에 속한 종사원 간 처우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해결방안 제시가 필요함
- 공공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순수하게 신규 고용창출인지, 아니면 기존 민간시설에 종사원 이직에 의한 고용창출인지 분석이 요구됨
- 현재 지역 내 재가센터 및 맞춤형돌봄센터의 경우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들이 활동 중에 있음
-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며 개인적으로는 이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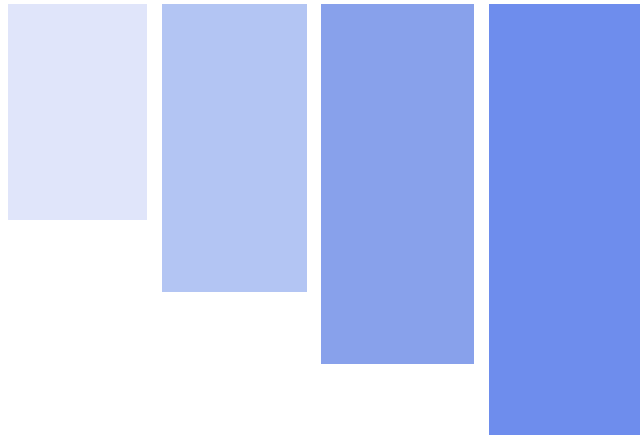
2) 동부권역(2020. 11. 05)

①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하기에 앞서 민간지원 정책부터 우선 시 되어야 함

- 사회서비스원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가져 온 제도이나 현재 일본 내 사회서비스원은 모두 사라진 상황이며 모두 민영화가 되어버렸음
- 현재 전국 뿐만 아니라 전남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원 역시 10년 이후에는 민간법인과 동일하게 하나의 법인에 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과연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며 전라남도의 경우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과다한 복지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민간 복지재정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한다면 민간지원 정책부터 우선 시 되어야 하며 해결된 이후에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민간과의 협치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필요

- 현재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수급자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임
- 공공에서 얼마만큼 수급자를 모집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수급자 모집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 공공기관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으로서의 역할은 사각지대 또는 취약지역, 서비스 불안 지역에 대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과 매순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협의와 협치가 있어야 함
- 개인사업자의 한계상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소통의 창을 마련해 둔다면 민간 역시 사회서비스원을 지원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원 역시 마찰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제6장 설립 및 운영방안

1. 설립의 기본방향
2. 설립방안
3. 단계별 추진방안
4. 조직 및 인력 운영(안)
5. 시설운영(안)
6. 재정운영(안)

제6장 설립 및 운영방안

1. 설립의 기본방향

(1)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필요성과 목적

1)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필요성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 및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및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및 직접 고용을 통한 일자리 안정성 강화, 교육 훈련 기반의 전문성 향상 도모
- 돌봄서비스 수요증대에 따른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기관의 표준모델 활용, 운영 컨설팅 등을 통한 품질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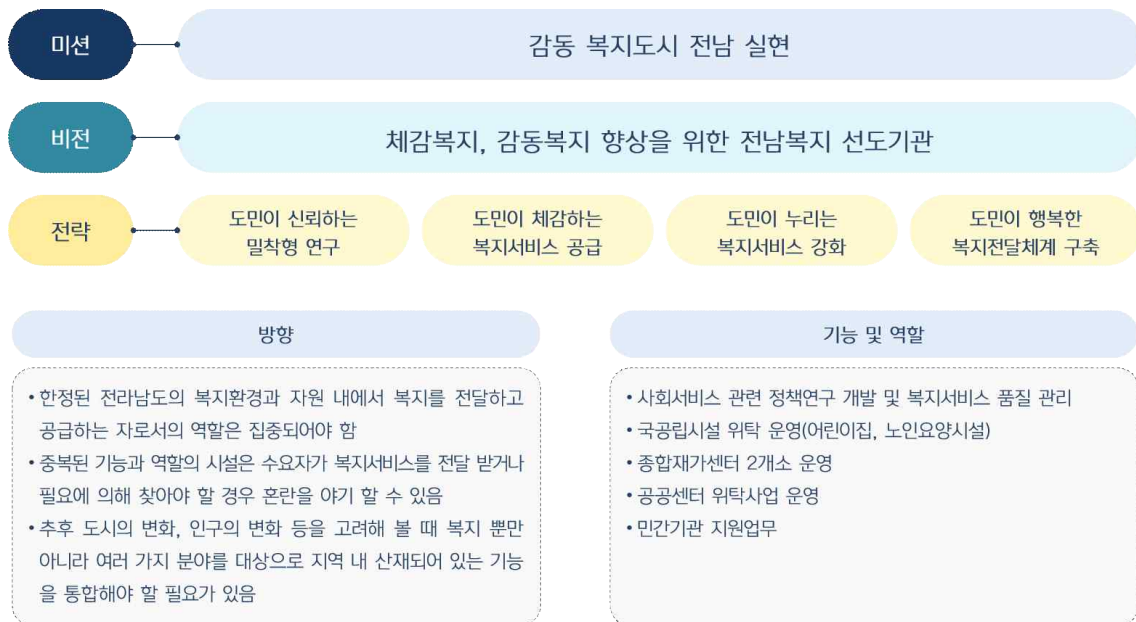
과제목표	미흡한 분야 및 종사자 처우 인식
• 아동노인 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품질 향상

2)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 및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실현(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확대 및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직접 고용을 통해 고용안정성 및 처우 개선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 및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및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2) 비전 및 목표

- 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전라남도의 각 지역별 의견수렴 내용, 향후 전남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전라남도 복지기준) 등을 고려하여 전남사회서비스원의 미션과 비전, 전략 등을 설정함
 - 공공책임의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화
 - 민간지원 및 민간기관과의 협치를 통한 전남복지 서비스 활성화
- 전남사회서비스원의 미션은 ‘감동 복지도시 전남 실현’으로 설정하고 조직의 비전을 ‘체감복지, 감동복지 향상을 위한 전남복지 선도기관’으로 정함
- 미션과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는 ①도민이 신뢰하는 밀착형 연구, ②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공급, ③도민이 누리는 복지서비스 강화, ④도민이 행복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으로 수립함



<그림6-1> 전남사회서비스원의 비전과 목표, 전략(안)

2. 설립방안

(1) 타 시도 사회서비스원 추진 계획 및 현황

1) 설립형태에 따른 추진 계획 및 현황

-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목표로 함 (2020년 10월 기준, 10개 시·도 설치 완료)
- 2020년 10월 기준, 10개 시·도 설치 완료
 -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목표로 함
- 시범사업 운영 계획, 국·공립 시설 운영·종합재가센터 확대·종사자 고용 보장 초점
- 사회서비스원,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자체 예산 10억 내외 투입
 - 서울시, 운영예산에 국비 대비 5배 이상 지방비 투입
- 2019년 4개 시범사업 기준, 전체 위·수탁 목표 대비 59% 달성
 - 경남사회서비스원 목표 대비 74.0%로 가장 높아
- 4개 시범사업 지자체 중 경기(보호전문기관), 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 경남(노인요양) 실적 유일
- 서울사회서비스원, 4개 시범사업 지자체 중 유일하게 종사자 전원 정규직 고용

<표6-1> 타 시도 사회서비스원 추진 현황

시도명	설립형태		사회서비스원 설립연도(계획)	복지재단/유사기관 설립	
	법인전환	신규설립		연도	기간
서울		○	2019(시범)	2003	18년차
부산	-	-	보류	2006	15년차
대구		○	2019(시범)	-	-
인천	○		2020	2018	3년차
광주		○ (통합 고려 중)	2020	2015	6년차
대전	○		2020	2011	10년차
울산	-	-	-	-	-
세종	○		2020	2018	3년차
경기		○	2019(시범)	2007	14년차
강원		○	2020	-	-
충북	-	-	-	-	-
충남	○		2020	2019	2년차
전북	-	-	2021	-	
전남	-	-	계획 중	2014	7년차
경북	-	-	-	2011	10년차
경남		○	2019(시범)	-	-
제주		○	2021	-	-

(2)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비교

- 사회서비스원 신규 설립/복지재단의 확대 개편을 통한 전환은 광역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 선택의 문제
- 전라남도의 전남복지재단은 2013년도 보건복지부 설립 허가를 통해 2014년에 출범한 복지부분의 대표적인 출연기관으로서 설립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원과의 기능적인 중복 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복지재단의 주된 역할 : 지역복지정책개발 및 연구, 시민교육 등 광역적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추진체로써 역할 수행
- 사회서비스원의 주된 역할 :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행 기관으로서 국공립 시설 위탁운영 및 종합돌봄체계 구축 실행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인력의 전문성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 서비스전달체계의 통합성과 특히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 해결

<표6-2> 전남복지재단의 사업과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비교

전남복지재단의 사업(조례)	사회서비스원의 기능(복지부 제시)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사회복지자원의 네트워크 구축·교류 및 협력(개정 2018.12.31.) 3.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4. 전남복지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 5.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 컨설팅 6.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등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국·공립 시설 운영(보육, 요양, 복지시설) •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 민간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향상지원(시설안전점검, 대체인력지원사업, 경영 컨설팅지원사업, 인력수급 지원사업) •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 및 수급계획 관련 연구 등 지자체 지원

자료 : 전라남도 홈페이지(전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유사기능 중복여부

-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과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대표적인 출연기관
- 두 기관의 관계 및 역할의 중복성 등의 고려 필요

<표6-3> 전남복지재단의 주요 사업과 사회서비스원의 유사기능 중복여부

사업구분	복지재단 주요사업	사회서비스원과 유사기능 중복여부
정책연구팀	·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연구 · 사회복지 정책현안 및 단기 성과평가 연구	· 연구개발기능 확대 시 중복
교육사업팀	·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지원 및 운영 ·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 · 민관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운영 · 복지사각지대 해소 우수사례공모사업 운영 · 블루SOS사업 추진 및 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연구 · 전남복지아카데미 운영	· 일부 중복(민간시설 대상 경영지원 등)
자원연계팀	· 거점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 치매예방을 위한 스마트 헬스 케어 서비스 · 창의학고 전남 · 기금사업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경영지원팀	· 재단 내·외부 감사 및 노사 관리 · 출연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예산, 회계, 계약업무 담당 · 사회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 인사제도 기획, 지원 및 관계자 교육	· 조직경영차원에서 기능수행가능
공공사업지원	· 전남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사회서비스원의 특화사업으로 검토 필요
사회서비스 지원단	· 제공기관 현장점검 및 평가지원 · 청년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사업 관리 지원 · 지자제 및 제공기관 교육 계획 수립 운영 · 사회서비스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관리 · 사회서비스사업 신규 발굴·기획 ·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한 제공기관 지원 강화 · 우수사례 발굴 및 사회서비스 인식 확산	· 중복(사회서비스지원단,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 필요)

(4) 설립 유형의 비교 분석 및 적정(안)

- 우선, 현재의 전남복지재단을 유지하고 전남사회서비스원을 신규로 설립할 경우 독립된 법인격체로서의 조직과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는 전남복지재단이 복지재단 고유의 역할인 정책연구,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수탁 기관에 대한 심의 평가 등의 수행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유리한 방안일 수도 있으나 사회서비스원에서의 수행해야 하는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 수탁 시설 안정화를 위한 표준 모델 연구 등 연구부분에서의 기능 중복성은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외에도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신규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확대 개편보다는 설립과정이 비교적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신규로 설립 될 경우에 대한 단점은 정책연구의 실현가능성 제고 등 양조직간 협력과 시너지 도모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지고(복지재단이 있는 지역의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고려) 본 조직의 설립은 보건복지부의 사업 추진방안과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타 지역의 동일 기관과의 경쟁력 우위 선점이 어려워 향후에는 다른 한쪽의 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신규 설립안은 출연기관에 대한 전라남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전남도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효율성의 문제와 업무에 대한 중복성 문제 등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은 지방정부차원의 사회복지전달체계 확충노력과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시 국정과제중 하나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이 제시되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광역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진행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인 공공성과 인력의 전문성 그리고 서비스의 품질향상, 서비스전달체계의 통합성과 특히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 전국적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은 2019년 4개 지역(서울, 경기, 대구, 경남), 2020년 6개 지역(인천, 강원, 충남, 세종, 대전, 광주) 그리고 2022년까지 설치

예정지역은 전라남도를 포함하여 5개 지역(울산, 충북, 전북, 경북, 전남)임

- 현재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은 광역시·도의 복지환경에 따라 크게 보아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분리운영하는 지역(서울, 경기, 광주)과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통합운영하는 지역(인천, 대전, 충남, 세종, 전남, 경북) 그리고 복지재단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는 지역(대구, 경남, 강원, 울산, 충북, 전북)으로 분류됨
- 전남복지재단의 경우 설립한지 7년 정도 경과가 되었으나 도민들로부터 그 정체성을 여전히 획득하지 못한 상황임을 본 연구를 통해 인지(FGI 및 공청회 의견)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입각했을 때 얼마든지 필요한 기능을 조정할 수 있음
- 즉, 변화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 설립된 전남복지재단의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전남사회서비스원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도민의 입장(수요자)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행·재정·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고(행정비용 절감 등)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출범, 복지재단 내 자원의 활용 용이성, 복지수요 및 복지자원 등을 고려한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회서비스 활성화에 더욱 더 기여 할 수 있는 “복지재단의 확대 개편”이 바람직한 설립방안임

<표6-4>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의 비교

구분	사회서비스원의 신규법인 설립안	복지재단의 확대 개편안
장점	- 독립된 법인격체로 조직 및 사업 운영의 자율성 확보 - 복지재단의 고유역할 수행 가능 (정책연구, 사회복지단체·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심의 및 평가) - 사회서비스원 설립과정이 비교적 단순화	- 정책연구의 실현가능성 제고 등 양조직간 협력과 시너지 도모 가능(지역 간의 기관 경쟁력 우위 선점/유지) - 보건복지부의 사업 추진방안과의 연계성이 높음 - 행·재정·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함(행정 비용 절감 등) - 안정적으로 출범이 가능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이 용이함 - 복지재단 내 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높음 - 복지수요 및 복지자원 등 고려 시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용이 - 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기여 등
단점	- 전남 복지수요 및 복지자원 등을 고려할 경우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각각의 독립적 운영의 실효성 저하 - 사회서비스원 설립 절차의 복잡성(행안부의 승인 등) - 복지재단의 일부 기능(복지협력, 사회서비스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과의 중복으로 비효율성 초래 - 지역 내 추가적인 복지재단 설립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외 타 부문의 재단 설립 계획 중)	- 복지재단의 정체성 또는 고유기능 축소 우려 - 복지재단 인력의 직접사업 운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및 인력운용의 경직성 - 복지재단 인력과 직접제공 종사자 간의 임금체계 등에서의 노무관리 어려움 존재 - 정책생산기능과 서비스 공급기능을 겸하는 조직거대화에 대한 우려 - 서비스 심사 및 평가 수행기관 별도 설치 필요

3. 단계별 추진방안

-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2021년 개원 목표로 설립 추진
- 도입 단계 : 2021년 개원 목표, 국공립 시설 2개소 수탁(보육, 요양) 및 종합재가센터 2개소 등 신규 설치/운영
- 확장 단계 : 종합재가센터 및 공공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시·군별 설치 확대 / 본부 인력 및 국공립 시설 운영 확대
- 안정 단계 : 인력 및 조직의 안정화 구축 기반 전남형 사회서비스 안정적 제공 단계

단계	주요 내용
도입기 (2021)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사업의 운영 • 사회서비스원 추진계획 수립 •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조례제정 • 복지재단 확대 개편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재구성 • 사회서비스원 설립 • 사회서비스원 인력충원 등 조직체계 정립 •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확장기 (2022~2023)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및 운영체계 확장 • 사회서비스원의 인력충원 등 운영체계 확장 • 국·공립 시설 수탁운영 확대 •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수행 • 민간지원기능 본격 추진 및 확대 • 사회서비스 대체인력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확대
안정기 (2024~2025)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안정 및 역량 강화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충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 •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역량 확대 • 사회서비스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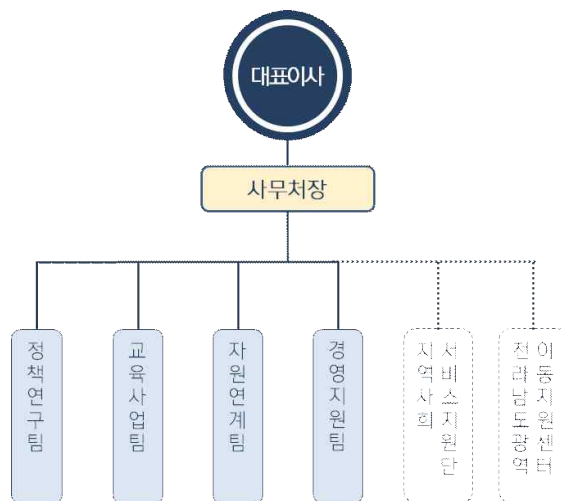
<그림6-2>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의 단계별 추진 로드맵

4. 조직 및 인력 운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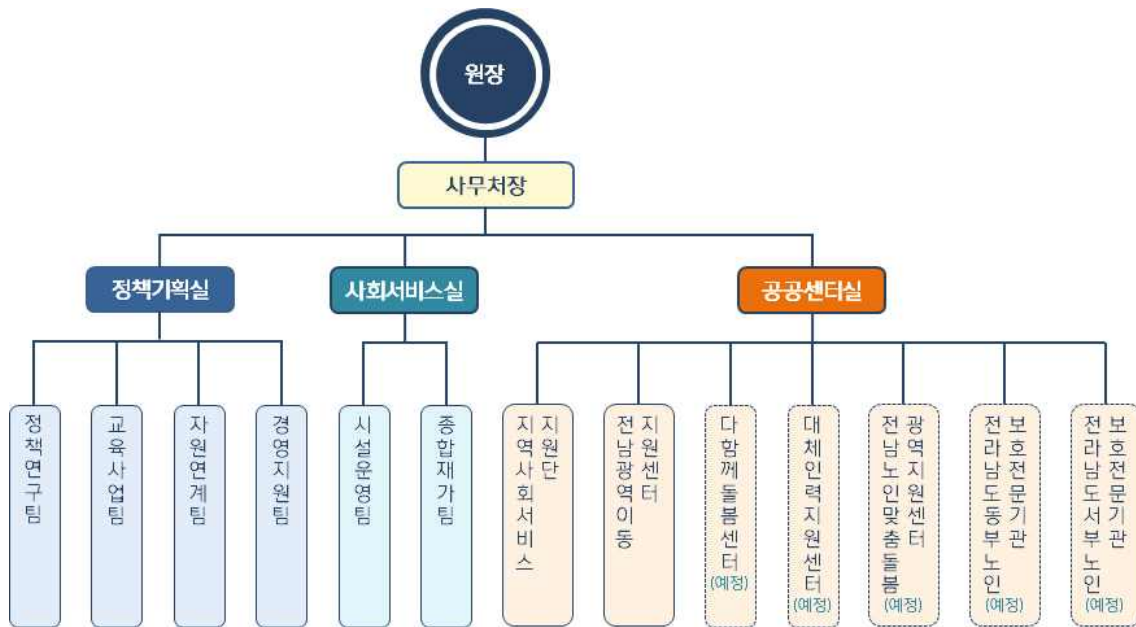
(1) 조직구성(안)

1) 조직도

- 기존 복지재단의 역할 및 기능 유지 기반의 확대 개편 조직구성(안) 계획
- 기존의 전남복지재단의 사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회서비스원의 본래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함을 전제로 하여 전남사회서비스원 안정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새로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내부적인 경영시스템 정착과 각종 제도화가 필요한데 이와 같이 확대 개편함으로서 행정적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특히 경영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이점을 득할 수 있음
- 전남지역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동향과 설립 이후의 조직 설계 등을 살펴보면 각 조직만의 특징은 있으나 기존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직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는 일치하고 있음



<그림6-3> 현재 전남복지재단 조직구성(안)_(1차 4팀)



<그림6-4> 전남사회서비스원 조직구성(안)_(1처 3실 6팀)

2) 부서별 역할 및 기능

- 전남사회서비스원 조직구성을 고려한 부서별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기존 복지재단의 기능은 유지함
 -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시설운영과 관리, 지원업무 등을 고려하여 시설운영팀과 종합재가팀, 다수의 공공센터로 설계함
 - 시설운영팀은 보육, 요양, 복지시설 등 국·공립 시설에 대한 수탁사업, 대체인력 지원 사업, 시설 노무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종합재가팀은 전남지역에 설치될 종합재가센터에 대한 설치와 운영,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함
 - 공공센터는 사회서비스원 본연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전라도 내 각 종 중간지원조직 중 사회서비스의 직접 공급이 가능하고 지역의 특성(초고령화 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시설을 직접 운영 관리하도록 함

<표6-5>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역할 및 기능

구분		역할 및 기능	
기존 복지재단 업무분장	정책연구팀	· 복지현안 연구 수행 · 지역균형발전 복지정책 개발 · 전남복지포럼 개최 · 전남복지거버넌스 운영	· 복지포커스 발간 · 연구결과 설명회 개최 · 민간제공기관 품질향상 지원
	교육사업팀	· 전남복지아카데미 운영 · 사회복지시설 경영, 평가 컨설팅 · 평가지표개발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 전남복지 DB시스템 운영
	자원연계팀	· 자활기금사업운영 · 노인복지기금운영 · 장애인복지기금운영	· 복지자원 개발 및 관리 · 민관협력 사업 · 출산장려 지원 사업
	경영지원팀	· 재단운영관리 · 이사회, 위원회 운영 · 사업계획수립	· 경영평가, 인사 · 예산, 대외업무
사회서비스원	시설운영팀	· 국·공립 시설(보육, 요양, 복지시설 등) 수탁사업 · 대체인력 지원 사업 · 시설 노무 상담	
	종합재가팀	·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사업 ·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지원	
	공공센터	· 공공센터 운영 및 관리	

(2) 인력운영(안)

1) 단계별 인력구성 및 부서별 인력배치

- 현재 전남복지재단 1처 4팀 운영에서 ‘1처 3실 6팀’으로 확대개편
- 현 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 사무는 유지하고 사회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조직을 추가적으로 구성하는 방향
 - 전남복지재단을 확대 개편함에 따라 사무처장의 역할이 과중됨을 고려
 - 기존 복지재단 부서를 총괄 할 수 있는 가칭)정책기획실 신설, 신규 사회서비스원 부문 역시 가칭)사회서비스실을 신설하여 사무처장의 업무 과중을 분산화 함
 - 궁극적으로 정책기획실 및 사회서비스실 등의 신설은 전남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개편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연구정책개발과 사회서비스의 직접 공급의 사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표6-6> 전남복지재단 인력운영 현황

(단위 : 명)

전남복지재단(1처, 4팀)		
팀명	업무내용	정원
계		19
대표이사	• 복지재단 업무 총괄	1
사무처장	• 실무 총괄	1
정책연구팀	• 정책연구개발	5
교육사업팀	• 사회복지시설 경영 및 평가 컨설팅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4
자원연계팀	• 기금사업운영 • 복지자원 개발 및 관리 • 민관협력 사업	3
경영지원팀	• 재단운영관리	5

- 전남복지재단의 확대 개편(1처 3실 6팀)을 통해 전남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 시, 14명의 신규채용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추가인력 계상은 사회서비스원을 신규로 설립 할 경우 초기 운영인력(20명)의 각각의 업무 내용을 검토하고 2020년 11월 기준,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지역의 조직구조와 사무 내용, 전남복지재단 업무 내용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증원함
-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총 33명의 인원으로 전남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는 것으로 계획함

<표6-7> 전남사회서비스원 인력운영(안)

(단위 : 명)

전남사회서비스원(1처 3실 6팀, 33명)			증감
팀명	업무내용	정원	
계		33	+14
원장	· 사회서비스원 업무 총괄	1	-
사무처장	· 실무 총괄	1	-
정책기획실(1)	정책연구팀 · 전남 복지정책 연구개발 ·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수립 · 서비스 표준운영 모델 연구	6	+1
	교육사업팀 · 사회복지시설 경영 및 평가 컨설팅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4	-
	자원연계팀 · 기금사업운영 · 복지자원 개발 및 관리 · 민관협력 사업	3	-
	경영지원팀 · 사회서비스원 운영관리	6	+1
사회서비스실(1)	시설운영팀 · 국공립시설 위수탁 사업 추진 및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5	+5
	종합재가팀 · 국·공립시설 및 종합재가센터 사업지원	4	+4
공공센터실	· 공공센터 업무 총괄	1	+1

- 전남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개편 시, 신규채용이 필요 시 되는 인원 14명에 대한 직
능별/직급별 계획(안)은 아래와 같음
- 기존의 전남복지재단이 전남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개편되어 출범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등 내부적인 지침 및 규정 등의 변경이 필요하고 각 종 규정 변경시 내용 변동
성이 따르기 때문에 아래의 추가인원에 대한 직급은 향후 내외부적인 변화가 발생할
경우 변동 가능함
- 정책기획실, 사회서비스실, 공공센터실에 필요 인원은 3명으로서 직급은 1~2급 범위
내에서 결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책연구팀은 책임연구원급 1명, 경영지
원팀은 5급(사무직) 1명 충원으로 함
- 시설운영팀과 종합재가팀의 경우 타 지역의 조직 사례를 통해 직급별 인원을 구성함

<표6-8> 신규채용 인원 에 대한 각 팀별/직급별 계획(안)

(단위 : 명)

구분	계	대포 이사 (3급)	처장	사무직					연구직				
			1급 (4급)	2급 (5급)	3급 (6급)	4급 (7급)	5급 (8급)	6급 (9급)	선임 연구 위원 (4급)	연구 위원 (5급)	책임 연구원 (6급)	선임 연구원 (7급)	연구원 (8급)
정원(A)	19	1	1	2	2	2	2	2	1	1	1	2	2
현원(B)	18	1	1	1	2	2	3	2	-	2	-	2	2
신규채용(C)	14	-	3	-	2	2	4	2	-	-	1	-	-
계(A+C)	33	1	4	2	4	4	6	4	1	1	2	2	2
실장	3	0	3	0	0	0	0	0	0	0	0	0	0
정책연구팀	1	0	0	0	0	0	0	0	0	0	1	0	0
교육사업팀	0	0	0	0	0	0	0	0	0	0	0	0	0
사원연계팀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영지원팀	1	0	0	0	0	0	1	0	0	0	0	0	0
시설운영팀	5	0	0	0	1	1	2	1	0	0	0	0	0
종합재가팀	4	0	0	0	1	1	1	1	0	0	0	0	0
계	14	0	3	0	2	2	4	2	0	0	1	0	0

주) (괄호)는 공무원 직급 기준

- 2021년 출범 이후, 2025년까지 총 70명의 조직구성원 확대 계획(사회서비스원 운영 가이드라인 기준)
 - 2021년 출범 시점, 복지재단 조직구성원 19명(정원) + 사회서비스원 14명(신규채용) = 총 33명 출범
 - 출범 이후 5년 동안 단계별 인력구성 확충을 통해 조직구성원 70명 확대 계획(사회서비스원 운영 가이드라인 적용)
 - 보건복지부, 인력 구성에 대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도입기) 이후 안정 단계(성숙기)에 도달하여 20여 개 시설 직영 및 약 3.5~5천여명의 종사원 고용 시 70명 규모의 본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표6-9> 연차별 전남사회서비스원 인원 충원 계획(안)

(단위 : 명)

구분	계	원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충원수
2021년	33	1	5	3	6	6	8	4	-
2022년	43	1	5	4	8	8	12	5	10
2023년	53	1	5	4	10	10	14	9	10
2024년	63	1	5	4	12	12	16	13	10
2025년	70	1	5	4	13	14	18	15	7

5. 시설운영(안)

(1) 국·공립 시설 수탁 운영

1) 시설확충 계획

- 국·공립시설 12개소(보육 9개소, 요양 3개소), 공공센터 18개소(기존 수탁 2개소 포함)
- 국·공립시설은 신규 설립 시설을 대상으로 도입기에 각각 1개소로 출범, 도입기에는 소규모 운영으로 운영상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 공공센터는 현재 전남복지재단에서 수탁 중인 사업은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배경(노인 돌봄서비스 수요 급증, 보육 및 양육 등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과 전남 전체의 문제점(초고령화)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탁 가능 시설로 설정함

<표6-10> 전남사회서비스원 연도별 국·공립 시설 확충방안

(단위 : 개소)

구분		시설 수						비고	
		계	도입기	확장기		안정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국·공립 시설	어린이집	9	1	2	2	2	2	신규	'22년까지 신규시설 9개소
	노인요양	3	1	0	1	0	1	신규	'22년까지 신규시설 3개소
	소계	12	2	2	3	2	3		
공공 센터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1	1	0	0	0	0	기존	승계
	전남광역이동 지원센터	1	1	0	0	0	0	기존	승계
	다함께돌봄센터(예정)	12	0	4	4	2	2	검토 후 추진	지자체 여건 및 담당부서 협의 후 추진
	대체인력지원센터(예정)	1	1	0	0	0	0	신규	대체인력지원 사업 필
	전남노인맞춤돌봄 광역지원센터(예정)	1	0	0	0	1	0	신규	지역특성 고려
	전라남도서부노인 보호전문기관(예정)	1	0	0	0	1	0	신규	지역특성 고려
	전라남도동부노인 보호전문기관(예정)	1	0	0	0	1	0	신규	지역특성 고려
	소계	18	3	4	4	5	2		

2) 인력확충 계획

- 종사자 수, 도입기(2021년)에 인력확충을 통한 목표 기준인원 충족
- 국·공립 시설 및 공공센터의 종사자 수는 도입기, 확장기, 안정기 등을 통해 2025년에는 약 340여명(5년간) 가량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표6-11> 전남사회서비스원 연도별 국·공립 종사자 수 확충방안

(단위 : 명)

구분		종사자 수							비고
		목표치		도입기	확장기		안정기		
		기준명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국·공립 시설	어린이집	15	135	15	30	30	30	30	신규
	노인요양	36	108	36	0	36	0	36	신규
	소계	51	243	51	30	66	30	66	
공공 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5	5	5	0	0	0	0	기존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20	20	20	0	0	0	0	기존
	다함께돌봄센터(예정)	3	36	0	12	12	6	6	검토 후 추진
	대체인력지원센터(예정)	15	15	15	0	0	0	0	신규
	전남노인맞춤돌봄광역지원센터 (예정)	4	4	0	0	0	4	0	신규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예정)	9	9	0	0	0	9	0	신규
	전라남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예정)	9	9	0	0	0	9	0	신규
	소계	65	98	40	12	12	28	6	

(2) 종합재가센터 설립 및 운영

1) 시설 및 인력확충 계획

- 종합재가센터, 도입기에 기본, 확대 각 1개소 설립 이후 총 8개소(기본 4개소, 확대 4개소) 확대 계획
- 앞선, 사례조사에서 살펴보면 서울시를 제외한 타 지역의 종합재가센터 설립은 복지부가 제시한 기본형과 확대형을 기준으로 설립 운영 중임
- 사각지대 소규모 단위로 방문요양을 중심으로 시설을 설치 운영하되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 될 경우 여러 단위지역으로 확대

<표6-12> 전남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시설 확충방안

(단위 : 개소)

구분	시설 수						비고
	계	도입기	확장기		안정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기본형 (신규)	4	1	1	1	1	0	우선 지역적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을 고려 해서 방문요양 중심으로 운영, 이용자 확보 추이 등에 따라 사업범위 확대
확대형 (신규)	4	1	0	1	1	1	사각지대(장기요양등급외자 중심 등)에 소 규모 단위로 운영, 사업성과 등을 바탕으로 단위지역 확대
소계	8	2	1	2	2	1	

<표6-13> 전남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종사자 수 확충방안

(단위 : 명)

구분	종사자 수					계
	도입기	확장기		안정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기본형	30	30	30	30	0	120
확대형	50	0	50	50	50	200
소계	80	30	80	80	50	320

2) 2021년 설립 및 운영 대상 지역(기본형, 확대형)

- 설립 및 운영 대상 지역 : 전남형(농어촌 밀착형) 재가센터(1안) / 복지부 권고 종합 재가센터(2안)

① 설립 대상 위치 선정 기준

구분	내용
복지 대상자 현황	• 고흥·보성·신안군, 전국에서 고령인구 및 초고령인구 비중 가장 높은 지역
장기요양수급	• 장흥군, 장기요양재가서비스 시설 당 이용자 수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지역
타 지자체 사례	• 제도권 내 돌봄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대상 돌봄사각지대 지역
직능 협회장 간담회	• 민간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도서산간 지역 등 복지 사각지대 • 대상자 대비 시설 수 부족한 지역 / 지형상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주)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관련 직능 협회장 간담회 결과 2020. 11. 09.

② 설립 및 운영 대상 지역 선정

- 도내 인구의 비중이 높고, 노인인구의 증가율이 높은 지역 기준 선정
- 도내 65세 이상 인구의 5년 간 증가율, 시 단위가 압도적으로 높아
- 시 단위 모두 10% 이상 증가, 1순위 광양(17.91%), 2순위 목포(15.65%)

(1안) 전남형 (농어촌 밀착형) 재가센터	소규모 도서형	소규모 오지형
	완도 / 신안군 중 택일	곡성 / 구례 / 해남군 중 택일

(2안) 복지부 권고 종합재가센터	기본형	확대형
	목포 / 여수 / 순천시 중 택일	광양 / 목포 / 여수시 중 택일

(3) 민간제공기관 지원 사업

① 시설안전점검 지원

- 민간 제공기관 대상 체계적인 안전점검 지원, 시설 이용자·생활자·종사자의 안전 확보
- 사업내용
 - 시설 안전관리 점검 사전수요조사 신청 기관 대상 안전점검 실시
 - 사회서비스원 소속 안전점검 인력 배치 후 유형별 안전점검 수요 많은 시설 순 점검
 - 시설안전관리 및 소방·건축, 가스, 전기 등 시설안전 집중점검, 지역별·시기별 특성 고려 실시

② 경영컨설팅 지원

- 민간 사회복지시설 대상 경영·노무·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컨설팅, 시설운영 역량 제고 및 운영 노하우 우수사례 전수
- 사업내용
 - 조직관리 : (회계, 인사, 노무, 경영 등) 전문 컨설팅 지원 및 상시 노무상담 서비스 지원
 - 경영컨설팅 : 경영 전문 컨설팅 사전 수요조사 기반 참여기관 선정 및 전문가에 의한 기관 방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무료 노무 상담 : 상근직 공인노무사 채용 및 배치를 통한 민간 제공기관의 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대상 무료 노무 상담 서비스 제공

③ 대체인력 지원

- 돌봄서비스 질적 저하 및 업무공백 최소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대체 인력 지원
- 사업대상
 - 사회복지시설 1년 이상 근무 종사자 우선지원
 -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지역아동센터 포함 등 아동복지시설(영·유아, 보호치료) 보육사

- 장애인주거시설(유형별, 중증장애인) 생활지도원,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생활지도원
- 정신요양시설 생활지도원 및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기관 사회복지사
- 시설 종사자 겸직하고 있는 시설장 및 대표자 제외, 5인 이하 소규모 시설에서 직접 돌봄 업무 시행 중인 시설장은 가능하도록 함

• 사업내용

- 불가피한 종사자 공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신청한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 파견 지원

④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 사회서비스원의 통합서비스 제공모형에 적합한 표준운영 모델구축, 서비스품질 관리 체계 개발, 제공인력 전문성 강화
-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한 이유
 - 사회서비스의 무형성·소멸성의 특징으로 표준화 및 질 관리의 어려움 발생
 - 서비스 유형·대상별 분절적 관리로 인한 통합품질관리체계 결여
 - 시급제 기반 고용형태에 따른 제공인력의 전문성 부족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의 내용
 - 사업 유형별 표준화 : 기관운영 표준모델 구축,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작, 특화서비스 개발
 - 통합 품질관리체계 구축 : 이용자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이용자 맞춤형 매칭 시스템 개발, 서비스 단계별 모니터링 방안 설계, 품질평가 Tool 개발 및 평가 제도화
 -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강화 : 사업별 직무분석, 교육체계 개발 및 매뉴얼 개발, 경력개발제도 도입 및 인사 연계, 서비스제공자 케어프로그램 개발

6. 재정운영(안)

- 2021년 전남사회서비스원 출범 기준, 약 41억 원/년의 예산 소요
 - 기본 전남복지재단 연간 출연금 약 15억원 포함
 - 2021년 출범 기준, 국비는 설치비 5억원을 포함하여 약 14.6억원 소요, 도비는 재단 출연금을 포함해서 약 2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6-14>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필요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국비	5,275	1,455	955	955	955	955	-
도비	21,083	2,637	3,413	4,196	5,032	5,804	재단 출연금 포함
계	26,358	4,092	4,368	5,151	5,987	6,759	

주) 2021년 전남복지재단 출연금 약 15억원(인건비 9.5억원, 운영비 5.5억원) 가량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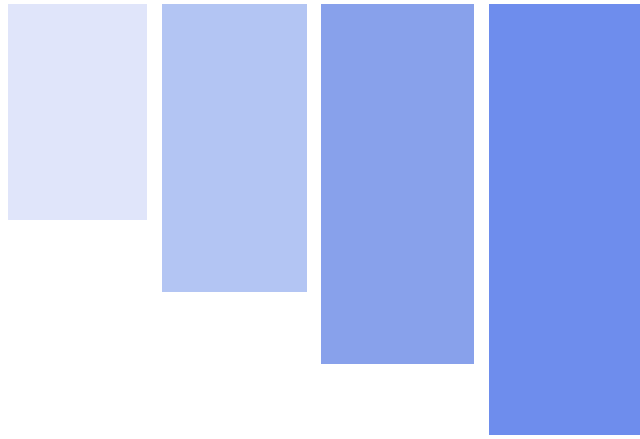
- 인원 충원 계획 및 임금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각 연차별 전남사회서비스원 필요 예산을 추산함
 - 2025년 기준, 약 68억원(국비 9.6억원, 도비 5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6-15> 연차별 필요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A+B+C)	설치비(A)	인건비			사업비 및 운영비			비고
		국비	소계(B)	국비	도비	소계(C)	국비	도비	
2021년	4,092	500	1,895	415	1,480	1,697	540	1,157	
2022년	4,368	0	2,614	415	2,199	1,755	540	1,215	
2023년	5,151	0	3,336	415	2,921	1,816	540	1,276	
2024년	5,987	0	4,108	415	3,693	1,879	540	1,339	
2025년	6,759	0	4,812	415	4,397	1,946	540	1,406	

주) 인건비는 전남복지재단의 임금 상승률을 고려하여 연 7% 적용, 사업비 및 운영비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5%를 적용함



제7장 설립 타당성 검토

1.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의 개요
2.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3. 경제적 타당성 검토
4.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5.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6.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7.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검토
8. 적정 자본 구조 분석
9. 공무원정원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제7장 설립 타당성 검토

1.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의 개요

1) 타당성 검토의 근거 및 전제

- 본 사업에서의 타당성 검토는 전라남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 사업이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과 재정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임
- 타당성 검토의 세부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및 시행령 제7조 3항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음
- 단, 행정안전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조직을 설립 할 경우에 해당하는 타당성 검토 내용으로서 본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위 법규를 준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타당성 내용은 검토하고자 함

2) 타당성 검토 기준

- 관련기준 :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 적용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설립 시
- 타당성 항목 및 주요 내용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다른 기관과의 유사 중복기능 검토, 조직 및 인력 수요분석, 적정자본 구조 분석,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타당성 항목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7-1> 타당성 항목 및 주요내용

항목	주요 내용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대상사업 해당 여부 분석 • 경제성 분석(BC 분석) • 사업 수행 방식의 적절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지표분석이 어려우므로 주민 설문 조사 실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검토를 위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분석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설립 기관의 5년간 사업수지 분석 • 지자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가용투자 자원 및 향후 5개년 동안의 추세 분석
다른 기관과의 유사 중복기능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출자·출연기관 또는 공기업과의 기능 중복 여부 및 조정 방안 검토
조직 및 인력 수요분석	• 조직 분석 • 인력 분석 • 직급별 인건비 분석
적정자본 구조 분석	• 공유재산을 현물 출자(출연)할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가능여부 등을 엄격히 검토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타당성 검토 시 지자체 정원감축계획의 적절성 여부검토

2.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1) 대상사업 범위

-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은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의 배경과 목적,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전남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 및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실현(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제공 확대 및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직접 고용을 통해 고용 안정성 및 처우 개선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 및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및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사업은 국·공립 시설 직접 운영, 공공센터 운영, 종합재가센터 운영, 민간시설 운영 지원, 사회서비스 표준 모델 연구,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등임
- 이는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사업에 해당됨
- 도민설문조사, 초점집단심층면담 및 설문, 공청회 등에서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은 국·공립시설 직접 운영관리 및 종사자의 직접고용에 따른 일자리의 질 향상과 이를 통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서비스의 질 향상에 있어 사회서비스원의 목적과 방향성 등 대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에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2) 대상 사업의 법률적 해당 여부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에 의거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데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절차로 시행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전라남도가 출자·출연기관으로 전남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것은 적법함
- 따라서 전라남도가 전남사회서비스원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은 대상사업의 범위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법률적으로 타당함

3. 경제적 타당성 검토

1) 개요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란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국가 전체적(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고 경제적 수익률을 계산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임
- 경제성 분석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비용 편익비(Benefit-Cost Ratio : B/C Ratio), 내부수익율(Internal Rate of Return : IRR), 순현재 가치(Net Present Value : NPV) 등이 있음
 - 비용 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 사업의 현재 가치화된 총비용과 총편익의 비율인 B/C비를 찾는 것
 - 내부수익율(Internal Rate of Return : IRR) : 현재 가치화된 비용과 편익을 같게 하는 것으로 현재 가치화된 순 편익을 “0”으로 만드는 내부수익율을 산정하여 할인율과의 비교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것
 - 순현재 가치(Net Present Value : NPV) : 현재 가치화된 총 편익과 총 비용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
- 경제적 타당성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7-2> 경제적 타당성 판단기준

분석기법	판단	장점	단점
편익/비용 비율 (B/C Ratio)	$B/C > 1$	• 이해용이, 사업규모 고려 • 비용편익 발생시간의 고려	•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 • 상호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 발생 가능
내부수익률 (IRR)	$IRR > k$	•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 사업의 절대적 규모를 고려하지 않음 • 복수의 IRR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포
순현재가치 (NPV)	$NPV > 0$	• 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 제시 • 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시	• 이해의 어려움 • 투자규모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

- 민간의 경우 투입비용과 수익이 모두 금전적 가치로 표시되는 비용·수익분석을 사용함
 - 조달된 투입비용 대비 확실하게 발생하는 수익만을 대상으로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분석이 가능함
- 그러나 공공의 경우 초기투자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금전적 수익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에 의해 기대되는 편익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함
 - 예컨대, 지역주민의 만족도, 생활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연관 사업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 등을 들 수 있음
 - 또한 비록 단기간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와 같은 간접적 효과가 크다면 사업의 추진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 따라서 공익사업은 다양한 파급효과를 발생하게 되고 그 모든 효과가 금전적으로 명확하게 환산되지 않으므로 계량화하지 못한 여러 정성적 효과를 산출하여 투입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검토기술이 필요함
- 본 연구의 타당성 분석방법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의거하여 비용·편익분석법(B/C ratio)에 의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함
 - 이를 통해 편익(비용)에는 명시적 편익(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편익(비용)도 포함하여 기관의 수지는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혜택과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함
- 경제성 분석은 재무성 분석에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결과값을 도출함
 -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준용(KDI 공공투자관리센터)하여 사회적 할인율 4.5%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함
 - 사업기간은 2021년~2023년(3개년)으로 설정, 운영은 30년 가정

2) 비용추정

가. 투자계획

-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치비 및 본부 운영비(인건비, 운영경비)로 구분됨
- 2021년까지 설립 출범을 목표로 하고 이후 운영할 계획임
- 설립초기 국비 1,455백만원(설치비 500백만원 포함), 도비 2,637백만원이 소요(전남복지재단 출연금 약 15억원 포함)
- 향후 인원 증가규모와 5개년에 대한 연도별 운영예산은 총 26,31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7-3> 연도별 운영예산 추정(5개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A+B+C)	설치비 (A)	인건비			운영경비			비고
		국비	소계(B)	국비	도비	소계(C)	국비	도비	
2021년	4,092	500	1,895	415	1,480	1,697	540	1,157	
2022년	4,368	0	2,614	415	2,199	1,755	540	1,215	
2023년	5,151	0	3,336	415	2,921	1,816	540	1,276	
2024년	5,987	0	4,108	415	3,693	1,879	540	1,339	
2025년	6,759	0	4,812	415	4,397	1,946	540	1,406	

- 1) 2021년 이후부터는 인건비는 전남복지재단 연간 임금 상승률 7%를 적용, 운영경비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5%로 적용하여 추정함

나. 인건비 산정

- 전남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출범시기에는 33명, 이후 2022년~2023년 확장기를 거쳐서 안정화 단계 이후에는 70명 운영을 계획함
- 인건비 산정기준은 2019년도 시범사업 대상 기관 중 임금이 공개된 지역과 최근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의 임금체계를 고려하고 실질적인 연차별 임금상승률은 현행 복지재단의 인력의 임금상승률을 감안하여 7.0%를 적용함

<표7-4> 전남사회서비스원 연도별 인건비¹⁾ 계획(5개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건비	33	1,895	43	2,614	53	3,336	63	4,108	70	4,812

다. 시범사업기간 중 운영예산

- 2021년 출범을 기준으로 운영 경비를 예상함
 - 운영경비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내용 등을 참고하여 적용하였으며 향후 내외부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운영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표7-5> 2021년 운영예산

(단위: 백만원)

항목	예산	내역
설치비	500	• 전남사회서비스원 설치비
인건비	1,895	• 본부 인력 33명 인건비(전남복지재단 포함)
운영경비 등	1,697	• 집기 및 설비, 전산장비, 소모품구입비 등 • 경상경비(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
계	4,092	• 출범 1차년도 운영을 가정함(전남복지재단 21년도 출연금 포함)

3) 편익추정

① 직접운영에 따른 편익

- 직접 운영 사업에 따른 간접 편익은 직접 운영에 따른 서비스 질 개선효과, 직영 운영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교육비 절감편익, 돌봄 제공인력의 고용안정효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따른 간접 편익을 들 수 있음
- 우선, 서비스 질 개선 효과는 운영 예산의 10% 수준을 예상하며, 전남사회서비스원에서 경영·재무·회계 관리, 노사문제, 민원 대처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 지원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준의 편익을 추정함
- 또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및 돌봄인력 등의 보수교육 등을 전남사회서비스원이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종사자들의 교육비(보수교육 포함) 절감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1인 교육비 5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사업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각종 질병 및 사고 예방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이용자(약 250명 기준)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제공에 따른 간접 편익이 기대됨
- 이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에 따른 간접 편익은 1인당 평균 진료비(국민건강보험공단, 370,000원/월·인)를 반영하였음

<표7-6> 직접 운영에 따른 간접편익(5개년)

(단위: 백만원)

항목	'21	'22	'23	'24	'25	계
서비스 질 개선	170	175	182	188	195	910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교육비 절감	17	24	24	24	24	113
사회서비스 제공에 따른 간접 편익	1,110	1,110	1,110	1,110	1,110	5,550
계	1,297	1,309	1,316	1,322	1,329	6,573

② 민간지원사업에 따른 편익

- 민간시설운영 컨설팅의 경우 타 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연간 30백만 원의 간접 편익을 적용함
- 전남복지재단의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컨설팅(사회복지시설 사전 컨설팅, 사후 컨설팅을 통한 시설 선진화 지원 등)으로 연간 15백만원 소요
- 전남사회서비스원이 민간시설을 지원함에 따라 민간의 업무개선과 고용창출 효과와 관련된 간접 편익으로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현행 서비스 제공 인력의 휴가·병가 등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인력공급에 대한 간접 편익을 고려 할 수 있음
- 대구사회서비스원과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등의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15명 수준의 고용창출효과를 반영함(15명, 1인당 24백만원)

<표7-7> 민간사회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에 따른 간접편익(5개년)

(단위: 백만원)

구분	'21	'22	'23	'24	'25	계
민간시설 운영 컨설팅	30	30	30	30	30	150
민간시설 운영 지원에 따른 업무개선과 고용창출	360	360	360	360	360	1,800
계	390	390	390	390	390	1,950

③ 기타 편익

- 이 밖에도 전남형 사회복지 정책 연구·개발을 통한 간접편익을 기대할 수 있음
 - 5년간 약 480백만원/년의 복지 관련 정책개발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음
 - 1) 지역사회복지 관련 계획 수립 : 5개 과업 × 50백만원 = 250백만원
 - 2) 사회복지 관련 연구용역 : 150백만원
 - 3) 기타 : 4개 × 20백만원 = 80백만원

<표7-8>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관련 사업 편익(5개년)

(단위: 백만원)

구분	'21	'22	'23	'24	'25	계
지역사회복지 관련 계획 수립	250	250	250	250	250	1,250
사회복지 관련 연구용역	150	150	150	150	150	750
기타	80	80	80	80	80	400
계	480	480	480	480	480	2,400

4)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하여 설립 후 30년 동안의 운영을 기준으로 비용 및 편익을 구함
- 단, 본 사업의 경우에는 편익과 비용의 상황을 동일하게 해야 할 필요(순수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인한 편익, 기존 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편익은 제외)가 있기 때문에 비용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라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비용으로 적용함
 - 30년 동안 운영의 총 편익은 133,943백만 원, 비용은 112,045백만 원으로 나타남
 - 사회적 할인율(이자율)은 공공할인율 4.5%를 적용
- 비용과 편익을 순현재가치로(NPV)로 환산한 B/C비율은 1.20으로 나타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향후 사업의 확대 또는 축소 여부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표7-9> 비용·편익 분석결과

(단위: 백만원)

할인년차		편익	비용	편익현재가 (A)	비용현재가 (B)	순현재가치 (A-B)
연차	연도					
0	2021	2,167	1,910	2,167	1,910	257
1	2022	2,279	2,686	2,181	2,571	-390
2	2023	2,286	3,469	2,093	3,177	-1,083
3	2024	2,292	4,305	2,008	3,773	-1,764
4	2025	2,299	5,029	1,928	4,217	-2,289
5	2026	2,529	5,180	2,029	4,156	-2,127
6	2027	2,782	5,335	2,136	4,097	-1,961
7	2028	3,060	5,495	2,249	4,038	-1,789
8	2029	3,366	5,660	2,367	3,980	-1,613
9	2030	3,703	5,830	2,491	3,923	-1,431
10	2031	4,073	6,005	2,623	3,867	-1,244
11	2032	4,480	6,185	2,761	3,811	-1,050
12	2033	4,928	6,370	2,906	3,756	-850
13	2034	5,421	6,561	3,059	3,702	-644
14	2035	5,963	6,758	3,220	3,649	-429
15	2036	6,559	6,961	3,389	3,597	-208
16	2037	7,215	7,170	3,568	3,545	22
17	2038	7,937	7,385	3,755	3,494	261
18	2039	8,730	7,606	3,953	3,444	509
19	2040	9,603	7,835	4,161	3,395	766
20	2041	10,564	8,070	4,380	3,346	1,034
21	2042	11,620	8,312	4,611	3,298	1,313
22	2043	12,782	8,561	4,853	3,251	1,603
23	2044	14,060	8,818	5,109	3,204	1,905
24	2045	15,467	9,083	5,378	3,158	2,220
25	2046	17,013	9,355	5,661	3,113	2,548
26	2047	18,714	9,636	5,959	3,068	2,891
27	2048	20,586	9,925	6,272	3,024	3,248
28	2049	22,645	10,222	6,602	2,981	3,622
29	2050	24,909	10,529	6,950	2,938	4,012
30	2051	27,400	10,845	7,316	2,896	4,420
31	2052	30,140	11,170	7,701	2,854	4,847
32	2053	33,154	11,505	8,106	2,813	5,293
계		350,727	239,767	133,943	112,045	21,898

4.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 전남도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양적 분석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남도민과 사회복지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하였음

1) 전남도민의 복지수준

- 전남도민이 체감하는 전남지역의 복지수준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전반적 수준을 살펴보면, 지역 내 사회서비스 시설수준, 제공기관 및 시설 신뢰수준, 복지자원의 기여도에 있어 보통보다 높은 평균 3.5점 이상의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이용시설의 선택 시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급자(시설장 및 종사자 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남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전반적인 수준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수와 서비스 환경에 대해 보통 이상의 양호한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라남도의 복지정책 수준, 전라남도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 제공기관 및 시설에 대한 신뢰성, 전문인력의 규모 및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2)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대한 인식

-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이용자(79.5%)와 공급자(82.1%) 모두 응답자의 80% 전후의 지지를 받으며 설립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용자의 50% 이상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강화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공급자의 경우,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강화(31.3%)보다 종사자의 고용안정성과 처우개선(38.8%)으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와 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를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회서비스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35.9%)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 운영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3)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및 기능에 미치는 도움 인식

-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역할 및 기능에 미치는 도움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수 증가, 제공기관의 서비스 환경 및 품질 향상, 종사자 처우 개선, 복지정책의 수준 향상,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 증가, 민간복지시설 지원 증가 등 전라남도의 사회서비스 수준을 현재보다 한 단계 더 높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70% 이상은 전라남도 복지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 공급자의 54.2% 도움이 된다고 인식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신뢰성 향상, 공급자의 55.4% 도움이 된다고 인식
 - 사회서비스의 제공 범위 강화, 공급자의 54.1% 도움이 된다고 인식
 -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질 향상, 공급자의 58.4% 도움이 된다고 인식
 -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 강화, 공급자의 56.1% 도움이 된다고 인식
 - 사회서비스 연구개발 역량 강화, 공급자의 57.3% 도움이 된다고 인식
 - 이용자의 복지 체감도 향상, 공급자의 51.4% 도움이 된다고 인식

4) 시사점

- 전남도민이 체감하는 전남지역의 복지수준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전반적 수준을 살펴보면,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 평균 이상의 양호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공급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복지정책의 체감도, 시설의 신뢰성, 전문인력의 수준 향상 등은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음
 - 이용자의 시설 선택 시 공공시설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민간 시설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반증이며,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안이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전남지역의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전남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원들의 이용수준을 극대화하여 도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체감도 향상 및 복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함
 -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고용안정성 보장, 합리적인 급여 체계 구축 등 처우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와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에 부합하며 사회서비스 수요(예정)자 및 공급자(시설장, 종사자 등)의 약 80%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전남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의 도움 측면에서도 전라남도의 사회서비스 수준을 현재보다 한 단계 더 높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5.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적 파급효과

- 경제적 파급효과의 추정에 있어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최종수요로 하는 생산 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 산정하여 분석하였음
- 파급효과 추정 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의 경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한국은행에서 2015년에 발표한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 연관표’에 따라 생산유발·부가가치·고용유발 계수를 적용하여 투자비에 해당 계수를 곱하여 추정함

<표7-10> 투자비에 의한 파급효과 산출방법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추정식	계수
생산파급효과	투자비×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생산유발계수	1.760
부가가치파급효과	투자비×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가가치유발계수	0.793
고용유발효과	투자비×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유발계수	21.8/10억원

주) 계수는 한국은행이 2015년에 발표한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근거로 함.

<표7-11>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경제적 파급효과(2021년~2051년)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2021년 투자비	계수	산출액
생산파급효과	4,092	1.760	7,202
부가가치파급효과	4,092	0.793	3,245
고용유발효과	4,092	21.8 / 10억원	89

-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계획 기간인 2021년도 총 투자비 4,092백만 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파급효과 7,202백만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3,245백만 원, 고용유발효과 89명으로 추정됨
- 2021년~2025년 5년 간 총 투자비 26,357백만 원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파급효과 46,388백만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20,901백만 원, 고용유발효과 575명으로 추정됨

<표7-12>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연도별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21	'22	'23	'24	'25	'계
생산파급효과	7,202	7,688	9,066	10,537	11,896	46,388
부가가치파급효과	3,245	3,464	4,085	4,748	5,360	20,901
고용유발효과	89	95	112	131	147	575

2) 고용 및 삶의 질 개선 등의 파급효과

- 위에 제시된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고용 및 삶의 질 개선 등의 파급효과를 들 수 있음
- 먼저, 직영 운영에 따른 사회서비스 질 향상 및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는 물론, 도민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정책 및 사업개발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도민들의 생활 복지 향상이 기대됨
- 또한 재가 돌봄과 지역사회보호를 강화함에 따라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전라남도민 복지기준' 적용과 전남형 사회복지정책 개발 연구를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제공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과 제공인력의 고용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6.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17-2)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한 품질향상을 위해, 그리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음
- '21년 기준(서울, 경기, 대구, 경남, 인천, 충남, 대전 등 10여 개소 확정), '22년 17개소로 확대 예정
- 전남지역의 경우, 2021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사회복지재정이 어느 정도 확대되어야 하는지, 사회복지재정 변화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장에서는 향후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재정투자 부문을 본부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전남복지재단에 기 투입되고 있는 연차별 출연금은 제외함
- 위탁시설의 경우, 독립채산제로 운영예정으로 도의 예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외함
- 앞서, 전라남도의 재정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향후 5년간 발생할 비용은 전라남도의 사회복지 예산 및 투자가용재원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라남도의 재정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전라남도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은 약 35.32%, 사회복지예산 대비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차지하는 재정 비율은 약 0.092%
- 2020년 기준, 전라남도 전체 예산(일반회계 기준) 대비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추정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0.033%

<표7-13> 전남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액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복지 예산액	1,590,625	1,561,526	1,702,776	2,326,617	2,602,744
전체 대비 비율	29.06	28.11	29.81	34.46	35.32

1) 총 투자계획

-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크게 초기설치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이 소요되며, 구체적인 소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 설립년도인 2021년에는 설치비 5억원 포함,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전남복지재단 출연금(21년 기준 1,682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순수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추가 투입되는 예산은 약 19억원 정도 필요할 것임
- 2021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2025년까지 5년간 총 263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표7-14> 연도별 사회서비스본부 운영자금 추정(5개년)

(단위: 백만원)

구분	계 (A+B+C)	설치비 (A)	인건비			운영경비			비고
		국비	소계(B)	국비	도비	소계(C)	국비	도비	
2021년	4,092	500	1,895	415	1,480	1,697	540	1,157	
2022년	4,368	0	2,614	415	2,199	1,755	540	1,215	
2023년	5,151	0	3,336	415	2,921	1,816	540	1,276	
2024년	5,987	0	4,108	415	3,693	1,879	540	1,339	
2025년	6,759	0	4,812	415	4,397	1,946	540	1,406	

1) 2021년 이후부터는 인건비는 전남복지재단 연간 임금 상승률 7%를 적용, 운영경비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5%로 적용하여 추정함

2) 인건비 및 운영경비

-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조직 및 인력계획(안)은 설립 및 운영방안 참조

7.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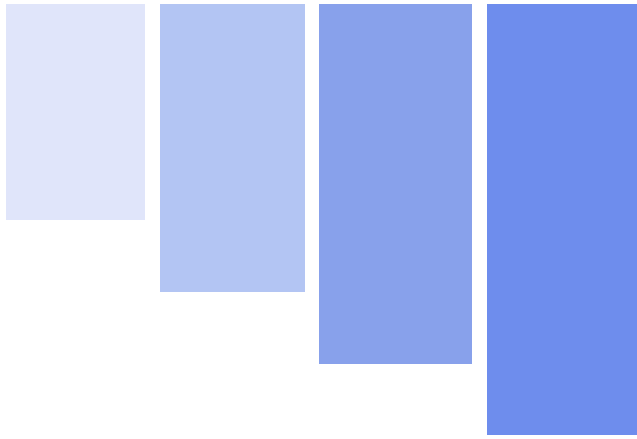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 중 일부 유사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전남복지재단의 업무의 중복성을 검토하였음
- 본 과업의 ‘설립 및 운영방안’ 참조

8. 적정 자본 구조 분석

- 자본금 출자에 대한 적정성 분석
 - 사업의 규모와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자본금 수준 분석
 - 공동출자자의 지분출자에 대한 적정성 분석
-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출연)할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 가능여부 등을 검토
 - 수익·처분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 조성목적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기간 중에 있는 재산 등이 현물출자(출연) 되지 않도록 주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행정재산은 출자·출연 배제
- 전남복지재단의 확대 개편에 따라 자본금 출자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배제함

9. 공무원정원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던 기존사업을 출연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인력 감축이 원칙이며, 위탁 업무 관리를 위한 최소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감축하도록 되어 있음
- 전남사회서비스원의 경우에는 국·공립시설 운영 및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민간업무 지원, 정책 연구 등이 주요업무로서 전라남도로부터 이관될 사업은 없으며, 신규사업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더라도 공무원 인력 감축 요인은 없음
 - 다만,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민간위탁기관 등의 기존운영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비슷한 여건의 직업군 종사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함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1) 지역여건 및 복지환경 분석

- 전라남도의 인구 수는 저출산 및 인구이동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유소년 및 경제활동의 인구 감소세가 심화하며 고령화율 역시 심각한 상황임
 - 2040년 고령인구비율 50% 이상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
-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5개년 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현재와 같이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경우, 세수의 감소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전남도의 사회서비스 관련 대상수요 현황 및 공급자원 현황 분석을 통하여 향후 복지 서비스 제공시 복지인프라와 지리적 특성 등 물리적 환경 등이 고려된 지향점을 제시함

2) 지역 의견수렴 및 FGI

- 이용자 및 공급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역의견 수렴 과정 수행
-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세밀한 분석의 한계는 있었으나 전반적인 수요 파악을 통하여 대상별 요구사항들을 분석, 정리, 적용해 본 보고서에 반영함
 - FGI(초점집단 심층면접) 조사 역시 비대면/대면 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대상 및 지역별로 충분한 의견수렴의 일부 한계점이 있었음
- 그러나 전반적인 요구사항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큰 흐름과 공통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반영함

-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 이용자 및 공급자 대상 응답자의 80% 이상 찬성
- 이용자의 경우, 국·공립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신뢰가 높음에도 물리적, 행정적 이유에 의해 이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수요자 지원이 시급함
- 응답자(수요(예정)자 및 공급자)가 체감할 때 유형별 시설의 도내 지역 편차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한계 및 시설 및 종사원의 서비스 수준 향상의 필요성을 제기함
- 이용자 및 공급자 모두 사회서비스 종사원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수준 향상의 주요 요인 및 수행해야할 역할 및 기능으로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음
- 다만, 사회서비스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운영예산 확보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오며 전라남도의 낮은 재정안정성으로 인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원의 독립기관으로서 신규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출연기관과 업무의 중복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며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음

3) 설립 및 운영방안/시설운영(안) 등

- 기존 복지재단의 역할 및 기능유지를 기반으로 하여 확대 개편하는 조직구성(안)을 제시하였으며(1처 3실 6팀으로 확대 개편)
- 복지재단의 확대 개편하여 사회서비스원 전환 시 약 14명 정도의 신규채용이 필요함
- 전남사회서비스원의 2021년 출범 이후, 2025년까지 총 70여명의 본부 인력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운영 가이드라인 적용 시)
- 국·공립시설 12개소(보육 7개소, 요양 3개소), 공공센터 18개소(기존 수탁 2개소 포함) 등의 시설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됨
- 종합재가센터는 2021년 도입기에는 기본형 1개소, 확대형 1개소를 먼저 설립하고, 그 이후 점차적으로 6개소 추가 확대(기본 3개소, 확대 3개소) 하여 총 8개소의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4) 설립 타당성 검토 의견

-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적정하며,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단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재정적 여건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간점검이 필요함
- 그 외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경제적 타당성,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은 긍정적이며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정책제언

1) 거시적 환경 변화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

-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도시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전략의 마련이 절실함
- 30년 후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약 46%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현 사회적 상황 고려
 - 향후 인프라가 집약된 ‘압축도시(Compact City)’ 또는 ‘도시 Compact化’ 시대의 도래를 고려하여 향후 조직의 개편, 시설확장 등을 검토하여야 함

2) 중장기 재정적 관점/ 광주-전남 통합 논의 등 지역내 움직임 고려

- 전략의 마련이 절실함
 - 복지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직을 설계하고 구상해야 함
- 지방분권시대 중앙과 지방간 복지사업 역할분담과 재정립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추가 사업 확대/시행이 바람직함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주사회서비스원과 복지재단의 순차적 통합 및 광주-전남 통합 논의 구상 등을 연계해서 고민해야 할 필요성 있음

3) 사회서비스원의 민간복지 영역과의 협력적 동반자적 관계 구축 필요 등

- 민간 영역과의 충돌 방지 및 상호 협력성 증대 필요(상생과 협업 도모)
- 전문인력 채용과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보(안정적 예산 확보)
- 사회서비스원의 연구기능은 전남연구원의 연구기능과는 다르게 가야함(현장밀착형)

4) 전남형/맞춤형 정책 생산

-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 및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정책생산을 통하여 지역화/차별화된 전남형 복지모델 개발 필요
- 교실 속의 이론, 책상 위의 정책이 아닌 현장에 바로 적용해 도민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효과적인 實事求是의 사회서비스정책이 되어야 함(지속적인 관찰 및 모니터링, Feed-back 필요)